

핀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1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6
2. 주요 산업 동향 /18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31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35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40
대한수입규제동향 /46
관세제도 /50
주요인증제도 /51
지적재산권 /55
통관운송 /5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61
- 외국기업 투자동향 /64
- 우리기업 투자동향 /6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8
- 진출형태별 절차 /71
- 투자입지여건 /7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9
- 조세제도 /8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6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87
2. 물가정보 /90
3. 바이어발굴 /92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98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102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03
7. 이주정착 가이드 /108
8. 출장가이드 /112

Finland



1994 MAGELLAN Geographix 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 | |
|---------------|--|
| 국명 | 핀란드 (Finland) * 정식명칭: Republic of Finland |
| 위치 | 북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 발트해를 끼고 동으로 러시아 서로는 스웨덴, 북으로는 노르웨이와 접경 |
| 면적 | 338,145 km ² (한반도의 약 1.5배) 33,672 km ² (호수) |
| 기후 | 냉대기후 (기후가 극지방에 가까워도 생각보다 안 추운 것은 북대서양 해류와 발트해, 그리고 호수[18만개]의 영향 임) |
| 수도 | 헬싱키 (HELSINKI) |
| 인구 | 5,238,460 명(2007년 7월 31일 기준) |
| 주요도시 | Helsinki(56만), Espoo(23.5만), Tampere(20.6만), Vantaa(18.9만), Turku (17.5만), Oulu(13만), Lahti(9.8만), Kuopio(9.0만) |
| 민족 | 93.4% 핀족, 스웨덴계 국민 5.7%, 러시아 0.4%, 에스토니아 0.2%, 로마 (집시) 0.2%, 사미족 0.1% |
| 언어 | 핀란드어 92%, 스웨덴어 5.6% (제2공용어), 랍어(Lappish) 또는 러시아어 2.4% |
| 종교 | 루터교 84.2%, 러시아정교 1.1%, 기타(무신론자 포함) 14.7% |
| 건국(독립)일 | 1917년 12월 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 |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에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
|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Tarja Halonen 대통령 (외교 담당) 취임일: 2000.3.1, 2006년 1월 재선에 성공 총리: Matti Vanhanen (국내정치 담당) 취임일: 2003.6.24 (4년 임기), 2007년 4월 연임성공 |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CIA world factbook

나. 경제지표

| | |
|---------|--|
| GDP | 1,574억 유로 (2006년) 2007년 추정치는 1,643 억 유로 * 2007년(9월) 평균 환율 : 1유로 = US\$ 1.356 |
| 실질경제성장률 | 4.9 % (2006년) 5.0% (2007년 8월 기준) |
| 1인당 GDP | US\$ 33,500 (2006년) |
| 실업률 | 7.7% (2006년) 6.9% (2007년 8월 기준) |
| 물가상승률 | 1.6% (2006년) 2.8% (2007년 8월 기준) |
| 화폐단위 | Euro |
| 환율 | 1유로= US\$ 1.356 (2007.9월) 2006년 평균 환율은 1유로= US\$ 1.25 |
| 외채 | 702 억 유로 (2007년 1분기) |
| 외환보유고 | US\$ 73억 (2007년 4월 기준) |
| 산업구조 | 금융(20.0%), 제조업(17.1%), 무역(11.8%), 운송(4.7%), 통신(4.2%), 건설업(5.5%), 광업(3.7%), 농수산업·임업(2.2%) (2006년) |
| 교역규모 | 524억 유로(수출), 470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54억 유로(2005년) 615억 유로(수출), 553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62억 유로(2006년) 2007년 7월 기준: 381억 유로(수출) 343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38억 유로 |
| 교역품 | 수출: 목재 및 제지, 운송장비, 휴대폰, 화학제품 등 수입: 중간재, 에너지, 자본재, 소비재 등 |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핀란드 중앙은행

다. 한-핀 관계

| | |
|-------------|---|
| 체결협정 | 사증면제협정(74.3) 특허권보호협정(79.9) 경제기술협력협정(80.2)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방지 협 약 (81.12) 과학기술협력협정(89.7) 투자보장협정(93.10.21) 문화협정(94.1) 항공협정(97.2) 과학기술협력각서(97.2) |
| 교역규모 | ○ 2005 년 -US\$ 20 억 1 천만(대핀란드 수출) -US\$ 6 억 5 천만(대핀란드 수입) -무역수지 US\$ 13 억 5 천만 흑자 * 자료원 : 한국관세청 ○ 2006 년 -US\$ 18 억 9 천만(대핀란드 수출) -US\$ 5 억 1 천만(대핀란드 수입) -무역수지 US\$ 13 억 8 천만 흑자 *자료원 : 한국관세청 ○ 2007 년 10 월 -US\$ 9 억 6400 만(대핀란드 수출) -US\$ 8 억 745 만(대핀란드 수입) -무역수지 US\$ 1 억 5655 만 흑자 *자료원 : 한국관세청 |
| 교역품 |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전자 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 합판, 선박용 엔진, 송신기기, 스테인레스강 (수입) |
| 투자교류 | ○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투자 -2007 년 7 월말까지: US\$ 3 백 10 만 (총 13 건) ○ 핀란드의 대한투자 -2007 년 3 분기까지: US\$ 1 억 3 천만 (총 52 건) |
| 교민 | 총 교민 수 약 240 명 (2007년) |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헌법

1917년 12월 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제정 러시아 자치공국 시절에도 핀란드는 자체 헌법과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핀란드 헌법은 이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시행령(Hallitusmuoto)은 의회와 정부, 대통령간 역할과 권력의 균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2차 대전 중에도 그 내용이 유지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핀란드 헌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 신 헌법이 발효되었다. 신 헌법에 의하면 핀란드 의회 그룹들은 내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막강했던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었다. 즉 대통령은 여전히 법령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지만, 법령을 공포할 때는 내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존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대외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나. 정치제도

핀란드는 대통령은 직선에 의해 선출(1994년 최초 도입)되며, 외교업무만 관장하여 대통령의 실제적인 국내정치의 권한이 거의 없는 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수상을 선출(해당 정당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로 현직 국회의원)하며, 행정부의 각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각 정당 별, 득표율 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대통령은 수상의 제정이 없는 한 장관을 해고할 수 없다.

□ 입법부

핀란드 의회는 단원제로서 헌법상 최고 정부기구이며, 임기 4년으로 선출된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고유 임무 외에도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사안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핀란드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확대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는 주로 행정부가 제안하는 안건을 기초로 한다.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각 부처의 고위각료가 제출한다. 대체로 정치적인 방향은 총선 후 내각이 구성되면 결정되는 정부의 기획 안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회에서 쟁점의 소지가 될 사안들을 의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대 국회 신임도를 측정한다.

(관련 사이트: <http://www.eduskunta.fi>)

□ 대통령

핀란드의 대통령은 핀란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1차 선거는 선거를 치르는 해 1월 3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을 득표하면 2차 투표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당선된다.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1차 선거일로부터 2주 후 1위와 2위를 득표한 두 후보만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당선하게 된다.

대통령은 대외정책 및 안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각료와 주요 공직자, 법관 등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조기 구성을 위한 선거를 지시할 수 있다. 핀란드 헌정상 대통령령에 의해 7번의 국회조기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의회시행령을 비준하고, 시행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인가한다.

수년 동안 특별권을 누려왔으며, 신헌법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최고의 정책 결정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 행정부

핀란드는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태의 2원 집정제로서, 수상은 다수당인 집권당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하다. 수상이 국내정치를 관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은 외교업무(EU업무는 총리)를 중심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EU가입 이후 국내외 업무의 중복이 생기고 이에 따라 조그마한 마찰이 없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핀란드 행정부는 총리 산하에 12개 부처가 있으나, 장관은 20명(장관 17명, 총리 1명)인데 이는 한 부처에도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의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각 장관은 정당의 득표에 따라 제1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나머지는 득표순에 따라 각 정당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의 임명 및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핀란드 행정부는 'Council of State'라 불리고 있다. (관련 사이트: <http://www.vn.fi>)

□ 사법부

핀란드 역시 초급법원(municipal court), 고등법원(central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지방 행정법원과 최고 행정법원 2심제로 별도 법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여러 개의 특수법원(군법재판, 노동분쟁, 고급 공무원 재판, Water Court, prison court, land court, insurance court 등)이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법관, 최고 행정법원장과 행정 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2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헌법 및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고 행정법원은 행정법원과 청원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명의 법관과 최고 행정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의 수장은(Chancellor of Justice)는 최고 검사로서, 국가의 법률이 적합한지에 관한 총체적인 감독관리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 수장은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각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파악한다.

의회는 옴부즈맨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원과 법관들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게 한다. 시민들은 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옴부즈맨을 통하여 공소할 수 있다.

핀란드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법복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정 예절(판사가 들어올 때 일어선다는 등)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좌석도 일반석과 같이 상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증인의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핀란드의 주요 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finlex.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는 매6년마다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데, 1994년 최초로 Mr. Martti Ahtisaari 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는 Tarja Hallonen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집무 중이다.

현재 현직 군인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출마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대통령 선거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직선에 의해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07년 3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총리의 제청과 국회의 자문을 얻어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국회 회기 중 국회의 해산과 새로운 국회의 구성을 명할 수 있다. 핀란드 헌정 사상 8차례 국회가 해산된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국회해산은 1975년 Urho Kekkonen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감사원장 및 부원장, 대법원, 국회 옴부즈맨장 및 부의장 등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핀란드 국회의원 선출은 비례 대표제로서 전국을 15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각 선거구역으로부터 정해진 의원을 총 200명 선출하는데, 인구 이동에 따라 다음의 숫자는 조금씩 변경하기도 한다(선거구별 의석수: Helsinki-20, Uusimaa-32, Southwestern Finland-17, Satakunta-10, Hame-13, Pirkanmaa-16, Kymi-13, Mikkeli-8, Kuopio-10, North Karelia-7, Vassa-17, Central Finland-10, Oulu-18, Lapland-8, Aland-1).

국회의원 후보는 법무부에 등록된 모든 정당에서 추천하며, 정당신고는 5,000명의 지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정당은 상기 선거구에서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데, 최소 14명을 추천해야 때문에 당들이 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100명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법인 단체(Constituency association)도 별도 후보를 낼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구별로 후보자 리스트를 당별 또는 연합별로 구분하여 번호와 함께 공고하고 일반 국민들은 한 후보에 대해 당과 개인 모두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개인-당 혼합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사전투표제도로써 선거일의 11일 전인 수요일에 시작하여, 해외의 경우는 8일 전인 토요일에 마감하며, 핀란드내의 경우는 5일전인 화요일에 마감된다. 사전투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핀란드 국내의 경우는 각시 지방정부가 지정한 지방정부 사무소와 우체국에서, 그리고 해외는 해외 공관에서 실시된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한하여 선거 관리인의 입회 하에 집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도 매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최근의 선거는 2004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시장 또는 주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제 지방정부는 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도 중요하다. 2004년 당시 핀란드 내륙은 428석과 올란드 자치구 16석으로 출범 하였으나, 2006년말 현재, 핀란드 내륙은 416석으로 줄었다. 지방의회 의원수는 지방 1995년에 제정된 지방정부 시행령에 따라 각지방의 거주 인구수의 비례하여 결정이 된다.

EU 의회 의원은 매 5년마다 선출 한다. 1976년 제정(최근 2002년 개정)된 EU 선거 시행령에 따라, 전체 732석의 EU 회원국 의회 의석 중 25석을 핀란드 내에서, 선거해 6월초에 실시한다. 다음 EU 의회 선거는 2009년이다.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투표에 참가가 가능하고 현재 4.1백만의 유권자가 있으며, 이중 20만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핀란드 선거관련 정보는 www.vaalit.fi 에서 제공되고 있다.

라. 정당제도 및 현황

행정부는 집권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승리하는 경우 선거에서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현재 행정부는 3개 연립정당으로 구성되어 각 연립내각 구성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다소 의견이 상반되는 등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직 국회의원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소수 정당들이 선거철에 나타났다가 결과가 없으면 사라지곤 한다.

2007년 3월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67.9%로 매년 투표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핀란드에서는 선거일 1주일 이전까지 우체국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에도 우체국에서 선거를 하고 일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총 의석수: 200 개 : 2007.3.21 선거결과)

| 정 당 명 | 홈페이지 | 의석수 | 의석변화 | 비고 |
|----------------------------|--|-----|------|------|
| Central Party | www.keskusta.fi | 51 | -4 | 연립여당 |
| National Coalition Party | www.kokoomus.fi | 50 | +10 | 연립여당 |
| Social Democratic Party | www.sosialidemokraatit.fi | 45 | -8 | |
| Left Wing Alliance | www.vasemmistoliitto.fi | 17 | -2 | |
| Green League | www.vihrealiitto.fi | 15 | +1 | 연립여당 |
| Swedish People's Party | www.sfp.fi | 9 | +1 | 연립여당 |
| Christian Democrats | www.kristillisdemokraatit.fi | 7 | 0 | |
| True Finns | www.perussuomalaiset.fi | 5 | +2 | |
| Bourgeois Alliance (Åland) | | 1 | 0 | |
| 합 계 | | 200 | | |

마. 최근 정치동향

현재 핀란드 대통령은 Ms. Tarja Hallonen(사회민주당)은 여성으로서 2000년 2월 6일 실시된 제 11대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최종 선출되었고, 2000년 3월 1일 취임, 2006년 1월 중임에 성공,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1994년 최초 직선 대통령인 사회민주당의 Mr. Martti Ahtisari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외교정책에만 두고 국내정치는 총리에게 일임하고 있어 정치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 EU 가입 후 1999년 하반기, 2006년 하반기에 EU 의장국 으로서도 활동하였다.

2003년 3월 16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거 야당이었던 중도당이 최대 의석인 55석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텐마키 중도당 당수가 4월 17일 수상 직에 취임하였다. 야텐마키 수상은 핀란드 최초의 여성 수상으로서 당시 핀란드는 여성 대통령과 여성 수상이 국가를 이끌게 되어 세계의 이목을 받았으나, 소위 '이라크 게이트'에 휘말려 6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상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같은 중도당의 Matti Vanhanen이 6월 24일 수상 직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은 수상직을 맡을 당시 3개 당의 연합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연합당은 중도당(Central Party), 사회 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wedish People's Party로 구성되어 200의석 중 117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총선 결과는 중도당이 가까스로 다수당의 위치를 지키기는 했지만 진정한 승자는 국민연합(보수당)이었다. 이전 중도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민주당이 8석을 잃어 제3당으로 전락하였고 중도당과 국민연합(보수당)이 각각 51석, 50석을 차지하였다.

2007년 4월 결성된 신임내각은 (중전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민주당은 야당이 됨) 중도, 국민연합(보수), 녹색, 스웨덴인 당 등 4당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최대의석을 확보한 중도당의 Matti Vanhanen 총리가 총리로 다시 연임되었다. 총리직을 포함 20개 장관의 정당 별 진출 수는 중도, 국민연합 각각 8개, 녹색, 스웨덴인당 각각 2개이다. 금번 내각 구성의 여성비율은 60%로서 여성의 내각 진출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바. 최근 주요 사회 경제 이슈

2006년 11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를 방문,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핀란드 양국은 상호무역교류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원목자재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핀란드의 주력 산업인 제지산업의 원자재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란드의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EU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1990년보다 1/5를 줄이는 것) 달성노력은 어떤 다른 EU 국가보다 핀란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핀란드의 주요 산업인 제지업만 해도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핀란드의 2대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15년 동안 핀란드의 최대 경제문제는 언제나 높은 실업률이었다. 2007년 4월 실업률은 7.2%까지 떨어져 2006년 같은 기간의 8.6%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핀란드의 빠른 경제성장과 노동력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이다.

핀란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의 높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설비나 본사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국방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EU 차원의 국방문제 협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NATO에 관한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핀란드는 NATO가 주도하는 평화유지 운영 프로그램에의 파트너 ship에는 찬성하며 회원국 가입은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향후 4년간 회원 가입을 유보하였다.

이는 정치와 경제부문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근 대국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 핀란드 러시아 대사는 이러한 핀란드 정부의 결정은 핀란드 내부 문제로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매우 만족한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사. 주요 정치 인물

□ 대통령

- 성 명: 타르야 할로넨, Tarja Hallonen (女)
- 생년월일: 1943년 12월 24일, 헬싱키 출생
- 가족사항: 남편 Pentti Arajärvi와 딸 1명
- 주요경력
 - 1967-68 Lainvalvonta 변호사로 활동
 - 1969-70 핀란드 학생 전국연합회 회장
 - 1970 SAK(핀 최대 노동조합) 중앙조직 변호사
 - 1974-75 국무총리 국회비서로 정치입문
 - 1976-84 국회의원
 - 1984-87 국회사회문제 위원회 위원장
 - 1987-90 사회부장관
 - 1990-91 법무부 장관
 - 1995-99 외무부장관
 - 2000.3.1 핀란드 최초 여성대통령 당선
 - 2006.1 중임 성공

□ 국무총리 (Prime Minister)

| 직명 | 사진 | 이름 | 소속정당 | 생년월일 |
|--|---|------------------------------------|--|-----------|
| 총리 (Prime Ministry) -2003.6.24 부터 -2007.4.19 연임 |  | Matti Vanhanen 2005년 이혼 자녀 둘 | 중도당 (Centre Party) -Jyväskylä 출신 | 1955.11.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중도당 입당 - 1981-84년: Espoo 시의원 - 1991년: 국회의원 당선 - 2003. 4/17 - 6/24: 국방장관 - 2003. 6/24: 국무총리 취임 - 2006. 1월: 대통령직 출마 (3 위) - 2007. 4. 19 : 국무총리 연임 | | | | |

□ 각부 장관

| 직명 | 사진 | 이름 | 소속정당 | 생년월일 |
|---|---|----------------|---|-----------|
|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7.4.19부터 |  | Ilkka Kanerva | 국민연합당 (National Coalition Party) -Turku 출신 | 1948.1.28 |
|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2007.4.19 부터 |  | Tuija Brax | 녹색당 (Green League) -헬싱키출신 | 1965.1.6 |
| 이민/유럽문제부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and European affairs) |  | Astrid Thors | 스웨덴인당 (Swedish People's Party) -Helsinki 출신 | 1957.11.6 |
| 공공행정 및 지방정부 장관 (Minister of Public Admin and Local Gover) -2007.4.19부터 |  | Mari Kiviniemi | 중도당 (Centre Party) -Seinäjoki 출신 | 1968.9.27 |

| | | | | |
|--|---|-------------------------|---|------------------|
| <p>문화체육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p> |  | <p>Stefan Wallin</p> | <p>스웨덴인당 - Vaasa 출신</p> | <p>1967.6.1</p> |
| <p>교통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 -2007.4.19부터</p> |  | <p>Anu Vehviläinen</p> | <p>중도당 -Leppävirta 출신</p> | <p>1963.9.9</p> |
| <p>통상산업부장관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2003.4.17부터</p> |  | <p>Mauri Pekkarinen</p> | <p>중도당 -Kinnula 출신</p> | <p>1947.10.6</p> |
| <p>보건사회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2007.4.19부터</p> |  | <p>Paula Risikko</p> | <p>국민연합당 (National Coalition Party) -Ylihämä 출신</p> | <p>1960.6.4</p> |

| | | | | |
|---|---|------------------------------|--|-------------------|
| <p>환경부 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2007.9.28부터</p> |  | <p>Kimmo Tiilikainen</p> | <p>중도당 (Centre Party) -Ruokolahti 출신</p> | <p>1966. 8.17</p> |
| <p>재무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2007.4.19부터</p> |  | <p>Jyrki Katainen</p> | <p>국민연합당 -Siilinjärvi 출신</p> | <p>1971.10.14</p> |
| <p>통상교섭본부장관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2007.4.19부터</p> |  | <p>Paavo Väyrynen</p> | <p>중도당 -Kemi 출신</p> | <p>1946.9.2</p> |
| <p>내무부장관 (Minister of the Interior) -2007.4.19부터</p> |  | <p>Anne Holmlund</p> | <p>국민연합당 -Pori 출신</p> | <p>1964.4.18</p> |

| | | | | |
|--|---|------------------------------------|-------------------------------|-------------------|
| <p>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se) -2007.4.19부터</p> |  | <p>Jyri Häkämies</p> | <p>국민연합당 -Karhula출신</p> | <p>1961.8.30</p> |
| <p>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2007.4.19부터</p> |  | <p>Sari Sarkomaa (기혼, 3자녀)</p> | <p>국민연합당 -Tampere출신</p> | <p>1965.9.24</p> |
| <p>농림부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7.4.19부터</p> |  | <p>Sirkka-Liisa Anttila</p> | <p>중도당 -Marttila 출신</p> | <p>1943.12.20</p> |
| <p>통신부장관 (Minister of Communications) -2007.4.19부터</p> |  | <p>Suvi Linden</p> | <p>국민연합당 -Helsinki 출신</p> | <p>1962.4.19</p> |

| | | | | |
|---|---|----------------|----------------------|------------|
| 사회문제와 보건부장관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7.4.19부터 |  | Liisa Hyssälä | 중도당 -li 출신 | 1948.12.18 |
| 노동부장관 (Minister of Labour) -2007.4.19 |  | Tarja Cronberg | 녹색당 -Helsinki출신 | 1943.6.29 |
| 주택부장관 (Minister of Housing) -2007.4.19 |  | Jan Vapaavuori | 국민연합당 -Helsinki출신 | 1965.4.3 |

□ 관련 사이트

- <http://www.valtioneuvosto.fi/hallitus/jasenet/en.jsp>

아. 핀란드와 EU(유럽연합) 관계

1995년 1월 1일부로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핀란드는 EFTA와 EEA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경제 블록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핀란드가 EU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것은 독립국으로서 핀란드가 내린 가장 중대하고도 영향력이 큰 결정 중의 하나였다. 이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사안에 있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99년에는 북부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유로화로 모든 핀란드 내 통화를 바꾸었다. 2006년 하반기부터 핀란드는 6개월간 EU 의장국 역할을 맡았으며, 의장국으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세안 유럽정상회의(ASEM)를 2006년 9월 헬싱키에서 개최하였다.

UN과 유럽안보협력총회에서 핀란드가 담당한 역할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UN의 평화유지 활동과 CSCE(유럽안보협력위원회, 일명 헬싱키 위원회)의 위기 관리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핀란드를 특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핀란드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핀란드가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러시아는 EU의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EU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유럽통합의 과정에 합류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핀란드와 인접한 러시아 지역에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자. 국제무대에서의 핀란드

한 동안 핀란드 외교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비무장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 종식 이후 핀란드는 모든 국비축소 협정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제한과 통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핀란드는 1968년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이 창안한 국제 통제제도를 강력히 지지하였고, 1963년 핵실험 금지조약을 지하 핵실험 금지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핀란드는 유럽의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핀란드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과거 수 세기 동안 무역 및 관광사업을 해오고 있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1975년 헬싱키에서 최종 결의안이 채택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후 핀란드는 1992년 독자적으로 사후 CSCE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안보 문제 등을 진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중요한 내용은 유럽 각국이 비록 상반되는 군사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안보와 협력에 관해서 서로 단합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핀란드의 외교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핀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2008년 양국 관련 주요 행사

□ 6월 2일 인천-헬싱키간 직항 노선 개설

2008년 6월 2일부터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서 향후 양국간의 교류가 보다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직항 노선은 핀란드 국적 항공사인 핀에어(Finnair)에 의해 주 5회(화, 수, 목, 금, 일) 운항할 예정이다. (헬싱키에서 인천으로는 월, 화, 수, 목, 토에 운항)유럽 내 대 아시아 중심 공항 및 항공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헬싱키 공항과 핀에어는 이번 직항 노선에 A340-300기를 투입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럽 내 대 아시아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지난 2006년 ASEM 회의 참석 겸 핀란드 국민 방문시 노무현 대통령과 핀란드 따르야 할로넨 대통령간의 항공 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의 코드 쉐어 및 기존 한국 취항 유럽 항공사와의 협의 문제로 인해 직항 노선이 지체되어 왔었다.

항공편명은 AY042로 오전 10시15분 인천을 출발해 14시05분 헬싱키 도착하며, AY041편으로 헬싱키에서 17시30분 출발해 오전 8시25분(+1)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이번 직항 노선 개설은 향후 양국간의 민간 교류 확대 및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2007년 양국 관련 주요 행사

□ ‘헬싱키 아시아 페스티벌’ 주빈국 행사

핀란드에서 아시아문화 소개를 위해서 연례 행사로 열리는 문화축제인(1997년 이래 실시) “헬싱키 아시아 페스티벌(Asia in Helsinki Festival)”이 금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우리 전통문화 공연행사가 개최되었다.

- 행사 기간: 2007.4.30(월)~5.7(월)
- 행사 장소: 헬싱키 알렉산더 극장
- 주관 기관: Asia in Helsinki Society
- 우리 전통문화 공연 일정
 - 5.2(수): Opening Gala 공연(작법, 시나위 연주, 부채춤 등)
 - 5.3(목): 불교음악과 한국의 민속음악
 - 5.4(금): 불교음악과 춤
 - 5.5(토): 한국의 전통무용
 - 5.6(일): 한국의 전통무용 및 현대무용
- 공연단 구성: NOW무용단, 동희 법음회, 전통악기 연주단 등

□ 핀란드 ‘한국의 집’ 전시회

2007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에서 ‘한국의 집’(Korealainen Koti)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북유럽에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디자인, 문화, 예술 등을 통해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한국의 전통한옥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매듭 연구가 유봉희 선생의 작품이 한국 전통 가옥의 안방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함께 전시되어있다. 용기, 합 등 전통 식기와 함께 한국의 음식문화도 소개되어 있다.

이번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 전시는 핀란드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생활 디자인에 앞서있는 핀란드에 한국의 현대 디자인, 공예, 예술품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전시개요

- 제 목: “Korean Home-The Way of Living”
- 기 간: 2007년 4월 2일 ~ 12월 31일
- 장 소: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The Museum of Cultures, National Museum of Helsinki, Finland)
- 큐레이터: 안애경 www.sonoann.org
- 부대행사: 매듭, 다례, 한지등갓 시연 및 강좌

다. 양국 대사관 정보

□ 주 핀란드 한국 대사관

- 근무시간: 월-금 9:00-16:30
- 주 소: Fabianinkatu 8, 00130 Helsinki
- 전 화: (358-9) 251-5000,
- 휴일 또는 긴급 시 연락처 : (358) 40-903-1012, 40-903-1013
- 팩 스: (358-9) 251-50055
- 이메일: korembfi@mofat.go.kr
- 대사: 박흥신

□ 주한 핀란드 대사관

- 근무시간: 월-금 9:00-17:00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 빌딩 1602호 (P.O.BOX 1518)
- 전 화: (02) 732-6737/6223
- 팩 스: (02) 723-4969
- 이메일: koreanembassy@kolumbus.fi
- 대사: Mr. Kim Luotonen
- 상무관: Mr. Mauri Francke (핀란드 수출진흥기관인 FINPRO의 파견관)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 경제 지표

| 지표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GDP(십억 불) | 189.4 | 195.8 | 209.8 | 243.5 | 270.5 | 255.0 |
| 경제 성장률(%) | 3.7 | 3.2 | 5.0 | 3.9 | 3.1 | 2.8 |
| 물가 상승률(%) | 0.2 | 0.9 | 2.3 | 2.6 | 1.8 | 1.9 |
| 수출(십억 불) | 61.1 | 65.5 | 77.5 | 91.6 | 99.4 | 95.2 |
| 수입(십억 불) | 48.4 | 55.9 | 66.4 | 77.3 | 87.5 | 85.7 |
| 환율(유로: 달러) | 1,244 | 1,245 | 1,256 | 1,361 | 1,445 | 1,328 |
| 경상수지(십억 불) | 14.8 | 9.5 | 10.9 | 12.5 | 10.3 | 6.4 |

자료원: EIU (February 2008)

주: 2007년 자료는 추정치, 2008,2009년 자료는 예상치

나. 경제 정책

최근 경제 정책의 핵심 사안은 일자리 창출로서 이는 정치적으로도 쟁점 사항이 되고 있다. 현 중도당 주도의 정권이 지난 집권 기간동안 일자리 창출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아 재집권에 성공했듯이 일자리 창출은 최대 이슈중의 하나이다. 향후 80,000~100,000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년동안 1%의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2008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세와 주류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2006년 이후부터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세금 감면이 그 핵심이다. 특히 상속세와 일부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이 총선 이후 새 정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곧 실행될 예정이다. 단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중앙, 지방 정부 모두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와 지속적인 예산 흑자에 기인한다. 2008년중 두드러진 변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가격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2008년초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인 Nokia는 2007년 하반기에도 경이로운 시장점유율과 이익 마진율로 핀란드 기업 중 당연 수위에 올랐다. 현재 핀란드 경제가 Nokia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사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에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와 연계하여 높은 실업률을 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성립된 연립 내각의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있다.

2006년도 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지역의 해저 전기 공급망 사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와 발트해 국가들 사이에 맺었던 이전의 에너지 협정들은 무너지게 되었다. 핀란드로서는 이번 협정 결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핀란드 내에서는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이슈 중 요즘 핀란드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이다. 1990년대 말 Paavo Liponen 총리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원자력 발전소를 재건설하기로 결정한 이후 연립내각에서 퇴진한 녹색당 역시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다. 최근 경제 동향

GDP 성장률은 2007년도 추정치 3.9% 에서 2008년에 3.1% 그리고 2009년에는 2.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EU 평균치를 웃도는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산업 부분의 생산지수가 감소하면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2005년간의 0%대의 저 성장률 시대를 지나 2% 대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상승하는 명목 임금은 소비자 수요와 집값 상승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2007년에는 1.6%로 추정되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8%와 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 유럽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경상수지는 큰 흑자폭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100억 달러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 기조는 2007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07년 경상수지는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과 2009년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몇 년 간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될 전망이다.

라. 향후 경제 전망

핀란드는 2006년 4.9%, 2007년에는 4.1%의 경제 성장률로 노르딕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높아진 이자율과 투자 위축으로 등으로 2008, 2009년 경제성장률은 각 3.1%와 2.8%로써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로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 현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 물가는 2007년 고유가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07년 핀란드 물가상승률은 1.6%로 추정되며 2008년과 2009년에 1.8% 및 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주요 요인은 국제 유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주요 원인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2007년에 7.7%로 2005년 8.4%에 비해 0.7% 감소하였다. 실업률 감소 추세는 2007년에도 6.6%로 하락하면서 계속 지속되리라 예상되며, 그 이유는 핀란드의 실업률 감소가 비정규직 증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인원의 증가를 들 수가 있다. 또한 최근 총선에서의 주요 이슈가 일자리 창출이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실업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7년 들어서도 핀란드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6월초 핀란드 재무장관 Jyrki Katainen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소득세 인하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정부는 향후 4개년간 11억 유로의 소득세 순감 효과를 가져올 세제인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적어도 2008년도 초까지는 소득세 인하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경제는 2006년도 4.9% 성장하였으며 이는 유로지역 평균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핀란드 재무장관은 2006년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향후 3년 동안 최소한 3.0%의 성장률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란드 재무장관 Jyrki Katainen은 최근 핀란드 경기 과열의 징후로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 이외에도 경직된 노동 시장, 주택 가격의 상승, 빨리 증가하는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 부채를 꼽았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개황

핀란드 경제는 과거 전통적으로 삼림산업에 의존한 바가 컸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각종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다양화되었다. 2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전자 및 기계, 금속 등 기술산업과 삼림산업이 가장 역동적인 산업으로서 핀란드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고, 화학산업과 식품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 4.69% (2005년), 스웨덴 4.27% (2001년)에 이어 핀란드는 3.51% (2004년 기준)로 세번째로, 한국 3.23% (2006년)보다도 높다 (자료원: Eurostat). 핀란드 무역산업부(www.ktm.fi)와 핀란드 기술 연구소(VTT: www.vtt.fi), 핀란드 기술혁신 지원청 (TEKES: www.tekes.fi), 기술산업 연합 (www.Teknolo.giateollisuus.fi) 등 많은 민관 유관기관이 R & D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70%는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10년간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핀란드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핀란드의 잘 발달된 R & D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매년 약 200개 외국기업들이 핀란드에 진출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in Finland (www.investinfinland.fi)에 의하면 이 중 30-40%는 신규법인 설립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핀란드 기업을 매입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2006년도 산업(제조업) 현황

| 분 야 | 기업체수 (개사) | 종업원수(명) | 부가가치 (백만유로) | 비중(%) |
|---------------|--------------|---------|----------------|-------|
| 광산 및 채석 | 1,165 | 4,122 | 353 | 1.1 |
| 제 조 업 | 26,319 | 399,148 | 29,006 | 89.9 |
| 식품, 음료 등 | 1,993 | 37,257 | 2,074 | 6.4 |
| 섬유 등 | 2,460 | 11,776 | 506 | 1.6 |
| 목재 및 목제품 | 2,798 | 27,098 | 1,298 | 4.0 |
| 펄프, 제지 및 종이제품 | 277 | 34,440 | 3,539 | 11.0 |
| 인쇄, 출판 | 2,786 | 28,485 | 1,711 | 5.3 |
| 화학 | 1,135 | 37,829 | 3,727 | 11.6 |
| 비철금속 제품 | 1,049 | 15,094 | 905 | 3.0 |
| 비금속 | 174 | 15,361 | 1,487 | 4.6 |
| 금속가공제품 | 4,644 | 40,549 | 2,022 | 6.3 |
| 기계 및 장비 | 3,600 | 57,569 | 3,334 | 10.3 |
| 전자 및 광학장비 | 1,784 | 60,313 | 6,764 | 21.0 |
| 운송장비 | 908 | 19,769 | 902 | 2.8 |
| 가 구 | 1,583 | 10,434 | 462 | 1.4 |
| 기타 제조업 | 1,128 | 3,676 | 222 | 0.7 |
| 전기, 가스, 상수도 | 1,310 | 15,027 | 2,921 | 9.1 |
| 합 계 | 28,794 | 418,298 | 32,280 | 100.0 |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2007)

나. 기술산업 현황

핀란드는 전기, 전자산업 및 기계산업, 금속산업을 '기술산업'(Technology Industries)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산업이 핀란드 경제를 이끌어가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까이 이르고 있고,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과 스웨덴, 미국, 러시아 등이다. 또한 R&D 투자에 있어서도 약 80%가 이 기술산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핀란드의 기술산업 비중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총생산 (백만 유로) | 43,400 | 41,900 | 44,200 | 47,550 |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 32% | 31% | 44% | 30% |
| 수 출 (백만 유로) | 25,690 | 25,307 | 26,705 | 30,900 |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 | 55% | 59% | 51% |
| 투 자 (백만 유로) | 3,919 | 3,470 | 3,750 | 3,829 |
| 종업원수 (천 명) | 216 | 210 | 207 | 202 |

자료원: 핀란드 기술산업 연합 (www.teknologiateollisuus.fi)

기술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

| 기업명 | 매출액(백만 유로, 2006년) | 종업원수(명) |
|----------------|-------------------|---------|
| Elcoteq | 4,169 | 19,802 |
| Aspocomp | 154 | 3,393 |
| Elektrobit | 212 | 1,684 |
| Kone | 3,242 | 27,238 |
| Metso | 3,976 | 24,363 |
| Valtra | 852 | 2,610 |
| KCI Konecranes | 971 | 5,923 |
| Fiskars | 551 | 3,284 |
| Oras | 126 | 1,085 |

자료원: 핀란드 기술산업 연합 (www.teknologiateollisuus.fi)

다. 전자산업

1) 개 관

□ 개황

핀란드에서 전자산업의 비중은 90년대에 들어 특히 급속히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통적인 펄프, 제지산업이나 기계산업을 앞지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1990-2000년 사이 전자산업 생산량은 IT 붐에 힘입어 연평균 58%씩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전체 산업생산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2002년 IT 붐의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생산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3년 이후 회복된 이래, 2006년부터는 또 다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물량 면에서 볼 때, 2006년말 기준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1996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하니 그 성장세가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다.

□ 산업 비중

2006년 기준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기업체수는 총 1,843개사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63,500명 정도이다. 여러 전자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통신장비 분야로서 전체 전자산업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 분야 부가가치는 2006년의 경우 83억 유로로서 전체 산업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기업의 진출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부품이나 하청업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들도 약 20여 개사가 핀란드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외국 전자산업체의 핀란드 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핀란드의 전자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과 외국기업에 대한 잘 정비된 법률체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은 인건비 상승 및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증거로 핀란드 전자업체들의 해외이전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핀란드는 전자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R&D 규모는 전체 GDP의 3.51%(2006년)에 이르며, 예산에서 공공부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2005년의 경우 그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간 산학협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체 R & D 투자 금액 (민간부문 포함) 중 64%는 2006년 기준, 64%에 달한다.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기업들의 R & D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산학연 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 전자산업연합(SET)은 ELMO라는 이름의 야심 찬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300개 기업과 8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3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산업 구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핀란드 전자산업은 수직적인 구조의 계열화가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점차 하나의 사슬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사슬고리를 형성하면서 아시아나 동구지역으로의 현지진출도 하고 있다.

그 예로 노키아의 주요 협력사 중의 하나인 Elcoteq의 경우는 2002년 아시아의 2개 공장을 매입한 이후 2003년 3월에는 핀란드 국내 로흐야(Lohja)의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2) 분야별 동향

□ 통신분야

통신분야의 2006년도 매출액은 152억 유로로서 전체 전자산업 매출액의 74.5%, 전체 기술산업 분야 수출액의 32.1%를 (전체 수출액의 25%) 차지하고 있다. 높은 자동화 설비로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전자산업 종업원수의 57%인 35,100명 정도이다. 이는 전체 기술산업의 17%이다. 이 분야는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노키아와 같은 대규모 기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통신분야 산업은 1990-2000년 사이에 연평균 68%에 이르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2001년에는 0.9% 감소하는 침체기를 맞았고,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06년 이후로는 다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휴대폰과 무선 통신망 및 인터넷 통신망 등이다.

□ 전자부품

주로 통신분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호황에 힘입어 9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핀란드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통신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순 부품이나 중간재들이다.

□ 전자장비 및 계측, 제어기기

부가가치가 높은 이 분야는 세계적인 시장호황으로 90년대 말 연평균 9% 성장하였다. 주요 생산제품은 통신망 설비에 들어가는 장비와 전기변환 시스템, 조명기구, 연구소 시험실이나

의약 실험실용 계측, 기상관측 계측 시스템 및 제어기기 등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계측, 제어 기기에서는 현재 입수 가능한 200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93%를 수출하고 있고, 전자장비의 경우는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

휴대폰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2억 유로 정도로 전체 전자산업 매출액의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주요 생산제품은 TV(Finlux-Salora)와 오디오 및 비디오 플레이어이다.

3) 무역동향

핀란드는 자체 시장이 작아서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생산량의 70%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현재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완제품이며, 중간재는 전자산업체간 사슬고리 안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무역규모는 독일, 러시아, 스웨덴, 영국 순으로 크며 대부분 EU 국가와의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미국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이 새로이 급부상 하는 무역 교역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 수출

2000년대 초,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불황, 특히 휴대폰의 수출부진으로 수출량이 감소한 적도 있었지만 2003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타며 요즘은 수출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완제품으로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휴대폰과 이동통신 장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EU 등 유럽국가로서 특히 러시아(11%), 스웨덴(10.8%), 독일(10.6%), 영국(6.7%)과 미국(5.8%)의 비중이 높다.

□ 수입

주요 수입품목은 부품과 중간재 또는 반제품이다.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해외 진출한 핀란드 기업과 핀란드 국내 본사간의 기업 내부간 교역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유럽으로서 35%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 기준 특히 독일(14.9%), 러시아(13.9), 스웨덴(10.6%)의 비중이 높다.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약 30%로 매우 높은 편이나,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4) 노키아 와 주요 협력사

Nokia(www.nokia.com) :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로서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 이외에 총 매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 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6년 6월 노키아 네트워크 사업부와 독일의 지멘스의 합병을 발표, 2007년에는 개편된 노키아-지멘스 네트워크 회사가 50 대 50 지분 기업으로 새로 탄생했음. 이외, 기업 솔루션, 멀티미디어 사업으로 활동영역을 확대 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했음. 동사는 현재 전세계 9개국에 14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Elcoteq (www.elcoteq.com) : 노키아의 가장 큰 EMS 협력업체로서 2006년 매출액은 41.7억 유로였으며, 이는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약 43%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이중 8억 유로는 정보통신 사업부서가 차지하였음. 총 종업원수는 2만 명이며 노키아뿐만 아니라 에릭슨사에 대해서도 휴대폰 부품과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동사는 ABB, KONE, Phillips 등에 대해서도 계측제어기기를 납품하고 있음.

Scanfil Group(www.scanfil.fi) : 동사는 2세대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와 케이블,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음. 2006년 매출액은 약 3억 2,1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약 2,354명임. 동사는 2002년 Wecan Electronics 및 Alcatel Belgique 등을 매입하였음.

Aspocomp(www.aspocomp.com) : 동사는 단순 전자부품 및 집적회로 등을 생산하여 노키아 및 지멘스, Tellaps, Elcoteq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음. 2006년 매출액은 약 1억 5,4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약 3,393명임.

Elektrobit Group(www.elektrobit.com) : 동 그룹은 2002년 5월 Elektrobit Group과 JOT Automation Group의 합병으로 탄생으로 하였으며, 2006년 매출액은 약 2억 1,250만 유로, 종업원수는 약 1,800명임. 동 그룹은 정보통신 산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하청사업 과 계측. 제어장비 산업체를 위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타 산업체를 위한 전자 자동화 설비 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 부서로 운영되고 있음.

5) 유관기관

- 전자산업연합 (Federation of Electric Industries: www.electroind.fi)
- 핀란드 기술산업연합(Federation of Technology Industries of Finland: [www. Teknologiaellisuus.fi](http://www.Teknologiaellisuus.fi))
- 핀란드 기술 혁신 지원청(TEKES: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www.tekes.fi)

라. 기계산업

2006년도 기계산업의 총 매출액은 192억 유로로서 기술산업에서 43% GDP 의 12.3%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기계산업에는 기계류에서부터 부품, 운송장비 등 여러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분야에서 세계 제4대 제조업체인 Kone (www.kone.com)를 비롯하여 제지기계를 생산하는 Metso (www.metso.com),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는 Valtra (www.valtra.com), 산업용 크레인의 KCI Konecranes (www.kcikoncranes.com), 가정용 및 정원용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Fiskars (www.fiskars.fi), 수도꼭지 및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Oras (www.oras.com), 방위산업체인 Patria (www.patria.fi) 등이 유명하다. 이중 Patria는 1,848명의 종업원과 3억 1,700만 유로의 매출액 (2006 기준)으로서 핀란드 전체 방위산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 금속산업

금속산업 생산품의 70% 이상은 세계 6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핀란드 기업 들은 전세계 20여 개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Outokumpu ([www. Outokumpu.fi](http://www.Outokumpu.fi))는 스테인레스 철강 및 구리제품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자 핀란드 제8위의 기업으로 2006년도 연간매출액과 종업원수가 각각 56억 2,100만 유로, 11,000명에 이르고 있다.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Wartsila (www.wartsila.com)와 Rautaruuki (www.rautaruuki.com), 스웨덴의 SKF(www.skf.com)는 긴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기 자회사인 ImatraSteel(www.imatra.com), Fundia(www.fundia.com), OvakoSteel(www.ovako.com)사를 합병하여 종업원 5,200명의 대기업으로 재탄생하였으며, Kuusakoski (www.kuusakoski.com)는 금속 제품의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중요한 기업이다.

바. 삼림산업(펄프, 제지산업)

펄프, 제지산업 등 핀란드의 삼림산업은 핀란드의 전통산업으로서 아직도 핀란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이 및 판지에 있어서 핀란드는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며, 펄프 및 각종 목재, 합판, 특수 종이 생산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개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 가능 원자재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tora Enso (www.storaenso.com)와 UPM (www.upm-kymmene.com)은 세계적인 종이 및 판지 생산업체로 유명하며, Ahlstrom (www.ahlstrom.com)은 내연기관용 필터 및 라벨 등 특수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Myllykoski는 잡지용 종이 생산에 있어 세계 제3대 기업이고, 그밖에 Metsaliitto (www.metsaliitto.com)와 Metso (제지기계 생산), Botnia (www.metsabotnia.com), M-Real (www.m-real.com), Finncell (www.finncell.com) 등의 기업들이 있다.

핀란드 제지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5%로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대 수출국이다. 핀란드에서 펄프, 제지산업은 IT 산업에 앞서 가장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아직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핀란드 제지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산업계와 연구소, 대학간 산학연 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삼림산업 연합(Finnish Forest Industries Federation)의 회장이자 세계적인 제지업체 M-real의 CEO인 Mr. Jouko M. Jaakkola에 의하면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에 있어서 핀란드 제지산업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다.

핀란드는 세계 제6대 펄프, 제지 생산국이고, 생산량의 4/5를 수출함으로써 15%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전국토의 88%인 26백만 헥타가 삼림으로서 5 가계 중 1가계가 삼림을 가지고 있고, 일인당 삼림면적이 4.6 헥타로서 여타 유럽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핀란드의 펄프, 제지산업은 이 같은 풍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130여 년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StoraEnso나 M-real, UPM과 같은 세계적인 제지업체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펄프, 제지산업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 펄프, 제지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 그램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헬싱키 공대의 석사과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활동하는 제지관련 엔지니어 중 2/3가 핀란드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도 현재 핀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 화학산업

화학산업은 총 매출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 3번째로 비중이 큰 2차 산업이다. 2006년 말 기준 화학산업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약 45,000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화학 산업의 2006년 수출액은 약 69억 유로로서 핀란드 전체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81억 유로로서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도 연구 개발비는 약 4억 1,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주요 세부산업 분야는 석유 화학(36%), 의약 (6%), 기초 화학(32%), 페인트류(3%), 고무(4%), 플라스틱(14%) 등이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매출액 20억 유로, 종업원 7,670명 (2006년 기준)의 Kemira (www.kemira.com)를 비롯해서 Orion, Uponor (www.uponor.com), Nokian Renkaat (www.Nokiantyres.com) 등이 있다. Kemira는 삼림산업용 화학제품 및 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며, Orion(www.orion.com)은 제약회사로서 2005년도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각각 19억 유로, 4,534명에 이르고 있다.

Uponor는 상수도용 파이프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2005년도 매출액은 10억 3,1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4,129명을 기록했다. Nokian Renkaat는 동계용 타이어 생산업체로 유명하며, 2006년도 매출액이 6억 8,650만 유로, 종업원수가 3,201명을 나타냈다.

아. 식품산업

식품산업은 핀란드 국내소비의 약 85%를 총당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원자재의 85%가 핀란드 국내산이다. 주요 세부 분야는 맥주 및 주류, 음료,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과일 및 야채 등이다. 이 분야의 2006년도 매출액은 87억 유로로서 4번째로 중요한 2차 산업이다.

HK-Ruokatalo (www.hk-roukatalo.fi)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Fazer (www.fazer.fi)는 초콜릿 제품에서 유명한 가족기업으로서 2005년 매출액이 9억 8,6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중 45%는 수출로 이루어졌다. 포도주, 맥주 및 스피리트류 등 주류 분야에서 중요한 생산업체이자 수입/유통업체인 Altia (www.altia.fi)는 공기업으로서 2006년 매출액 2억 1,800만 유로였으며, 비주류 음료 분야에서는 Hartwall (www.hartwall.fi)이 유명한데, 2006년 매출액은 3억 유로를 기록했다. 낙농 제품 분야에서는 Valio(www.valio.fi)가 가장 규모가 크며, 2위로는 Ingman Foods (www.ingman.fi)가 있다.

자. 하청산업

1) 핀란드의 하청산업 비중

하청산업이 핀란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연간매출액은 100억 유로에 육박하고 있고, 9,824개사가 하청생산을 주업종이나 부분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총 종업원수는 72,4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하청산업 분야는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계류 등이다.

핀란드 하청산업의 분야별 현황 (2006년)

| 구 분 | 매출액(백만유로) | 기업체수(개사) | 종업원수(명) |
|-----------------|-----------|----------|---------|
| 전기, 전자 | 2,136 | 237 | 8,305 |
| 섬유, 의류, 혁제 | 1,450 | 612 | 2,165 |
| 금속 구조물 | 1,305 | 1,343 | 11,614 |
| 엔지니어링 기계 및 정밀기계 | 783 | 1,208 | 9,462 |
| 플라스틱 가공 | 487 | 205 | 5,365 |
| 보일러, 도관류 | 496 | 169 | 2,548 |
| 주형, 공구류 | 255 | 310 | 3,322 |
| 주물 | 193 | 69 | 2,501 |
| 표면처리, 열처리 | 177 | 413 | 2,270 |
| 고무, 합성고무 가공 | 130 | 58 | 1,405 |
| 나사류, 패스너, 냉연제품 | 55 | 40 | 546 |
| 절연 및 압연제품 | 22 | 69 | 229 |
| 스프링류 | 19 | 24 | 214 |
| 단조, 압인, 스탬핑 등 | 8 | 38 | 67 |
| 기타 | 325 | 248 | 2,595 |
| 상기 분야 내부간 하청생산 | 2,030 | 4,781 | 19,831 |
| 총 하청생산 | 9,874 | 9,824 | 72,439 |

자료원: Riost-Alihankinta 2006.12 (2008.2월 기준 입수가능한 최신 통계)

2) 핀란드의 하청산업 진출 유망분야

일반적으로 핀란드 산업은 첨단기술을 기초로 한 기술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 하청업체들이 진출할 만한 가장 유력한 분야로는 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을 들 수 있다.

□ 전자산업 분야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하청업체 수는 숫자는 적지만, 매출액 면에서는 전체 하청산업 매출액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하청산업은 세계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노키아는 직접적으로 하청생산 업체를 발굴하지는 않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하청협력업체를 통해서 부단히 새로운 하청 업체를 찾고 있다. 노키아의 대표적인 하청협력 업체로는 유럽 최대의 EMS 업체인 Elcoteq를 비롯해서 Scanfil, Perlos, Aspocomp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핀란드 국내 하청산업체들은 90년대부터 세계적인 이동통신 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Flextronics나 Solectron, ST Microelectronics와 같은 외국계 하청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해 있다.

□ 기계산업 분야

핀란드의 기계산업은 과거 오래 동안 핀란드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지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제지기계 제조업체인 Metso를 들 수 있으며, 산업용 크레인(KCI Konecranes), 엘리베이터(Kone), 특수 운반기기, 산업용 로봇 장비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많은 반제품 및 고부가가치의 부품 수요가 있다.

□ 북구 최대 하청산업 전시회인 'Alihankinta' 참가 바람직

핀란드 하청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Alihankinta' 라는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180킬로 떨어진 핀란드 제2의 도시 탐페레(Tampere)에서 개최되는 동전시회는 최근 몇 년간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 분야에서는 북구 최대의 전시회로 발전하였으며, 방문객수 면에서는 MIDEST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큰 전시회이다. 따라서 동 전시회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인근 북구국가를 비롯해서 발트 3국, 러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 바이오산업

1) 개 황

OECD에 의하면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은 '지식이나 재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살아 있는 조직이나 다른 생명 또는 비생명 재료에 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은 핀란드에 있어서 특히 초창기에는 IT산업에 이은 차세대 전략산업이자 첨단기술 국가로서의 핀란드 위상을 유지시켜줄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 이 분야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핀란드 통계청(www.stat.fi)이 발표한 2006년도 기준, 관련 통계에 의하면, 바이오 산업에 속하는 핀란드 기업체수는 약 130개사로 연간 총 매출액이 7억 유로 정도이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4,2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주력사업이 바이오 산업은 아니지만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대규모 의약 업체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매출액은 18억 6,000만 유로이며, 종업원수는 10,800명으로 늘어난다. 의약산업 분야로서 바이어 산업에 뛰어든 기업체수는 약 20개사이며, 바이오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60%는 의약산업 분야, 특히 진단학 관련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체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10-50명 사이의 기업이 36%, 50-250명 사이의 기업이 16%,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7%로서, 종업원 50명 미만의 기업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6위의 바이오 산업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체수는 유럽전체의 10%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 관련기업들이 연구소나 대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연구개발비에 비해 작은 국내시장 규모로 인해 핀란드 바이오 산업 체들은 대외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핀란드의 몇몇 바이오 산업체들은 70년대 이후 바이어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에서도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가지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Benecol, Xylitol, LGG Bacteria, PanSalt 등이다. Benecol(www.benecol.com)은 Raisio (www.raisio.fi)라는 기업이 식물성 스테롤을 기초로 추출한 일종의 마가린으로서 콜레 스테롤을 낮춰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995년부터 출시하여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자일리톨(Xylitol)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감미제로서 1972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서 껌과 치약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Valio(www.valio.fi)사는 우유제품에서 젖산을 낮춰주는 LGG Bateria를 개발하여 1990년부터 상용화하고 있으며, Biohit(www.biohit.fi)사는 시험실용 전자 피펫(electronic pipette)을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Pansalt는 소금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마그네슘과 포타슘을 첨가한 제품으로서 역시 핀란드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과 정보기술을 접합한 바이오정보학(bioinformatics)도 핀란드에서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공학 또는 의학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용도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수치를 매일 수시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해 자동적으로 병원에 알려줄 수 있다.

3) 바이오 단지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체는 아래와 같은 5개 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헬싱키와 Turku를 연결하는 바이오 단지는 북구의 3대 바이오 단지 중의 하나로서, 3개의 대학과 90개 사가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참여하고 있다.

- 헬싱키(www.sciencepark.helsinki.fi): Biocentrum Helsinki, Institute of Biotechnology 등 2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암, 호르몬 기관, 생물학, 식물학, 삼림 생명공학, 세포 생명공학, 구조생물학, 생물물리학 등 연구 (47개사)
- Turku(www.bioturku.fi): 면역학, 기관생물학(receptor biology)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 (38개사)
- Tampere(www.uta.fi): 암, 미토콘드리아, 세포 신호, 면역반응 및 생명 정보학 등 연구 (8개사)
- Oulu(www.oulu.fi/~biocweb): extracellular matrix연구, protein structure, transgenic functional studies 등 (15개사)
- Kuopio(www.uku.fi): A.I. Virtanen Institute(AIVI)가 transgenic animals, 유전자 치료를 위한 vector construction, 신경세포 및 bio-NMR 등의 분야에 특화 (15개사)

4) 주요 강점 분야

- 의약분야: 10여 개 이상의 핀란드 기업들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암이나 여러 유전병, 알츠하이머병, AIDS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핀란드의 CCT Cancer Targeting Technologies Oy와 일본의 NanoCarrier사가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BioTie Therapies (www.biotie.com), Hormos Medical(www.hormos-med.com), Juvantia(www.juvantia.com), Orion Pharma (www.orionpharma.com) 등이 있다. 이중에 특히 BioTie Therapies사의 경우는 프랑스의 Aventis와 미국의 Somaxon이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는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 진단학 분야: 이 분야 기업들은 생산량의 90% 이상을 여타 유럽국가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특히 immunological 시약과 시험실용 장비에 특화하고 있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Ani Biotech Oy(www.anibiotech.fi), Biohit(www.biohit.fi), Fit Biotech Oyj PLC(www.fitbiotech.com), Jurilab(www.jurilab.com) 등이 있다.

- 생명공학 자재(Biomaterials): 생명공학 자재의 응용분야는 생분해성 포장에서부터 정형외과, 치과용 자재 등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Inion Oy (www.inion oy), Emicaid(www.emicaid.fi) 등이 있다.
- 산업용 효소: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산업용 효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러한 기술은 제지산업, 섬유산업, 농가공품 산업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환경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능성 식품: 건강에 유익한 물질을 개발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낙농제품에서 젖산을 줄일 수 있는 LGG 박테리아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Benecol이 있고, 자일리톨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쓰레기 처리나 공기 정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오 기술과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다.

5) 잘 발달된 산학연 및 민간. 공공 분야간 협력

9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 산업에 대한 공공분야 투자는 크게 확대되어 지금까지 약 10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핀란드 국립기술청인 TEKES(www.tekes.fi)는 통상산업부 (www.ktm.fi)의 산하기관으로서 매년 바이오 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예산의 1/3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기업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TEKES의 연구개발비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예산의 25-30%까지 할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험자본 지원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금인 SITRA(www.sitra.fi), 공공기업용자 기금인 Finnvera(www.finnvera.fi) 등도 바이오 산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을 하면서 기업전략 수립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학술원인 Academy of Finland (www.aka.fi)도 바이오 기술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대학교 및 연구소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핀란드 유일의 위험자본 기업인 Bio Fund Management (www.biofund.fi)는 1억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바이오 산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에는 Conventum Capital Ltd., Equitec Partners, Euroventures Advisors, Fenno Management Oy와 같은 다수의 위험자본 기업이 있고, 국민연금도 점차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핀란드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 특히 연구소와 대학, 공공 및 민간 투자기관, 기업간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핀란드 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 산업과 전통산업간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6) 주요 이슈

□ 대외협력

핀란드는 EU 중소기업간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계획인 ERA Net차원에서 결성된 Eurotransbio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핀란드 외에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화란,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03년 11월 프랑스와 바이오 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양국 바이오 산업간 경험 교환, 공동 R&D 활동, 공동투자, 상용화,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

핀란드는 바이오 산업이 핀란드 경제에서 기계산업과 제지산업, 전자산업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한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바이오 산업은 부가가치 면에서 50년대의 제지산업에 버금가고 있고, 70년대의 전자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핀란드 경제연구소(ETLA : www.etla.fi)는 현재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10-18%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6년에 가서는 부가가치가 8.8억 - 12억 유로에 이를 것이고, 핀란드 전체 GNP의 0.05-0.0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이 핀란드 경제에서 3대 산업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려면 이러한 성장속도가 15-30년이나 지속되어야 한다.

□ 핀란드가 바이오 산업에 역점을 두는 이유

핀란드가 바이오 산업에 역점을 두게 된 데에는 핀란드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핀란드는 여타 유럽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약 10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민족과의 교류가 적어서 유전적인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 바이오 기술 연구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보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 및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각종 질병의 약물 치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핀란드인들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음식물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책 등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핀란드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 나노 바이오 산업 경향

최근에는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이 접합되는 나노 바이오 산업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신소재와 전자산업을 위한 나노부품 분야와 나노광학 등을 중심으로 이 분야 시장규모는 향후 수천억 유로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에 속하는 핀란드 기업은 약 60개사 정도로서 연간 30-40%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 기술 개발청인 TEKES는 2006년 1월 FinNano라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발족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향후 5년에 걸쳐 시행되고, 총 7,000만 유로의 예산 중 5,000만 유로를 TEKES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도 이와는 나노 기술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2006년도에 500만-1,000만 유로의 예산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 핀란드의 Mobidiag (www.mobidiag.com)사는 프랑스와 이태리의 전자산업 그룹인 ST Microelectronics(www.st.com)와 공동으로 전염병 및 유전병 분자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칩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관련 사이트

- Finnish Bioindustries FIB (www.finbio.net): 핀란드 바이오 산업 조합
- TEKES (www.tekes.fi): 핀란드 기술개발청
- Scanbalt (www.scanbalt.org):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된 노르딕 및 발트 연안국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

카. 나노산업

핀란드 정부는 나노 산업이 향후 몇 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핀란드 기술개발청인 TEKES (National

Technology Agency of Finland: www.tekes.fi)는 향후 5년간 7,000만 유로의 예산을 나노 산업의 R&D 활동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지원 프로그램은 핀란드 산업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센서, 전자부품, 나노 광학 및 나노 사진기술, 나노. 광. 생명공학 등의 분야의 나노 부품소재 개발에 우선권을 두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가용 재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R&D 그룹을 구축할 예정으로, Jyvaskyla에 소재하고 있는 나노과학 센터(Nanoscience Center)의 사무총장인 Ms. Paivi Torma에 의하면 현재 동 R&D 그룹에 핀란드의 대기업들이 참여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www.nokia.com)와 전자계측장비 및 기상 계측장비 등으로 널리 알려진 Vaisala(www.vaisala.fi) 등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는 2006년부터 500만~1,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나노 기술에 대한 학술연구를 개시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서 나노 산업 속하는 기업체수는 약 60개사로 대부분 소규모이며, 전체 근로자수도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해마다 30~40%씩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자재와 계측기기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일부 시장에 출시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많은 나노 기술 응용제품이 나오기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란드의 나노 산업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다.

- Liekki Oy(www.lieki.fi): 통신용 확대렌즈 및 산업 레이저용 광섬유 제조
- ABR Innova Oy(www.abr.fi): 타일 및 유리, 금속 제품의 표면이 저절로 세척되는 기술 개발, 응용 실용화
- Nanolab Systems Oy(www.nanolabsystems.com): 나노기술 시험실이나 나노관련 산업체의 장비 및 부속품 생산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EU FTA 체결 상황

핀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집행위가 회원국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EU집행위가 체결하고 모든 EU회원국에 적용된다.

1) EU의 FTA 정책

EU의 기본적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DDA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걸프협력회의), ASEAN 등 지역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재권,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FTA 추진과 관련, EU는 MERCOSUR, GCC와 같은 지역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ASEAN, Andean, 중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시장 개방관련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 EU의 FTA 추진 현황

GATT 24조 규정(적용영역-관세동맹 및 자유지대창설)에 따라 GATT/WTO에 통보된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동맹(Customs Unions) 체결현황 (상품부문)

| 대상국 | 발효일 | 비고 |
|---|----------|---|
| EC (European Community) | | |
| EC 회원국 | 58.1.1 | 로마협정 (EC 12) |
| EC 가입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95.1.1 | EC 15 확대 |
| EC 가입 - 키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04.5.1 | EC 25 확대 |
| 관세동맹 (Customs Unions) | | |
| 안도라 | 91.7.1 | 공산품(industrial product)에 국한 |
| 터키 | 95.12.31 | 공산품(industrial product)에 국한 |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 | |
| (a) 유럽 | | |
| 불가리아 | 93.12.31 |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
| 루마니아 | 93.5.1 |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
| 덴마크(페로스제도) | 97.1.1 | 기존 자유무역협정(1991) 대체 |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94.1.1 |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3국가와의 기존 FTA의 대체) |
| 스위스 | 73.1.1 | 리히텐슈타인 지역을 포함 |
| (전)유고슬라비아 | 01.6.1 |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04.4.1발효된 협정으로 대체됨 |
| 크로아티아 | 02.3.1 | 잠정협정으로, 01.10.29 조인된 협정으로 대체 예정 |
| (b) 지중해 | | |
| 알제리 | 76.7.1 |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으로 02.4.22 조인된 유로-지중해협정 (Euro-Mediterranean Agreement)으로 대체예정 |
| 이집트 | 04.6.1 | 유로-지중해 협정 |
| 이스라엘 | 00.6.1 | 유로-지중해 협정 |
| 요르단 | 02.5.1 | 유로-지중해 협정 |
| 레바논 | 03.3.1 | 유로-지중해 협정 |
| 모로코 | 00.3.1 | 유로-지중해 협정 |
|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 97.7.1 | 잠정 유로-지중해 협정 |
| 시리아 | 77.7.1 | 협력협정으로 유로지중해 협정 협상 중 |
| 튀니지 | 98.3.1 | 유로-지중해 협정 |
| (c) 기타 | | |
| 역외 국가 및 영토(OCT/PTOM II) | 71.1.1 | 로마협정 PART4 관련 국가 및 영토 |
| 칠레 | 03.2.1 | 서비스/투자 제외한 잠정협정 |
| 멕시코 | 00.7.1 | EC-멕시코 자유무역지대 |
| 남아프리카 | 00.1.1 | 무역개발협력협정으로 완전한 FTA 발효 전 임시 적용되고 있음 |

(자료: EU DG Trade)

□ GATS(서비스무역협정) 5조 규정에 따라 WTO에 통보된 협정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 대상국 | 발효일 | 비고 |
|--------------------------------|---------|------------------------------------|
| EC (European Community) | | |
| EC 12 | N/A | EC 12 |
| EC 15 | 95.1.1 | EC 15 확대 |
| EC 25 | 04.5.1 | EC 25 확대 |
| 유럽 (Europe) | | |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94.1.1 | EEA |
| 불가리아 | 95.2.1 |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
| 루마니아 | 95.2.1 |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
| 기타 | | |
| 멕시코 | 00.10.1 | 97.12.8 조인된 EC-멕시코 경제파트너십, 정치협력 협정 |

(자료 : EU DG Trade)

WTO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 (상품부문)

| 대상국 | 발효일 | 비고 |
|------|---------|------------|
| 산마리노 | 92.12.1 | 관세동맹, 잠정협정 |

(자료: EU DG Trade)

WTO 의무면제 받은 협정

| 대상국 | 발효일 | 비고 |
|--|--------|--|
| ACP 국가들 (77)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 00.3.1 | 로메협정(Lome Convention)에 이은 협력협정(Cotonou Agreement)으로 01.11.14 WTO 문서 WT/MIN(01)/15에 의거 승인 |

(자료 : EU DG Trade)

협상 진행 중

| 대상국 | 유형 | 참고 |
|---|-------------------------------|---------------------------------------|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MERCOSUR) | FTA | 2000년 협상개시 |
| 걸프협력회의(GCC-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협력 및 자유무역 | 1990년 협상개시 |
| 시리아 | 유로-지중해 공동협정 | 1998년 협상개시 2004년 10월 종료. 미 조인 상태 |
| 터키 | 서비스 및 공공조달 자유화에 관한 EC-터키 공동결의 | 기존 관세동맹을 서비스 자유화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0년 협상개시 |
| 알바니아 | 안정및공동협정(SAA) | 2003년 3월 협상개시 |
| CEDEAO ¹ (서아프리카)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3년 10월 협상개시 |
| CEMAC ² 및 Sao Tome and Principe (중양아프리카)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3년 10월 협상개시 |
| COMESA 16개국 ³ (남동아프리카)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4년 2월 협상개시 |
| CARIFORUM 15개국 ⁴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4년 4월 협상개시 |
| SADC ⁵ 7개국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4년 7월 협상개시 |
| ACP 14개 태평양국가 ⁶ | 경제협력협정(ACP국가들) | 2004년 9월 협상개시 |
| 한국 | FTA | 2007년 5월 협상개시 |

1. Benin, Burkina Faso, Capo Verde, Ivory Coast, Gambia, Ghana, Guinea, Guinea Bissau, Liberia, Mali,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Togo
2.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Republic of Congo, Gabon, Equatorial Guinea
3. Burundi, Comores, Djibouti, DR Congo, Eritre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Rwanda, Seychelles, Sudan, Uganda, Zambia and Zimbabwe
4.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S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and Trinidad and Tobago
5. Angola, Botswana, Lesotho, Mozambique Namibia, Swaziland, Tanzania
6. Cook Islands, Fidji, Kiribati,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uru,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Samoa, Tonga, Tuvalu, Vanuatu

(자료 : EU DG Trade)

3) EU의 FTA의 주요 특징

□ EU 회원국 지속 확대

-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 년 EU 가입
- 회원국간 많은 논란 속에서 2005 년 말 EU 는 터키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도 EU 가입 협상을 개시했다.
- 보스니아, 마케도니아와는 EU 가입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협상개시가 승인된 상태이다.

□ 지중해지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 EU 는 현재 9 개 지중해국가(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시리아)와 양자 FTA 를 체결한 상태이다.
- EU 는 2010 년까지 지중해 지역국가들과 양자 FTA 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 로 확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부문까지 자유화를 추진할 목표가 있다.
- EU 집행위는 2006 년 이라크와 무역협력협정(TCA)을 위한 회담 개시를 2005 년 말 제안한 바 있다.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 2000 년 4 월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회담 개최 이래 2004 년 10 월 리스본 회의까지 그간 16 차례 회담을 가졌다.
- 그 동안 교착상태를 보인 양측의 회담이 2005 년 9 월 2 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MERCOSUR 와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 EU 는 MERCOSUR 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무역비중이 22.9%에 이룸.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구 7 억 명의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가입국에 확대 적용 의정서 체결

-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 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 년 11 월 16 일 브뤼셀에서 오행경 주 EU 대표부대사와 Landaburu EU 집행위원회 총국장 및 Grant 주 EU 영국대사(EU 의장국)간 체결되었다.
-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 년 10 월 28 일 우리나라와 EU 간 체결된 것으로 2001 년 4 월 1 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04 년 5 월 1 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 개국이 확대되면서 동 기본협력협정의 확대적용을 위해 동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2007 년 5 월 시작된 이후로 다양한 무역 이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자동차가 핵심이슈로 등장하는 등 EU 와의 FTA 체결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어 체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의 FTA 추진현황

| | 기체결 | 협상 중 | 검토 중 |
|----|---------------------------------|------------------------|---------------------|
| 국가 | EU, EFTA, 유로-지중해협정, 멕시코, 터키, 칠레 | MERCOSUR, GCC, 시리아, 한국 | ASEAN, 대만, 싱가포르, 이란 |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핀란드의 무역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유로)

| 연 도 | 수 출 | 수 입 | 수 지 |
|----------|--------|--------|-------|
| 2003년 | 46,378 | 36,775 | 9,606 |
| 2004년 | 48,915 | 40,730 | 8,187 |
| 2005년 | 52,453 | 47,027 | 5,426 |
| 2006년 | 61,396 | 54,889 | 6,507 |
| 2007년 8월 | 43,485 | 39,429 | 4,056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 (www.tulli.fi) (2007년 6월 최신통계)

2006년 핀란드의 수출은 2005년의 수치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 보다 훨씬 높았다. 2005년에 푹 떨어졌던 무역수지도 2006년에는 증가세로 바뀌 었었다. 그 이유는 핀란드가 2005년에 있었던 펄프와 제지업계 파업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2006년 2사분기의 수출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7% 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펄프와 제지업계의 수출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기인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도 전년대비 2사분기의 수출 증가량은 22억 유로에 달하였으므로,

수출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펄프와 제지업계 외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비철금속 분야인데, 이것은 전세계 비철금속 시장가격이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나 2007년 1/4분기를 보면 수출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수입이 오히려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는 200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거대 무역 파트너로 떠오르는 나라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이다.

주요 국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

| 국명 | 2004 | 2005 | 2006 | | 2007 (8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독일 | 4920 | 5,573 | 6,934 | 21.0 | 4,867 | 11.2 |
| 스웨덴 | 5130 | 5,658 | 6,432 | 15.1 | 4,687 | 10.8 |
| 러시아 | 4231 | 5,744 | 6,215 | 3.7 | 4,205 | 9.7 |
| 미국 | 2987 | 3,059 | 4,011 | 17.5 | 3,107 | 5 |
| 영국 | 3265 | 3,518 | 4,001 | 11.0 | 2,588 | -3 |
| 네덜란드 | 2338 | 2,532 | 3,153 | 26.2 | 2,423 | 22 |
| 프랑스 | 1660 | 1,800 | 2,043 | 10.2 | 1,491 | 12 |
| 중국 | 1938 | 1,556 | 1,971 | 22.9 | 1,482 | 16 |
| 이태리 | 1845 | 1,616 | 1,946 | 20.5 | 1,219 | 1 |
| 에스토니아 | 1166 | 1,359 | 1,791 | 33.8 | 1,223 | 3 |
| 한국 | 283 | 410 | 390 | -4.9 | 390 | 55 |
| 계 | 48,915 | 52,453 | 61,396 | 15.5 | 43,485 | 9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2007년 12월 최신통계)

주요 국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

| 국명 | 2004 | 2005 | 2006 | | 2007 (8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러시아 | 4701 | 6,557 | 6831 | 15.4 | 5,419 | 2 |
| 독일 | 6643 | 7,027 | 8530 | 11.8 | 5,554 | 12 |
| 스웨덴 | 5864 | 4,967 | 7478 | 12.5 | 3,889 | 12 |
| 중국 | 1362 | 2,820 | 2936 | 49.0 | 2,948 | 13 |
| 영국 | 1888 | 2,099 | 2534 | 25.2 | 1,912 | 3 |
| 네덜란드 | 2606 | 1,878 | 3544 | 22.0 | 1,858 | 25 |
| 미국 | 1334 | 1,966 | 1342 | -17.1 | 1,364 | 3 |
| 이태리 | 1523 | 1,672 | 1661 | 9.5 | 1,484 | 15 |
| 프랑스 | 1738 | 1,697 | 1770 | 4.2 | 1,403 | 21 |
| 덴마크 | 2130 | 1,486 | 2431 | 12.2 | 1,060 | 3 |
| 한국 | 144 | 690 | 430 | 64.9 | 646 | 19 |
| 계 | 40,730 | 47,027 | 54,889 | 15.5 | 39,429 | 10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2007년 12월 최신통계)

주: 핀란드 관세청은 최종 도착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청이 집계한대 핀란드 수출실적과 큰 차이를 보임 (양국 관세청간 수치차이는 우리나라의 핀란드를 경유한제3국 수출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유로, %)

| HS code | 품목 | 2004 | 2005 | 2006 | | 2007(2월)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85 |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 | 10,654 | 12,907 | 13,192 | 2.2 | 1,893 | -8.2 |
| 48 |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 | 8,239 | 7,311 | 8,448 | 15.6 | 1,291 | -4.8 |
| 84 |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 | 5,992 | 7,010 | 7,795 | 11.2 | 1,312 | 22.9 |
| 72 | Iron and steel | 3,320 | 3,577 | 4,313 | 20.6 | 979 | 75.5 |
| 87 |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 | 1,880 | 2,628 | 3,370 | 28.2 | 500 | 1.2 |
| 27 |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 2,089 | 2,350 | 3,298 | 40.3 | 297 | -21.0 |
| 44 |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 2,505 | 2,425 | 2,691 | 11.0 | 493 | 18.9 |
| 39 |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 1,338 | 1,479 | 1,635 | 10.6 | 297 | 20.2 |
| 90 |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 1,394 | 1,504 | 1,602 | 6.5 | 236 | -5.3 |
| 89 |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 975 | 12,907 | 1,309 | 216.8 | 38 | 14.3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2007년 최신통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유로, %)

| HS code | 품목 | 2004 | 2005 | 2006 | | 2007(2월)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27 |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 283,727 | 403,245 | 499,120 | 23.8 | 1,218 | -12.6 |
| 84 |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and mechanics | 395,912 | 428,889 | 467,899 | 9.1 | 1,032 | 1.1 |
| 85 |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and parts there | 319,416 | 345,835 | 386,691 | 11.8 | 1,384 | 11.1 |
| 87 | Vehicles other than rail way or tramway rolling-sto | 325,843 | 338,562 | 371,513 | 9.7 | 853 | 9.8 |
| 30 | Pharmaceutical products | 109,764 | 122,808 | 133,840 | 9.0 | 245 | 13.0 |
| 39 | Plasticsand articles the reof | 103,811 | 115,945 | 130,889 | 12.9 | 262 | 0.1 |
| 72 | Iron and steel | 88,489 | 97,562 | 121,654 | 24.7 | 644 | 111.6 |
| 29 | Organic chemicals | 87,222 | 101,448 | 111,020 | 9.4 | 169 | 6.6 |
| 90 | Optical,photographic, cinematographic,measuring, | 85,703 | 92,583 | 103,164 | 11.4 | 200 | 7.7 |
| 73 | Articles of iron or steel | 49,199 | 55,173 | 64,345 | 16.6 | 197 | 29.4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2007년 최신통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대 핀란드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

- 2003년 10억불을 돌파한지 불과 2년만인 2005년에 20억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의 역대 최고 수출금액은 휴대폰 및 가전제품의 대 러시아 우회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 핀란드 수출급증세는 핀란드 내부요인보다는 러시아의 수요가 급증한 데 주로 기인한다.
- 2006년에 대러시아 직접 수출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 핀란드 수출액이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 더욱 심화되어 수출규모가 13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 그러나 수출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핀란드 관세청 기준에 따르면 2005년 및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핀란드 수출은 각각 690백만유로 (17위, 시장점유율 1.5%), 871백만유로 (15위, 시장점유율 1.6%) 로 나타났다. 2007년에도 11월까지 이미 전년도 연간 수출규모를 넘어선 939백만 유로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수출입

(단위: US\$ 백만, %)

| 연 도 | 한국의 수출 | | 한국의 수입 | | 무역수지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 2004 | 1,696 | 57.9 | 441 | 16.3 | 1,255 |
| 2005 | 2,012 | 18.6 | 659 | 49.4 | 1,353 |
| 2006 | 1,897 | -5.7 | 513 | -22.1 | 1,384 |
| 2007 | 1,293 | -31.8 | 963 | 87.7 | 330 |

자료원: KOTIS(2008최신자료)

핀란드 관세청이 집계한 한국-핀란드 무역통계

(단위: 백만 유로)

| 연 도 | 한국의 대 핀란드 수출 | 한국의 대 핀란드 수입 | 무역수지 |
|-----------|--------------|--------------|-------|
| 2004년 | 433.2 | 306.5 | 126.7 |
| 2005년 | 689.6 | 409.8 | 279.8 |
| 2006년 | 870.5 | 390.4 | 480.1 |
| 2007년 11월 | 938.7 | 533.3 | 405.4 |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 (2008년 2월 최신자료)

주1) 핀란드 관세청 수입통계는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최초 도착지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상 수출금액보다 작게 나타남. 양국간 집계금액의 차이는 결국 핀란드를 경유해서 러시아로 최종 흘러 들어간 중계무역 물량임

주2) 2007년 이후 핀란드를 경유한 대 러시아 수출이 줄어 들고 대 러시아 직접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이러한 양국간 통계상의 차이가 급격히 해소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치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수출

-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전화기와 세탁기, 진공청소기, 에어컨, 전자 레인지, TV, VCR, 냉장고 등 가전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자동차, 문구류, 무선 통신기기 부품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이 있다.
- 2007년에 자동차류의 수출이 다소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자동차 부품류의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전체 대 핀란드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경우 TSR로 러시아 접경지역에 운송되어 트럭으로 환적,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비중이 크다.
- 2006년에는 러시아로의 우회수출이 줄어들며 한국 관세청에 의하면 마이너스 성장세로 기록되었지만 실질적인 대 핀란드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항공을 통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많은 품목들은 핀란드를 경유하였으나, 최근 핀란드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보안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터키 같은 비EU국가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대 핀란드 주요 수출 상품

(단위: US\$ 백만, %)

| HS | 품목명 | 2004 | 2005 | 2006 | | 2007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85 | 전기기와 그 부분품 | 1205 | 1,455 | 1,203 | -17.3 | 765 | -36.4 |
| 84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그 부분품 | 347 | 320 | 253 | -20.8 | 202 | -20.2 |
|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56 | 126 | 312 | 146.6 | 149 | -52.3 |
| 3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17 | 20 | 25 | 21.0 | 34 | 39.6 |
| 40 | 고무와 그 제품 | 9 | 18 | 15 | -13.6 | 19 | 24.9 |
| 59 |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 공업용 방직용 섬유 제품 | 3 | 4 | 8 | 101.8 | 14 | 79.6 |
| 60 |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 1 | 4 | 5 | 40.0 | 14 | 173.7 |
| 74 | 동과 그 제품 | 0.6 | 0.3 | 12 | 3,576.7 | 8 | -34.4 |
| 73 | 철강의 제품 | 3 | 5 | 5 | 0.5 | 11 | 97.0 |
| 72 | 철강 | 2 | 0.9 | 0.8 | -8.3 | 8 | 822.4 |

자료원: KOTIS(최신자료)

다. 수입

-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수입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전자부품과 임산물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오고 있다.
- 대 핀란드 주요 수입 품목은 펄프 및 제지기계를 비롯하여 발전기 등 중전기기, 고철, 정밀 화학원료, 선박용 엔진 및 부품 등으로 대부분 산업용제품 및 원부자재이다.
- 대 핀란드 수입 실적은 2003년 들어서 중전기기 및 철강제품의 수입 이 줄어들어 7.9% 감소하였으나 2004년, 2005년 들어서는 고철, 스테인리스 열연판 등 철강제품의 수입증가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 각각 16.3%, 49.4%의 증가율을 보였다.
- 2007년 수입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 들었다.

대 핀란드 주요 수입 상품

(단위: US\$ 백만, %)

| HS | 품목명 | 2004 | 2005 | 2006 | | 2007 |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84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79 | 116 | 125 | 7.3 | 362 | 190.6 |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47 | 48 | 78 | 64.3 | 190 | 142.9 |
| 72 | 철강 | 141 | 284 | 60 | -78.7 | 103 | 70.3 |
| 44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21 | 29 | 44 | 53.7 | 68 | 53.0 |
| 48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 39 | 41 | 50 | 20.1 | 52 | 3.8 |
| 90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 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31 | 38 | 50 | 31.4 | 44 | -11.1 |
| 73 | 철강의 제품 | 8 | 10 | 13 | 19.3 | 23 | 80.7 |
| 28 |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 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 4 | 4 | 7 | 73.4 | 20 | 198.9 |
| 29 | 유기화학품 | 18 | 24 | 16 | -33.2 | 17 | 7.9 |
| 30 | 의료용품 | 4 | 6 | 11 | 76.7 | 16 | 44.2 |

자료원: KOTIS(최신자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 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 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액션과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액션과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관세제도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벨기에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 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 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EU 대한수입규제 내역

| 품목 | CN 코드 | 유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고 |
|------------------------|--|------|----------|--|---|
| PET 칩 | 3907.6020 Ex 3907.6080 | 반덤핑 | '05.12.1 | '07.2.27 L59 p.1 | 부분중간재심 결과 관세 148.3Euro/t SK 케미컬 그룹, KP 케미컬 그룹은 무형의 |
| 철강제 관연결구류 | Ex 7307.9311/ 9319/9930/9990 | 반덤핑 | '01.6.1 | '02.8.24 L228 p.1 '03.5.8 L114 p.1 | 관세율 : 44% 2007.8월 재심 개시 |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 5503.20 | 반덤핑 | '99.10.7 | '00.12.28 L332 p.17 '05.3.17 L71 p.1 '07.4.11 L96 p.1 |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 2010.3월 종료예정 |
| 양문형 냉장고 | 8418.1091 | 반덤핑 | '05.6.2 | '06.8.31 L236 p.11 |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 D-RAM | 8542.2111/2113 /2117/2101/210 5, 8548.9010 | 상계관세 | '02.7.25 | '03.8.22 L212 p.1 '06.4.12 L103 p.1 | 관세율 : 34.8%(하이닉스) '06.4.12일 32.9%로 하향조정 |
|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수출 | 2804.6900 | 우회덤핑 | '06.3.6 | '04.3.4 L66 p.15 '07.1.19 L13 p.1 | 관세율 : 49% |

라. 교역관련 주요법규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 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 장벽 및 시장 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 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 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칙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TARIC):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 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걸어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자료원 : EU집행위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총 5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이중 한 품목(철강제 관연결구류)은 반덤핑 재심 조사중임.

또한 1개 품목 (DRAM)에 대해서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가. EU 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 (반덤핑 규제품목) 2007.12.10일 기준

| 품목 | CN 코드 | 유형 | 조사개시 | 최종판정 | 비고 |
|------------------|--|-----------------|----------|-----------|--|
| PET 칩 | 3907.6020 Ex 3907.6080 | 반덤핑 | '99.11.6 | '00.11.30 | - 05.12.1 재심 개시 - 07.2.27 확정관세 부과 결정 - SK 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컬은 무세, 기타 업체는 148.3Euro/t |
| 철강제 관연결구류 | Ex 7307.9311/ 9319/9930/9990 | 반덤핑 | '01.6.1 | '02.8.25 | - 반덤핑 확정관세율 : 44% - 07.8.18일부로 재심 조사중 |
| 폴리에스테르 단성유 (PSF) | 5503.20 | 반덤핑 | '99.10.7 | '00.12.28 | - 05.5.27, 향후 5년간 지속 결정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6%, 기타 10.6% 2010.3월 종료예정 |
| 양문형 냉장고 | 8418.1091 | 반덤핑 | '05.6.2 | '06.9.1 | -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삼문형은 제외 |
| D-RAM | 8542.2111/2113 /2115/2117/210 1/2105.8548.90 10Ex8473.3919/ 5010 | 상계관세 | '02.7.25 | '03.8.22 | - '06.4.12일부로 상계관세율 32.9%로 하향조정 |
| 실리콘 | 2804.6900 | 중국산 우회 덤핑 | '06.4.21 | '07.1.19 | -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 측에 제출기로 함 - 09.3.5일부로 종료 예정 - 관세율: 49% |

○ PET 칩 (페트병, 페트필름, 폴리에스텔 제조원료)

- 제 소 일 : 99. 9. 22
- 조사개시 : 99. 11. 6
- 제 소 자 : EU 플라스틱 제조업 협회
- CN 코드 : 3907 60 20, ex 3907 60 80
- 품 목 명 : 점착성 173mg/l 이상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 | |
|--------------|---|
| 99. 11. 6 |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및 태국산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동시 조사 개시 |
| 00. 8. 5 |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산 PET 칩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상계관세의 경우 한국산 PET 칩은 보조금 마진이 0.04-0.46%에 불과해 조사종료. 그러나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4개국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
| 00. 11. 30 |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EUR/t) - 호남 101.4, 동국 148.3, 대한 28.2, SK 케미컬 0, 기타업체 148.3 |
| 03. 5. 22 | ○ 한국, 대만산 반덤핑 재심개시(EU 플라스틱제조업체요청) |
| 04. 3.22-4.6 | ○ 대한화성,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 현장실사 |
| 04. 8.27 | ○ 3개 실사기업에 대해 미소마진(중간보고서) |
| 04. 11.26 | ○ 최종결과 발표(05.1.21 관보게재) - 3개 실사기업 0%, 호남, 동국 및 기타업체 이전과 동일 |
| 05. 3. 2 | ○ 05.12.1부터 종료예정 관보공고 |
| 05.12.1 | ○ 종료재심 및 대한화성, KP 케미칼, SK 케미칼 3개사에 대한 부분중간 재심 실시공고 |
| 07.2.27 | ○ 부분 중간재심 결과 (EUR/t) SK 케미칼,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칼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

○ 철강제 관연결구류

- 제 소 일 : 01. 4. 17
- 조사개시 : 01. 6. 1(규제개시일 : 02. 8. 25)
- 제 소 자 : Defence committee of EU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 피제소국 : 체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한국, 슬로바키아
- CN 코드 : ex7307 9311, ex7307 9319, ex7307.9930, ex7307 9990
- 품 목 명 : tube and pipe fittings(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mm

| | |
|----------|--|
| 01. 6. 1 | ○ 반덤핑 조사 개시 |
| 02. 2. 7 | ○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산 잠정관세 부과 |
| 02. 8.24 | ○ 확정관세 부과(한국산 확정관세율 : 44%) |
| 02.12.11 | ○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으로 반덤핑관세 지속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공개요청 |
| 03. 5. 8 | ○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부과로 반덤핑관세율 단계인하 - 인하율 : 03.28 일까지 20.3% 03.3.29-04.4.28일까지 22.7% 04.4.29-05.2.28일까지 24.8% |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 제 소 일 : 99. 8. 23
- 조사개시 : 99. 10. 7
- 제 소 자 : CIRFS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
- CN 코드 : 5503.20
- 품목용도 : 쿠션, 자동차 시트 등의 기초재료

| | |
|--------------|---|
| 93. 11 | ○ 한국산에 대하여 1.6-4.8%의 반덤핑 관세 부과 |
| 97. 10 | ○ 반덤핑 재심을 개시하였으나 99. 7. 29일 한국산 덤핑 마진이 1.8%로 미소마진 종료 |
| 99. 10 | ○ 한국, 인도산 반덤핑 조사 개시 |
| 00. 7. 6 | ○ 한국산에 대해 0-20.2%의 잠정관세 부과 |
| 00.12.28 | ○ 한국산에 대해 0-20.2% 확정관세 부과 - 대한화성, 성림: 0%(미소마진) - 휴비스, SK 글로벌: 각각 4.8%, 기타 : 20.2%(새한 등) |
| 03.12.8 | ○ 중간재심 통보(12.29 관보게재) |
| 04.1.14 | ○ 샘플링기업으로 대한, 휴비스, 성림 3개사 선정발표 |
| 04.3-4월 | ○ 04.3.12 대한의 대응포기로 (주)새한으로 대체(집행위) - 새한에서 4.29 답변서 제출(휴비스,성림 3월 기제출) |
| 04.7.29-8.13 | ○ 집행위 현장실사(휴비스, 새한인더스트리, 성림) |
| 04.9.23 | ○ 공청회 개최(벨리스 변호사측에서만 참석) |
| 04.12.7 | ○ 최종안 발표 - 성림 0%, 휴비스 5.7%, 새한인더스트리 10.6% 동우, - 이스트영, 경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 각 6% - 기타업체 10.6% * 대만업체는 미소마진 |
| 05.3.17 | ○ 관보고시(04.12.7 발표내용과 동일) |
| 05.4.4 | ○ 별도재심관련 Kellner 부과장 면담(상무관) |
| 05.4.19 | ○ 05년 말 종료기로 관보게재 |
| 05.5.27 | ○ 4.19 관보정정(3.17자 관보대로 향후 5년간 적용) |
| 05.12.22 | ○ LMP 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개시관보(C325) |
| 06.4.28 | ○ 새한인더스트리 Hearing |
| 07.4.11 | ○ LMP제외관련 부분중간재심 결과 (L96) : 제외 불가 |

○ 양문형 냉장고

- 제 소 일 : 05.4.18
- 조사개시 : 05.6.2
- 제 소 자 : Whirlpool사 * 평균덤핑마진을 : 43% 주장
- 대상품목 : 400리터 초과 양문형 냉장고
- CN 코드 : 8418 1091

| | |
|---------|--|
| 05.4.18 | ○ 제소 |
| 05.6.2 | ○ 조사개시(관보게재) |
| 05.6.6 | ○ 대표부에 제소장 및 질의서 사본 도착 - 집행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에 6.2일 기준 40일 내에 질의서를 회신토록 요청 |
| 05.7.25 | ○ 답변서 집행위 제출 |
| 06.3.1 | ○ 집행위 잠정관세 관보게재(3.2일부 시행) -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 |
| 06.4.26 | ○ 삼성전자 Hearing |
| 06.5.11 | ○ LG전자 Hearing |
| 06.5.31 | ○ 대우 일렉트로닉스 Hearing |
| 06.8.31 | ○ 확정관세부과 (대우 3.4%, LG 12.2%, 삼성 0%), 삼문형 제외 |

○ DRAMs

- 제 소 일 : 02.6.10
- 조사개시 : 02.7.25
- 제 소 자 : 인피니온 (Infineon, 독일)
- 대상품목 : DRAM 및 파생품
- CN 코드 :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 | |
|-----------------|--|
| 93. 3 |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제소자 : 유럽전자부품 제조협회 |
| - | ○ 95. 6 - 97. 3월간 일시적으로 반덤핑 조치 부과정지 |
| 97. 4 | ○ 반덤핑 조치 재도입 |
| 97. 11. 25 | ○ 제소자의 제소 철회를 이유로 반덤핑 조치 종료 |
| 02. 7. 25 | ○ 한국산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개시 |
| 03. 4. 24 | ○ 잠정상계관세 부과 - 삼성전자 : 무세, 기타 업체 33% - 적용시기 : 03.4.24일부터 4개월간 |
| 03. 5. 8 | ○ 세이프가드/반덤핑관세 동시부과로 관세율 단계 인하 - 03.3.28일까지 20.3% - 03.3.29 - 04.4.28일 22.7% - 04.4.29 - 05.3.28일 24.8% |
| 03. 8.22 | ○ 34.8% 확정관세 부과 |
| 04. 1.23. | ○ WTO 분쟁해결기구 의제상정 |
| 04.8.24 일정확정 | ○ 04.5월, 6월 양측 서면입장서 제출 ○ 04.11월, 12월 1차,2차 패널회의 ○ 05.3.15 중간보고서 배포 ○ 05.4.19 최종보고서 배포 ○ 05.6.17 WTO 회원국 회람 ○ 05.8.3 상소기한(양측 상소 안함) |
| 06.2.24 | ○ 양자협상 개시(중간재심개시관련) |
| 06.3.18 | ○ 부분중간재심 실시 관보게재(C67) |
| 06.4.12 | ○ 34.8%에서 32.9%로 하향조정 |

나. 조사중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 덤핑 수출 조사 중(조사 개시일 : 2006.4.21)

| 품 목 | 내 역 | 집행위공고 |
|----------------------------|----------|--------------------|
| Polyethylene Terephthalate | 부분중간재심※ | L59 2007.02.27 p.1 |
|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 | 관세 부과 연장 | L13 2007.01.19 p.1 |

※ 부분중간재심 결과 (EUR/t) : SK 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 케미컬은 0
나머지 업체는 148.3EUR/t 관세 부과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07년 12월)

5. 관세제도

관세분류는 '95년 EU에 가입한 이후 EU의 CN코드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증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1차 산품 위주)에 대해서는 혼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은 거래가격 기준(일반적으로 CIF)에 두고 있는데, 평균관세율은 10% 이내이다.

핀란드 세관은 관세 및 수입부과세, 그리고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에 대한 수입 및 부과세도 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세는 연료, 알코올, 담배, 설탕 그리고 음료 등에 부과되고 있다. 핀란드 세관에서는 수입산 및 핀란드산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핀란드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세, 보험 및 환경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EU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에서 핀란드의 주요 관세율을 CN코드에 의해 검색할 수 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home.htm

혹은 핀란드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tulli.fi/en/07_Finnish_Customs/05_Information_Service/index.jsp

가. 제도일반

EU회원국인 핀란드는 EU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EU공동관세를 부과한다. EU의 대외 공동관세는 EU 준회원 국에 적용하는 특혜관세, GATT 가맹국 및 통상협정 체결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 등의 협정 관세, 개도국에 공여하는 GSP(특혜관세) 및 기타 제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EU 공동관세의 과세기준은 증가세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과세가격

과세가격이란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 표준, 즉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품에 대하여 합당한 가치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관세분류는 HS분류체계를 기초로 EU 통합분류(C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 가격에 의한 증가세이나 종량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관세 혜택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관세 : EU 회원국
- 특혜관세: 협정체결국 및 지중해 연안국에 대해 품목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 일반특혜관세: 개도국 공산품에 적용
- 일반관세: 역외국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

나. 관세 검색 웹사이트

- EU 회원국의 관세율 조회 가능 웹사이트
 - <http://www.trade.gov/td/tic/tariff/EuropeanUnion.pdf>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온라인 조회 가능)

다. EU 공동관세율 검색방법

1)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을 접속한다.

HS Code를 통해 검색할 경우 "Taric Code"를 클릭 하는데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미리 아는 경우, HS Code 6자리를 입력 후 옆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품목명에 해당하는 HS Code를 검색한 후 확인한다.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공용이며, 7-10자리까지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 8자리를 모두 입력할 경우 해당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품목명(키워드)을 통해 검색할 경우 "Tariff Description"을 클릭, HS CODE 검색을 한다.

2) Country of origin란 목록상자버튼을 눌러 알파벳순으로 나와 있는 국가명에서 "South Korea - KR"를 찾아 클릭한다.

3) 하단 "Duty Rates" 버튼을 클릭한다.

- 주요 품목군의 관세율
 - 광산품: 0-1.7%
 - 화공원료 및 제품: 6.5%
 - 목재 및 종이제품: 0-8%
 - 기계, 전자제품: 5-6% (단, 8527 과 8528의 일부 제품은 14%)
 - 경공업제품: 5%
 - 농산품: 15%
 - 섬유 및 신발제품: 13% (종량세가 많음)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 품목 | 규정 지침 |
|--|-------------------|
|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90/396/EEC |
|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 2000/9/EC |
|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73/23/EEC |
|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 89/106/EEC |
|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94/9/EC |
|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 93/15/EEC |
|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 92/42/EEC |
|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 96/57/EC(에너지효율지침) |

| | |
|--|----------------------|
| 승강기(Lift) | 95/16/EC |
| 기계(Machinery) | 98/37/EC |
| 선박(Marine Equipment) | 96/98/EC |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 93/42/EEC |
|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 90/385/EEC |
|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98/79/EC |
|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90/384/EEC |
|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99/5/EC |
|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89/686/EEC |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 87/404/EEC |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 97/23/EC |
|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 94/25/EC |
| 장난감(Toys) | 88/378/EEC |
|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 96/48/EC, 2001/16/EC |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용품 : 침대 매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개선탄,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 신발, 섬유제품
 - 관광 :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유탄유 : 유탄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속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라. 폐전기전자제품 지침(WEEE, Directive 2000/96/EC)

- EU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 생산자 정의: ① 자사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② OEM등 다른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전기전자제품을 자사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③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입업자로 일반적인 생산자의 개념인 producer나 maker의 의미보다는 역내 최초 판매자의 개념이 강함
- 적용대상은 교류 1,000V, 직류 1,500 이하의 전기제품(전류나 전기장을 이용해 작동하거나 전류나 전기장을 생성, 전송, 측정하는 장비)로 구체적인 품목은 대형 가정기기, 소형 가정기기, IT및 통신 장비, 소비자 장비, 조명 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대규모 고정산업 도구 제외),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의료 장비 (모든 이식제품은 제외), 검사 및 통제 기기, 자동판매기 등이다.
- 회원국 별로 2005년 8월13일 이후부터는 ①분리회수 시스템운영(EU 회원국), ②회수처리비용책임(생산자), ③재활용마크 부착(생산자) ④재활용정보 제공(생산자)이 시행되어야 한다.
- 비용분담은 2005년 8월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2005년 8월13일 이전 출시된 제품 관련 비용은 지불 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관련 제품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 2006년 12월31일까지는 ①회원국별 거주자 1인당 연간 4kg 이상 회수(EU 회원국) ②품목별로 의무 재활용 목표(생산자)가 달성되어야 한다.

생산자 의무 재활용 목표

| 품목 | 세부 기준 | 목표 (가구당 평균 중량기준) |
|--|-----------------|---------------------|
| 대형 가정기기 및 자동판매기 | 최소 재생비율 목표 | 80% |
| | 최소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 75% |
| IT 및 통신장비, 소비자 장비 | 최소 재생비율 목표 | 75% |
| | 최소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 65% |
| 소형가정기기,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도구, 장난감 및 레저스포츠 장비, 검사 및 통제기기 | 최소 재생비율 목표 | 70% |
| | 최소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 50% |

- WEEE 마크 제도는 강제 규정이나 회원국 정부의 특정 WEEE 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는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이다.

(1) WEEE 마크 부착

- 제조자는 EU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13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자사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마크 부착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바퀴 달린 쓰레기통 모양의 WEEE 마크 부착 (crossed-out wheeled bin) ②생산자명 표시 ③검색은 막대를 WEEE 마크 아래에 추가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년 8월13일 이후 출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 등이 있다.



- (2) 재활용 정보를 제조사 홈페이지, 안내문, 설명서 CD-Rom,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3) 재활용 기관 혹은 정부 당국 등 생산자 등록 기관에 생산자로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이때 회사정보,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재활용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보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재무보증은 생산자가 시장철수, 부도 등에 의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5년 8월 13일 이후 판매된 제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적립, 재활용보험 가입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4) 판매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을 관리하여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기관을 통해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5) 생산자는 회원국 별 가입 재활용제도별로 적정 회수 처리 비용 부담

- 미이행 시 제재사항
- 무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EEE에 대한 개런티를 제공하지 않은 유통업자: 제품당 150~400유로 벌금
- WEEE의 적절한 수거 시스템, 처리, 회수. 재정 절차를 만들지 않은 생산자: 30,000~100,000유로 벌금
- financial guarantee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제품당 200~1,000유로 벌금
- EEE 사용 설명서에 이탈리아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2,000~5,000유로 벌금
- 신 EEE 출시 후 1년 내에 매뉴얼 또는 전자 매체의 형식으로 회수 처리 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생산자: 5,000~30,000유로 벌금
- WEEE에 마크 표기 없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제품당 200~1,000유로 벌금
- 생산자 등록 이전에 제품을 출시한 생산자: 30,000유로~100,000유로 벌금

7.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본골격은 WTO 규정과 동일하며, 대부분 동 기준에 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핀란드 기업들은 몸집을 줄이는 대신 기술 및 특허를 중심으로 기업을 다운사이징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고 있음에 따라 해외특허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특허권(Patent)

핀란드 특허법(Finnish Patent Act 550/1967)에 따르면 특허권은 산업적으로 사용가능한 발명이나 상품의 획기적인 개선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핀란드 특허법은 영양제나 의약에 관한 특허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동·식물의 발견, 과학 혹은 수학이론과 미술작품등은 특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핀란드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Berne and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등에 가입하였으며, 핀란드 특허등록청(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 Registration)에 의해 비교적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헬싱키 시내중심지에 있는 등록청을 방문하면 수십대의 컴퓨터로 기 등록되어 있는 상표 및 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핀란드 특허/등록청 을 통해 상표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이 때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만 등록 가능하며, 특허의 경우 등록된 날부터 발효되어 20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상표, 특허, 디자인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핀란드 거주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두어야 하며, 동 에이전트는 상표, 특허, 디자인에 관한 서류작성과 모든 형식요건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5년 이내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핀란드 공인 에이전트 일람: http://www.prh.fi/stc/attachments/12_Patent_agents.pdf)

나. 상표권 (Trademarks)

핀란드는 1993년 EU 가입을 앞두고 EU상표권과 합치되게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상표권은 등록 신청일부터 발효되어 보통 10년간 효력을 발휘하고 10년 이후 갱신할 수 있는데, device, words, letter or number, 3-D shape of goods or their packaging와 색상, 슬로건, musical jingles 등이 등록될 수 있다.

핀란드 상표법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핀란드 특허청을 통하는 방법
- EU의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
- Madrid Protocol 의정서에 따르는 방법

또한 핀란드 상표법 2조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대중에게 또는 동종 비즈니스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을 인정받는다 고 되어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자가 침해사실을 고소할 경우에 핀란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상표위조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의해 고소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보호법은 literary 또는 artistic works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a written or spoken, fictional or descriptive representation, a musical, dramatic or cinematographic work, or a work of fine art, architecture, artistic handicraft or industrial art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동법에 의거 등록된 저작권은 복사 및 공공이용 등에 대한 모든 독점권한을 가진다. 핀란드의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은 저자가 저작행위를 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발생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저작권의 소유자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하며, 핀란드 법에 따르면, 법인, 컴퓨터 등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 저자가 두명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저자는 저작권을 공동소유 한다.

핀란드의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 저자일 경우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최후 사망자의 사후 70년까지이다.

핀란드에서는 저작권에의해 보호되는 작품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대중에게 복제, 배포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핀란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라.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핀란드 산업 디자인법 (Finnish Design Act 221/1971)에 따라 핀란드는 만약 제품의 특정 디자인이나 패턴, 장식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일 경우 산업 디자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품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다. 산업 디자인권은 처음 등록일자로부터 5년간 지속되며, 5년씩 두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마. 실용신안(Utility models)

핀란드에는 실용신안권(Finnish Utility Model Act 800/1991)이 있어 특허 및 산업의장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동법은 특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창조적인 가치가 있는(inventive steps) 어떤 기술적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용신안법은 제품의 생산과정은 보호하지 않으며 화학제품의 경우도 제외된다. 등록 후 4년간 효력을 가지며 효력말소 후 4년간 더 연장하거나 각각 2년씩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기 타

1991년까지 핀란드에는 컴퓨터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으나, 199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된 후 개인용으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원 : Roschier-Holmberg & Waselius, Attorney Ltd. 무역관 자료 종합

8. 통관/운송

가. 핀란드 세관통관 절차

자료원 www.tulli.fi

나. 수입신고

- 한국으로부터 직접 물건이 수입될 경우, 현지 수입회사는 선박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도착 통지서를 받게 되고 (D/O, Delivery Order 또는 Airway Bill), 보통 Forwarding 회사를 통해 통관하게 된다. 세관통관서류는 거의 동일하며,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물품검사

- 핀란드의 경우, EU 가입 이후 모든 통관절차를 EU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만의 특징적인 통관절차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EU회원국의 경우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농산물의 경우 일부 규제 있음).
- 한국산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된 이후 이 물건이 핀란드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이미 모든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는 수출입통계에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아닌 독일 및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EU에 소속돼 있는 국가의 수출입통계를 확인할 경우 그 나라의 개별적인 통계와 더불어 EU 전체 통계를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역외산 제품의 경우 EU내에 도착할 시점에서 즉시 각종 규제와 검사가 선박 外로 도착한 경우에는 20일(선박 外로 도착한 경우), 선박으로 도착한 경우는 4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후 역내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규제도 없다.

- 핀란드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공산품은 CE 마크부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품목에 따라 별도의 인증이 있는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수출 의무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 세관 제출 서류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L)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 중량 그리고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되어 있음.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ry Certificate)
 - 검역증은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위생증명서는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이 EU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 기타: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및 성분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 (Certificate of Inspection),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or Weight) 등 신용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 핀란드 내 운송

핀란드는 국제적인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해운이 물량기준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가 러시아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부의 인구밀집 지역이 거의 대부분 발트해로 둘러 쌓여 사실상 섬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발트 3국을 포함한 10개국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핀란드는 러시아 및 발트 3국과 EU 등 유럽국간 물류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여기서 핀란드는 발트해 연안국가들 서로 연결하는 협력관계와 물류산업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핀란드의 장거리 해운 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은 주로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와 유럽의 항구(로테르담)를 통해 핀란드 항구에 들어온 뒤 러시아로 들어가는 화물이며, 핀란드에 들어온 화물은 보통 트럭으로 환적돼 모스크바나 상페테스부르크 지역으로 운송된다. 이러한 운송로는 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회하는 것이기는 하나,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항로를 장악하고 있는 해운사로는 MSC, Maersk, P&O, CMA-CGM 등이 있다.

바. 무역항 개황

핀란드는 총 30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및 인구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개의 주요 항구 중에서도 특히 헬싱키와 Kotka, Rauma, 철강

해운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Tornio가 가장 중요한 항구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 항만은 기술적으로 잘 발달돼 있고 2003년부터 Portnet (www.fma.fi/portnet/english/index_eng.html)라는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다.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핀란드의 항만 서비스 비용은 러시아 상페터스부르크에 비해 절반 가격인 반면에 서비스 질은 2배라고 말하고 있다.

항만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Finnlines 그룹의 Finnsteve Oy Ab(www.finnsteve.fi), Steveco (www.steveco.fi), Rauma Stevedoring(www.raumastevedoring.fi), Containerships(www.containerships.fi), John Nurminen(www.johnnurminen.com) 등이 있다.

□ 핀란드의 대표적 항구

- Port of Hamina
 - 주소: P.O. Box 14, FI-49401 HAMINA
 - 전화: +358 5 225 5400
 - Fax: +358 5 225 5419
 - 책임자: Mr. Seppo Herrala
 - www.portofhamina.fi
- Port of Helsinki
 - 주소: P.O. Box 800, FI-00099 HELSINKI
 - 전화: +358 9 173 331
 - Fax +358 9 1733 3232
 - 책임자: Mr. Heikki Nissinen
 - www.portofhelsinki.fi
- Port of Kotka
 - 주소: Laivurinkatu 7, FI-48100 KOTKA
 - 전화: +358 5 234 4280
 - Fax: +358 5 218 1375
 - 책임자: Mr. Kimmo Naski
 - www.portofkotka.fi
- Port of Rauma
 - 주소: Hakunintie 19, FI-26100 RAUMA
 - 전화: +358 2 834 4712
 - Fax: +358 2 822 6369
 - 책임자: Mr. Hannu Asumalahti
 - www.portofrauma.com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www.finnports.com 참고바람.

사. 운송회사 리스트 및 비용

대표적인 국제적 물류 운송 회사로는 TNT, FedEx, DHL 등이 있다. 보통 운송기간은 1주일이 채 안 걸린다. www.DHL.fi 에 가면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항만 전문 운송회사로는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다.

□ Varova Oy

- P. O. Box 18
- FI-00501 HELSINKI
- Tel. +358 9 773 961
- Fax. +358 9 730 074
- www.varova.fi
- 가격: 최근 (2007년) 수신한 Varova 회사의 (핀란드-한국) 자세한 가격표는 다음과 같다.

FREIGHTS FOB

Destination: Helsinki, uncleared

| | | | | |
|--------------|-----|------------------|------------------|------------|
| Departure | Cur | | | |
| KR 000 Busan | USD | 1300,00 / 20' DC | 2350,00 / 40' DC | 75,00 / cl |

+ BAF (Buncher Adjustment Factor in March 2007 is USD 232,00 / 20' or USD 464,00 / 40' or USD 11,60 / cbm)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in March 2007 is 9,3 % of sea rate)
 + ISPS Security Charges EUR 15,00 / container.

The transit time from harbour to harbour is abt. 5 weeks.

DOMESTIC COSTS

| | | |
|-------------------------------------|-----|--------------------|
| Release fee | EUR | 55,00 / BL |
| Registration fee | EUR | 16,00 / Container |
| Terminal fee in Finland | EUR | 5,00 / 100 kg |
| min. 25,00/shmt | | |
| Container lift/transport in harbour | EUR | 105,00 / Container |

▣ 위 회사의 한국 에이전트:

□ Kor-Star Shipping Co Ltd

- 서울 중구 무교동 동민 빌딩 603호
- Tel.: +82 (0)2-777 1118
- Fax: +82 (0)2-777 2236

핀란드의 추운 겨울(평균 영하 10도 - 영하 20도)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4월까지의 낮은 기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 (낮은 기온에서 얼어버리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등)을 운송할 경우, 특수 보온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약 11일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핀란드는 자체시장이 협소하고 고임금, 고물가로 생산단가가 높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핀란드의 앞선 기술력과 높은 생산성을 필두로 하여, 인근 러시아 및 EU 국가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확보 등 양호한 사회간접자본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 인근 러시아 및 발트 국가들과의 삼각무역을 고려하여 운송 및 저장산업의 투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1991년 러시아의 개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모두 철수하여 현재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사가 몇 개 없는 실정이다.

그 외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고율의 조세, 엄격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 언어 장벽 등 여타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으나 핀란드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법질서에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잘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상용 연령층과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자국언어의 자부심과 집중화가 높은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유리한 정도 있다.

나. 투자지로서 장단점

□ 장점

투자대상지로서 핀란드의 투자매력은 단연 첨단기술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급기술인력들을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20백만), 러시아(서부지역 44백만), 발트3국 (에스토니아 1.5백만, 라트비아 0.6백만, 리투아니아 3.6백만), 동구권(벨라루스 10.3백만)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핀란드에 투자하는 경향은 단순 핀란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및 심지어 유럽대륙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우수인력과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발하다.

개방이전 러시아, 발트 및 동구권 국가들과 많은 상거래 경험으로 효과적인 러시아 시장 진출 노하우도 중요한 투자 메리트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상페테스부르크까지 12시간, 모스크바까지 24시간 이내에 모든 상품들이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도 있다.

세계 최대 모바일폰 메이커인 NOKIA 의 본사가 헬싱키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부품 협력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세계 모바일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가 인하 압력으로 중국 및 인도 등지로 주요 협력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원가가 저렴한 국가 소재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물량을 늘리는 추세가 강하다.

고급인력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전문분야의 지식이 뛰어나며 생산성 대비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단점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2배 정도로 크지만 전체인구가 530만 명 정도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이 작기 때문에 local market 을 겨냥한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진출을 원하는 회사들의 경우 중부 유럽에 지사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남동구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핀란드에 대한 진출은 현재까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핀란드는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라. 투자장려분야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환경기술서비스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Services)
- 보건 (Health Care)
- 산림 클러스터 (Forest Cluster)
- 채광업 (Mining Industry)
- 무역 및 서비스업 (Trade and Services)

마. 중점 투자유치 대상국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2006년도 기준 스웨덴 24.6%, 네덜란드 18.7%, 벨기에 11.9%, 독일 8.3%, 미국 7.9% 의 순 으로 핀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중앙은행 통계)

바. 투자제한 분야

현재 핀란드 법에는 외국인의 핀란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1993년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이후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US\$2억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핀란드 정부에서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핀란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매도 자유로운데 다만 레저 및 여름 별장, 그리고 국경선 지역의 경우 일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1996년까지 서정,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이전까지 세금 등의 사유로 해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자연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EA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경우 상공부의 사전허가만 있으면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국영기업이 다수 있으며, 이들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사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정부 지분이 5~10%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도 하나의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완전한 투자개방으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Nokia 사의 경우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80% 이상이고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및 민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다.

핀란드 투자청과 Nokia 등에서는 핀란드의 경쟁력 원천이 완전한 개방 (투자 및 무역)으로 인한 핀란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 사회간접자본

□ 전력

일반용 220V 50HZ 단상, 산업용 380V 50HZ 삼상을 표준전압으로 택하고 있으며, 전기는 산업용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개별적인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전력보급 사정은 좋은 편이며 전력사용료도 다른 물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교통

핀란드의 경우 항공, 철도, 고속도로, 수로 등이 전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국내항공으로는 FINAIR가 독점하고 있으며, 2000년도 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3백만, 국내선 이용객 수는 8백만 이었으며, 화물은 국제선 95천 톤, 국내선 19천 톤이 항공으로 운송되었다. 국제공항으로는 헬싱키와 탐페레 공항이 있으며, 국내선은 투르크, 오울루, 탐페레를 비롯한 주요 도시는 물론 소도시까지 잘 연결되어 있다.

서로는 스웨덴과 남으로는 에스토니아와 바다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주요 도시들과 잇는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헬싱키와 항코(Hanko)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철도는 국영철도회사가 거의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폭설이 많이 내리는 한 겨울에도 북부 LAPLAND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철도의 총길이는 80,000 km로서 인구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철도의 약 27%가 전기에 의해 움직인다. 동 철도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으로 까지 연결되어 시베리아 철도의 귀착지 역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광활한 영토에 인구분포가 적어 헬싱키를 중심으로 100km 이내에는 그나마 4차선이나 이후로는 모두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여행은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도로는 총 43.9billionkm이며, 자동차 사고사망률이 연간 400명 정도로 매우 낮다. 한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비교적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예약 없이도 표를 구입할 수 있다.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로 전국에 크고 작은 이름없는 소택지를 포함하여 약 18만개가 있으며, 이들의 호수를 이용하여 해안까지의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핀란드인들은 여름에 summer cottage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cottage가 섬이나 호수 주변에 위치하여 여유가 있는 층에서는 호수를 주변으로 보트 및 요트를 즐기고 있다.

대중교통으로는 택시의 경우 대부분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로서 콜 택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동일하다. 택시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로서 헬싱키공항에서 시내중심지까지는 20km 거리에 25분 정도 소요되며 30-35유로 정도 부과되며, 시내간 이동은 10-20유로 정도이다. 한편 헬싱키의 경우 핀란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Tram이라 불리는 전차, 버스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며, 시내 중심지에 중앙역과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전반적으로 편리하고 전체적으로 적은 교통량으로 인해 체증이 많지 않다.

□ 상하수도

상수도의 질은 매우 양호하여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으며, 공업용수도 매우 풍부하다. 핀란드의 경우 물 관리 재판소가 별도로 있으며, 각종 공장설립 및 도시계획 시, 동법에 의거 철저한 물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용료는 매우 저렴하고 상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 우편제도

우체국은 전국에 1,619개가 산재해 있으며, 헬싱키시내의 경우 1-2일, 핀란드 전국에 2-3일, 국제우편은 다른 유럽보다 2-3일, 시일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우체국의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이며, 다른 유럽국가보다는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지며 일반우편, 속달이 가능하며 민간 우편인 DHL, EMS가 가능하나 가격도 비쌌 뿐 아니라 시일이 5일 이상 걸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국가별로는 특히 2006년에 확대된 EU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전체 해외 투자 중 19%를 차지함으로써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프랑스의 순으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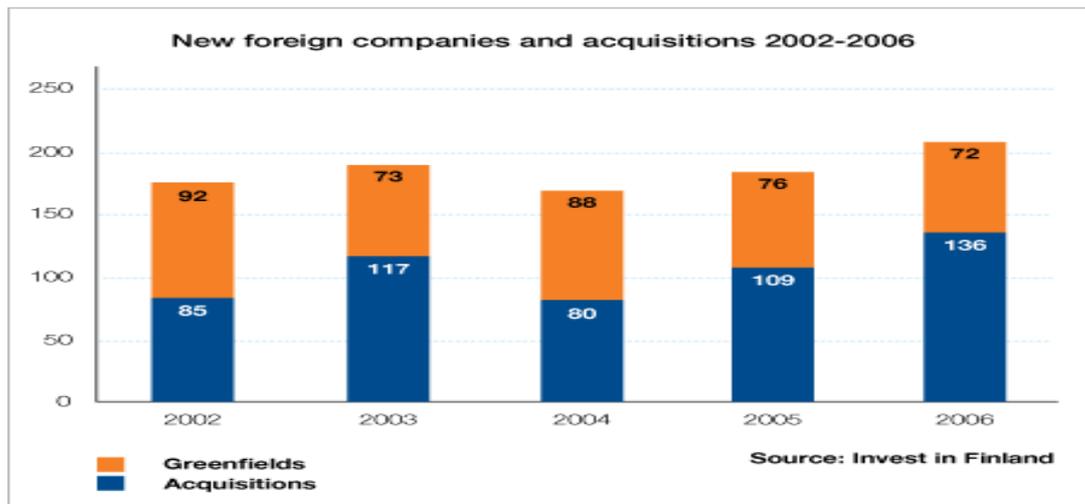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 국 명 | 2004 | 2005 | 2006 |
|------------|--------------|--------------|--------------|
| 스웨덴 | 21669 | 19637 | 17032 |
| 네덜란드 | 9338 | 12303 | 12894 |
| 벨기에 | 1237 | 1273 | 8201 |
| 독일 | 5013 | 5001 | 5753 |
| 미국 | 4709 | 5903 | 5476 |
| 프랑스 | 1373 | 1686 | 1939 |
| 캐나다 | 821 | 1621 | 1551 |
| 중국 | 1187 | 1576 | 1495 |
| 에스토니아 | 620 | 1267 | 1425 |
| 룩셈부르크 | 1688 | 5480 | 1417 |
| 총 계 | 62420 | 68974 | 69003 |

자료원: The Bank of Finland (2007년 최신자료)

외국인 對 핀란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 건수 (2002~2006년)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업종 | 2004 | 2005 | 2006 |
|-----------|--------------|--------------|--------------|
| 제조업 | 41042 | 44212 | 43475 |
| - 금속/공업 | 20939 | 18317 | 17724 |
| - 임업 | 14811 | 17138 | 16361 |
| - 기타 제조업 | 1761 | 4609 | 4851 |
| - 화학 | 3531 | 4148 | 4539 |
| 기타 서비스업 | 8372 | 10438 | 10759 |
| 금융업 | 2798 | 4118 | 3443 |
| 무역 | 1377 | 1542 | 1532 |
| 부동산업 | 802 | 842 | 841 |
| 기타 | 8029 | 7822 | 8953 |
| 총계 | 62420 | 68974 | 69003 |

주: 10개 이상 산업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 없음

자료원 : Bank of Finland (2007년 최신자료)

나. 외국인 지역별 투자동향

핀란드에는 여타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산업단지공단 혹은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밀집 지역이 없다. 따라서 입지의 선정은 투자 목적 혹은 동기에 의해 거의 결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거래처와의 접근용이성 즉, 고객 소재지역 (예를 들어 고객이 NOKIA 인 경우 NOKIA 본사가 있는 Espoo 혹은 NOKIA 공장이 있는 Salo) 혹은 시장 (러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항구 혹은 러시아와의 국경지대)과 가까운 곳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다. 주요 외국 투자 기업

국제적 해외 직접투자 조사기관 LOCO Monit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핀란드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한 회사는 Borealis와 스웨덴 은행 Svenska Handels banken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중공업 분야의 직접투자도 활발이 이루어졌는데 광산 회사인 New Boliden, 세계적인 독일 화학기업 BASF가 높은 직접투자율을 보였다.

| 회사 | 프로젝트 건수 |
|-----------------------|---------|
| Borealis | 4 |
| Svenska Handelsbanken | 4 |
| New Boliden | 2 |
| BASF | 2 |
| ABB | 2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 기업의 對 핀란드 진출현황

□ 對 핀란드 투자 (2007년 3/4분기 기준)

- 신고 기준: 15 건, 3,188 천불
- 투자 기준: 13 건, 2,104 천불
 - 제조업: 8 건 1,123 천불
 - 숙박음식업: 1 건 249 천불
 - 부동산 및 임대업: 2 건 263 천불
 - 도소매업: 2 건 469 천불
- 순투자: 13 건, 2,104 천불 (회수건 없음)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의 對 핀란드 투자현황

(2007년 2/4분기기준 단위: 천 미불)

| | 투자자명 | 현지법인명 | 신고일자 | 업종 | 취급상품 | 비율 | 신고 | 투자 |
|----|--------------------|---|------------|------|------------------|--------|--------------|--------------|
| 1 | 하이닉스반도체 | Globalstar Finland Oy | 1996-03-20 | 통신업 | 위성통신 서비스 | 49.00 | 95 | 0 |
| | 현대종합상사 | | | | | 49.00 | 10 | |
| 2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컨설팅(주) | Proha Oyj | 2001-01-11 |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 100.00 | 158 | 158 |
| 3 | (주)에스피지 | SPG Europe Oy | 2002-02-08 | 도소매업 | 소형전기모터 | 100.00 | 9 | 0 |
| 4 | 정의균 | JeongEuiKyun | 2002-04-18 | 도소매업 | 자동차부품 | 100.00 | 300 | 175 |
| 5 | 김포카바링 | East Valley Fiber Corp. | 2002-10-15 | 제조업 | 화학사, 카바링사 | 100.00 | 200 | 100 |
| 6 | 김정훈 | Indicom Inc. | 2003-05-30 | 서비스업 | 정보기술 | 100.00 | 105 | 105 |
| 7 | 성대산업 | JuneSprayer | 2003-07-08 | 제조업 | 플라스틱 | 100.00 | 500 | 52 |
| 8 | 지엠대우오토앤 테크놀로지 | Chevrolet Finland Oy GMDaewoo Finland Oy | 2003-10-28 | 도소매업 | 자동차판매 | 100.00 | 294 | 294 |
| 9 | 최상철 | RoyalClassic Tobacco | 2003-12-17 | 제조업 | 담배 | 100.00 | 250 | 240 |
| 10 | 전건석 | Young Sin Tronics | 2004-03-09 | 제조업 | 컴퓨터 디스플레이 | 100.00 | 50 | 50 |
| 11 | 삼일제약 | Oy Ajat Ltd | 2004-12-30 | 제조업 | 치과용 X-Ray Sensor | 12.90 | 817 | 681 |
| 12 | 최문기 | KoreaHouse Restaurant | 2005 | 서비스업 | 음식점 | | 400 | 249 |
| | | | | | | | 3,188 | 2,104 |

주: 종업원수와 관련된 정보는 N/A/자료원: 한국 수출입 은행

핀란드 진출 한국회사

| 회사명 | 주소 | 비고 |
|--|------------------------------------|--|
| LG Electronics | Ayritie 12 A 01510 VANTAA | www.lg.fi |
| SAMSUNG Electro-Mechanics GMBH | Tekniikantie 1202151 ESPOO | |
| SAMSUNG Electronics Nordic AB | Linnoitustie 4A02600 ESPOO | www.samsung.com/fi |
| HYUNDAI MarineScandinavia (Finland) | Tekonbulevardi 3-5 01530 VANTAA | |
| Yoosung Preciso Co., Ltd. Sivuliike suomessa | Kyntajankuja 4b 24100 SALO | |
| SPG Europe Oy. | Voudinkatu 33, 21200 Raisio | 성신모터 www.spg.fi |
| Green Integrated Logistics | Tehontie 10, 45200 Kouvola | 지사장 Boris Yoo |
| Anilabsystems | Tillitie 3 01720 VANTAA | Biotechnics와50:50 투자 www.anylabsystems.com |

자료원: 헬싱키 무역관 내부자료

핀란드 내 한국회사 대리사

| 회사명 | 주소 | 비고 |
|---|---|--|
| HYUNDAI Motors (Simeon Group) (현대자동차) | Laivalahdenkatu 8 00880 HELSINKI | www.hyundai.fi |
| KIA Motors Oy(기아자동차) | PL 57 00211 HELSINKI | www.kiamotors.fi |
| Net Shipping Ltd. Oy (한진해운) | Nina Tammasaarenkatu 1 00180 HELSINKI | www.netship.fi |
| Railtrans (우진해운) | Mannerheimintie 160 B P.O. Box 33 00271 HELSINKI | www.railtrans.fi |

자료원: 헬싱키 무역관 내부자료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1/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투자는 신고기준 12건 3백만 불, 투자도착 기준 10건 2백만 불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 상시 주재원 파견 없이 현지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도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2004년도 이후 한국식당 진출 이외 국내로부터 투자진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핀란드 영업활동은 대개 현지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유럽총괄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 여타 국가에 소재한 현지법인 명의로 핀란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현황 집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업종별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투자진출 현황은 상기한 수출입은행 통계에서 보듯이 매우 미미한 정도이며 대기업의 우회 진출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여타 국가에 진출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투자의 특징적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굳이 구분해 본다면 다음 세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한 투자진출

핀란드를 경유지로 해서 인근 러시아 혹은 발트 3국 그리고 심지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핀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집계하는 대 핀란드 수출액 중 50% 이상이 최종 도착지는 러시아이다. 주요 품목은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이며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인근 혹은 항구 부근의 물류 창고를 자체 운영 혹은 물류회사를 통해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

□ 핀란드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한 투자진출

핀란드 인구가 적어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작다고 하지만 핀란드에 큰 고객을 가지고 있는 국내업체의 경우 핀란드 내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핀란드에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폰 메이커인 노키아를 겨냥해서 진출한 삼성전기, 유성정밀 등 모바일 부품업체들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모바일 부품업체만 3-40여 개 사가 핀란드에 진출해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핀란드 디지털 TV 방송의 시작으로 인해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 업체들이 투자 진출하고 있다.

□ 기타

2005년 7월 핀란드 한국식당이 헬싱키에 문을 열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최초의 진출을 기록하였다.

다. 지역별 투자동향

핀란드에는 여타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산업단지공단 혹은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투자 유치 밀집 지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투자목적에 의해 거의 결정되고 있다.

거래처와 접근성 즉, 고객 (NOKIA를 타겟으로 할 경우 Nokia 본사가 있는 Espoo 혹은 공장이 있는 Salo) 혹은 시장 (러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항구 혹은 국경) 과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1) 주식 규제 관련 법규

주식시장법(the Securities Market Act) 은 1989년8월 발효되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2) 환경 관련

핀란드는 Air Protection Act 및 Water Protection Act 와 같은 여러 환경 보호 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Noise Control Act, Public Health Act 및 Adjoining Properties Act 등과 더불어 관련 관청 혹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 보호 관련

핀란드의 Product Liability Act 는 엄격한 책임 개념을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다.

EU 의 지침과 동 법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 되는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도 제조 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Product Safety Act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4) 공정 경쟁 관련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은 1992년 제정되었으며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공정 경쟁을 한 경우 제재조치로서 최고 연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몰도록 되어 있다.

5) 정부소유 기업 관련

공익목적을 위해 국영 철도, 주류 도매 및 유통, 복권 판매 등 일부 산업분야 독점을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 장려 분야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환경기술서비스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Services)
- 보건 (Health Care)
- 산림 클러스터 (Forest Cluster)
- 채광업 (Mining Industry)
- 무역 및 서비스업 (Trade and Services)

다. 투자제한/금지분야

현재 핀란드 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1993년 EEA 협정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협정) 이후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미화 2억 불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시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 특별한 경우 에 한하여 핀란드 정부에서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핀란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매도 자유로운데 다만 레저 및 여름별장(summer cottage) 그리고 국경선 지역의 경우 일부 투자가 제한된다.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 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이전까지 세금 등의 사유로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내 자연인 및 법인일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EA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경우에도 통산부 사전허가만 있으면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 으로 등록 가능하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국영기업이 다수 있으며 이들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사전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듯 완전한 외국인투자 문호 개방으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NOKIA 사의 경우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80% 이상이다.

라.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재하다.

핀란드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을 국내 투자자들보다 우대하는 정책은 없다.

다만 낙후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업체들에게 자본공여 및 운영보조금 지급, 운송보조금 및 기타 금융지원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기타 연구개발 및 수출증진, 기계 및 장비도입과 reorganizing 등에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금융 및 세제지원의 경우 사전 관련 당국에 의해 검토가 필요하다.

마. 외국인 투자 관련 웹사이트

- Invest In Finland
 - www.investinfinland.fi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기관)
- 기타 유관기관
 - www.enterpriseinfinland.fi (회사설립 및 운영 관련)
 - www.barassociation.fi (핀란드 법률가 협회)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진출 형태별 비교 및 투자절차

| 형태 | 최소 발기인수 | 최저 출자금 | 출자자의 법적책임 | 의사결정 기관 | 기업의 계속성** | 손익의 분배 | 비고 |
|---|------------|---|---|----------------|-------------------------------------|-----------------|--|
| Private Entrepreneur (개인기업) | 1 | 없음 | 무한 책임 | 개인 사업자 | 파산시 계속성 단절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European Economic Area내 거주해야함 (or 특별 허가서 필요) |
| Partnership Firm (합명회사) | 2 | 없음 | 무한 책임 | 무한 책임 사원 | 사전 합의 가능 | 정관에 따라결정 | 한명 이상의 동업자는 반드시 European Economic Area내에 거주 해야 함 (or 특별 허가서 필요) |
| Limited Partnership (ky) (합자회사) | 2 | 유한책임 사원은 반드시 일정액 이상 출자 해야 함 | 무한책임 사원과출자 지분만큼 책임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 | 무한 책임 사원 | 사전 합의 가능 | 정관에 따라결정 | 한명 이상의 법적 출자자는 반드시 European Economic Area내에 거주해야함 (or 특별 허가서 필요) |
| Limited Liability Company(oy) (주식회사) | 1 | EUR 8,000 | 출자지분 범위내 유한책임 | 이사회 | 주식양도에 의해기업주 바뀌어도 계속성 유지 | 주주들결의에 따라 결정 | 한명 이상의 주주는 반드시 European Economic Area내에 거주해야 함 (or 특별 허가서 필요) |
| Cooperative (협동조합) | 3 | 없음 | 출자지분 범위내 유한책임 | 이사회 | 조합권 매매불가 | 잉여금의 제한된 배당 | 비영리단체의 경우만 허용 |
| Branch of Foreign Company (해외 지사) | 1 | 없음 | 모회사의 무한책임 | 모회사 | 파산시 계속성 단절 | 모회사 | European Economic Area 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특별 허가서 필요 |

* 법인, 자연인 모두 발기인 가능 **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파산시

나. 일반적인 법인 형태 ;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 1인 혹은 2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해 설립 가능

국가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설립자중 적어도 1인은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하며 만약 법인의 경우에는 EEA지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자의 국적은 상관없다.

법인인 경우 EEA 에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경우 그리고 등록된 사무실, 본사 사무실이 EEA에 속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EEA지역에 영구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 주식회사의 장단점

- 장점
 -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서 대외공신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가장 유리한 형태이다.
 - 현지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
 - 핀란드의 경우 외국인 신규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하지만 투자 이후 Tekes 와 같은 핀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회사 형태를 가질 때 가장 유리하다.
- 단점
 - 지사(사무소) 설립에 비하여 설립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 설립절차

- 설립의향서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 정관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주식의 납입 (subscription of the shares)
- 주주총회 (Constituent Meeting of the Shareholders)
- 정관의 채택 (adop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사장 및 이사회 의장 선임(elec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 납입자본금 납입 (payment of the share capital)
- 주식회사 등록 (registration of the limited company)

다. 지사 (branch)

□ 지사의 정의

핀란드 내에서 영주하는 주소를 가지고 외국조직 혹은 기관의 이름으로, 외국기관 혹은 조직을 대신해서 사업 혹은 전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조직 혹은 기관이다.

핀란드 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기업의 지사의 상호 (trade name of a branch)는 그 회사의 외국인 법인명과 함께 보충명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CDE Cargo Ltd., branch of Finland 와 같이 000 기업의 지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호 (trade name)는 2개 혹은 3개 언어로 등록이 가능하다.

□ 지사의 장단점

- 장점
 - 주식회사보다 설립과정이 덜 복잡하고 구비서류도 간단하다.
- 단점
 -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주식회사의 직원들만큼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하여 현지직원 채용에 불리하다.

- 지사형태로는 핀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지사의 설립절차

만약 외국조직 혹은 기업이 EEA 지역에서 등록한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Trade Register 에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EEA 이외 지역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국가 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에 핀란드 내에서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출하고 활동을 개시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 the postal address of the branch (지사의 우편물 주소)
- the type of activity carried out by the organization(해당조직의 활동 형태)
- the register in which the organization opening the branch is registered in its home state as well as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gister (투자기업의 등록번호 관련)
- the trade name and legal form of the organization as well the trade name of the branch(상호, 조직의 법적인 형태)
- personal data(서명권자 및 등록 서명)
- persons authorized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대표자)
- personal data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branch(대표자 정보)
- 기타 www.enterpriseinland.fi 에 가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라. 한국 기업 진출 검토시 유의사항

1) 기업 형태 선정

핀란드 외국인 투자 자문 기관 Invest in Finland(www.investinfinland.fi)는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할때 limited liability company(“oy,” 한국의 **주식회사**)의 형태나 **해외 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Representative Office(연락 사무소)”는 핀란드에서 법적 기업 실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왜 주식회사인가?

- 법적 능력
 - 주식회사는 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계약 체결이 자사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세금 지불과 채무 이행에 관해 어떠한 개인적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 대외공신력과 신뢰도
 - 주식회사는 핀란드 시장에서 장기간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신력과 신뢰도면에서 핀란드인에게 좋은 인상을 가져다 준다. 만약 해외 지사인 경우 모기업이 파산을 하면 자회사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만, 현지 법인인 경우 새로운 소유주 아래서 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 또한 주식회사는 종업원들을 고용하는데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들은 핀란드 법에 따라 회사 파산시에도 임금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파산할 경우 충분한 보상금이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게다가, 핀란드의 고급 인력은 훗날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 핀란드 정부의 보조
 - 외국인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식회사는 Tekes(과학 기술 기금)같은 핀란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핀란드 과학 기술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세금
 - 주식회사는 자체적인 회계, 세금 설계가 용이하다. 그러나, 현지 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핀란드 시장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외 지사의 경우, 자회사의 수익 중 어느 부분이 핀란드에서 행한 사업의 결과로 나온 부가가치인지 핀란드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고, 해석의 논란의 여지도 다분하다
- 매각
 - 주식회사는 매각이 용이 하지만, 해외 지사의 경우는 쉽지 않다.

□ 왜 해외 지사인가?

- 법적능력
 - 상품 판매 혹은 고객지원 업무만을 하는 연 매출 €500,000정도 규모의 업체는 해외 지사 설립이 적절하다(더 많은 매출 업체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리.) 이 경우 한국 모회사와 핀란드 자회사 사이의 모든 계약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해외 지사는 핀란드 현 거주자를 대표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만약 모회사에서 아무도 핀란드로 보내지 않는다면, 핀란드 회계법인이 한시적으로 대표인으로 고용될 수 있다. 한시적 대표인은 세금과 채무에 대한 개인적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보통 한시적 대표인은 모회사에게 보장 계약을 요구한다.
- 대외 공신력과 신뢰도
 - 핀란드인의 관점에서, 해외지사는 대개 시장조사와 같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세금
 - 핀란드인이 보는 해외 지사의 특성에 따라, 해외 지사는 최소한 1년 동안 법인세를 안내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통상 해외 지사의 사업 초기 무매출 무이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란드 국세청이 후에 과징금을 적용할지 모른다. 주식회사의 경우 무매출 무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설립절차 관련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 관련 법규가 더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설립절차의 간편 여부는 핀란드 진출시 회사 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회사를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핀란드의 이름있는 법률회사는 € 2,000~3,000 정도를 설립절차 대행비로 요구할 것이다. 설립절차 대행비는 대개 EEA지역외 거주자가 EEA 지역 내에서 회사 설립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허가(special permission)를 얻는 것과 state fee(몇 백 유로 정도 소요 됨)를 포함한다.

□ 꼭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건가요?

외국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하는 것이 요구된다.

- 모든 서류는 핀란드어 혹은 스웨덴어로 작성된다.
- 법률회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그 구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해외 지사인 경우 법률회사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대표인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만약 한국회사가 핀란드 내 사업 파트너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 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기간은?

핀란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보통 2~5주정도 걸린다. 한국 회사의 경우 최소한 5주 정도 예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관련서류들을 한국어에서 핀란드어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다. 특별 허가(special permission)획득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며 많은 시간을 요하진 않는다.

□ 핀란드의 기존 회사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핀란드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핀란드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는 매입을 기다리는 많은 수의 비활성 기업이 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법인이 이상 곧바로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회사명과 주소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인들의 부족한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 어느 정도 기술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개척이나 진출에 소극적인 회사를 전략적으로 M&A하여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다. 10년후의 1억달러보다 현재의 2~3백만 달러에 만족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M&A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핀란드에서 회사 운영하기

□ 구인

- 핀란드로 한국인 직원 파견하기
 -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3개월 이상 핀란드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만약 1년 이상 머무르게 된다면 그들은 근무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가

필요하다. 회사가 일단 핀란드에서 설립된 이후에는 근무허가와 거주허가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 일반적인 고용 법칙
 - 핀란드에서 고용된 모든 사람은 핀란드의 고용법률과 세제를 따라야 한다. 그들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임금 비용(non-wage cost)도 지불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절차는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와 비슷하다.

□ 경영진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지사는 이런 절차없이 운영 가능하다.

□ 세금

- 법인세
 - 법인세율은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26%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의 형태는 세금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핀란드 법인세의 기본 원칙은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핀란드의 세금 징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해외지사인 경우 어디서부터가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만약 해외 지사의 활동이 영속적이라고 간주된다면(1년 이상 지속) 무매출 무이익 주장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만약 지사의 수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핀란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계산한다.
 - 운영비(임금 포함) + 4~6% 이익률
Operating costs (including salaries) + 4 to 6 % profit margin
- 부가가치세
 - 핀란드 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 관련 회사만이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주식회사만이 환급이 가능하다.
- 소득세
 - 만약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반년이상 일한다면, 그들의 봉급은 핀란드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핀란드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 전문가(foreign experts)일 경우에는 2~3년간 균일세의 혜택을 받는다.

□ 회계

핀란드 회계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해외 지사보다 더 많은 회계 업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법인(주식회사)과 모회사간의 어떠한 거래도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송장 포함.) 해외 지사인 경우 자회사의 회계는 모회사의 회계에 종속된다.

마. 투자 관련 연락기관 연락처

1) 핀란드 투자유치 지원 기관; 투자청 (Invest in Finland)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992년 핀란드 상공부 산하에 "Invest in Finland" 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 투자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 동 기관은 외국인 투자

가들에게 핀란드가 발트3국 및 동유럽시장의 관문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총인원 8명 규모로 그 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투자청 연락처
 - 주소 : Kaivokatu 8, 6th floor FI-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 +358 10 773 0300
 - 팩스번호 : +358 10 773 0301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finland.fi>

2)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 리스트

- BDO
 - www.bdo.fi
 - BDO Finland Oy
 - Vattuniemenranta 2, 00210 Helsinki
 - Tel. +358 207 432 920
 - Fax +358 9 4780 8210
- Price water house Coopers
 - www.pwcglobal.com SVH
 - Price Water house Coopers Oy
 - Itämerentori 2, P.O.Box 1015, 00101 Helsinki
 - Tel. +358 9 228 00
 - Fax +358 9 174 102
-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 www.deloitte.com
 - Deloitte & Touche Oy
 - Munkkiniemen puistotie 25,
 - P.O.Box 94, 00331 Helsinki
 - Tel. +358 20 755 500
 - Fax +358 20 755 507
- Ernst & Young International
 - www.ey.com
 - Ernst & Young Oy
 - Elielinaukio 5 B, 00100 Helsinki
 - Tel. +358 9 172 771
 - Fax +358 9 1727 7700
-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 www.revico.fi
 - Revico Grant Thornton Oy
 - Paciuksenkatu 27, P.O.Box 18, 00271 Helsinki
 - Tel. +358 9 512 3330
 - Fax +358 9 458 0250

- KPMG International
 - www.kpmg.fi
 - KPMG: Investment in Finland KPMG Wideri Oy Ab
 - Mannerheimintie 20 B, P.O.Box 1037, 00101 Helsinki
 - Tel. +358 9 693 931
 - Fax +358 9 6939 3399

- Midsnell Group International
 - www.mgimidsnell.com
 - Tilintarkastustoimisto Kalervo Ariluoma Oy
 - Keskustie 4, 01900 Nurmijärvi or
 - Mannerheimintie 16 A 3, 00100 Helsinki
 - Tel. +358 9 250 9595
 - Fax +358 9 250 9715

6.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 지역별 투자여건 소개

핀란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 입지를 위한 특별한 장려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 입지 선정은 순수한 투자 동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다시 말해 투자동기가 핀란드의 IT 산업의 발전된 기술과 인력 활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이 밀집해 있는 오울루, 에스포 등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동기가 가장 큰 거래처와의 인접성과 자주 접촉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면 고객의 본사 혹은 공장 인근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 밖에도 핀란드를 경유하여 러시아 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다면 항구 혹은 국경 인근의 물류 기지에 입지를 할 것이고 서비스 업종인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감안되어 주요 도시의 중심가가 될 것이다.

가. 산업단지, 공단 등 부재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해화학공업단지, 구미공단, 구로공단, 인천남동공단 등과 같은 공단이 없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인 산림산업 (펄프 및 제지) 의 경우 목재 등의 원료를 위해 대부분이 지방의 산림 속에 위치해 있으며 각 기업들의 공장들은 원료 및 수소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핀란드 제2의 도시인 탐페레 (Tampere) 의 경우 예전에는 섬유산업으로 유명했으나, 섬유업계는 현재 거의 도산하였거나 해외로 진출하여 몇몇 업체들만이 있으며, 헬싱키 (Helsinki) 의 경우 특별한 산업보다는 각 기업 및 행정, 금융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나. 산업 클러스터

핀란드에는 Science Park 라고 불리는 산-학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대학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상호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헬싱키, 오울루, 탐페레, 투르크, 쿠 오피오 등 7개 지역이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오울루 (Oulu) 의 경우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 km 떨어져 있는 인구 12만의 소도시이나, 헬싱키-오울루간 비행기편이

하루 10 여편 가까이 될 정도로 왕래가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외 마찬가지로 산-학-연구소의 집합체로써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 자유무역지대

핀란드에는 별도의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며, 다만 헬싱키(Helsinki), 투르크(Turku), 항코(Hanko), 코트카(Kotka), 하미나(Hamina) 등 항구에서는 창고 및 임가공을 할 수 있는 Free Zone 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역 특성상 러시아 및 발트 3국으로의 우회수출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들 항구에서 하역을 한 후 창고 등에 보관하여 러시아 등지로 우회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상당량이 이들 항구를 통해 우회 수출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경선에 발리마아(Vaalimaa), 바이니칼라(Vainikkala), 누이야마 (Nuijamaa) 등에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구역을 만들어 창고에서 곧바로 국경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세운송을 통한 수출로 보아야 한다.

지역별 운송수단을 보면 발 리마아는 일반적으로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바이니칼라는 철도를, 누이야마는 사이마 운하 (Saimaan canal) 을 통한 해상운송을 주로 하고 있다.

7. 노무관리

가. 노동시장의 여건 전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핀란드의 총 노동력은 약 265만 명이며 실업률은 7.7 %에 이른다. (2007년 8월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은 6.9%로 감소하는 등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실업 해소는 핀란드 정부 최대 정책과제로서 1990년대 초반 발생한 불황 이후 두 자리수를 유지해 오던 실업률도 2000년도 들어서 한자리 수(9.7%)로 하락한 이래 지속 개선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여성의 실업률이 약간 더 높은 편이다. (고용율: 남성 69.8%, 여성 65.9%)

한편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등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기업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말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15세 이상 24세 사이의 젊은층의 실업률은 13.5% (계절요인을 반영한 조정수치는 19.2%) 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도별 노동인구 및 실업률 변화

(단위: 천명, %)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총인구 | 5,188 | 5,201 | 5,213 | 5,228 | 5,246 | 5,266 |
| 총노동력 | 2,605 | 2,610 | 2,600 | 2,594 | 2,621 | 2,648 |
| 고용자수 | 2,367 | 2,372 | 2,365 | 2,365 | 2,401 | 2,443 |
| 실업자수 | 238 | 237 | 235 | 229 | 220 | 204 |
| 실업률, % | 9.1 | 9.1 | 9.0 | 8.8 | 8.4 | 7.7 |
| 고용률(15~64세 인구기준) | 67.7 | 68 | 67.3 | 67.2 | 68.0 | 68.9 |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2007

나. 고용계약

핀란드는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채택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고용자와 고용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분쟁 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고용계약서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와 해고대상자 직위가 필요 없어 감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휴일 및 휴가제도

모든 핀란드인은 연간 10일간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 1회 5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여름휴가 4주, 겨울휴가 1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방학기간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달 2.5일의 휴가를 적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2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출산의 경우 최초 156일의 휴가(근무일 기준)가 보장되나 휴가 기간 동안 KELA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임금의 60-70%를 보상 받으며, 이후 아기가 3세에 이르기까지 휴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회지원은 월 500 유로 이하로 매우 미미하다.

라.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 책임이 고용주에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원은 매년 세무당국 및 보험회사에 급여 신고를 별도로 하며, 이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매년 6월경에 전년도의 세금 및 사회보장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 현황

- 종업원 연금: 21.5%(2006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이중 4.3%는 종업원이 부담함.)
- 실업보험: 1.33% (2006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이중 0.58%는 종업원이 부담함)
- 사고보험: 0.1222% (2005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100% 고용주 부담)

실업자들의 경우 상기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위의 실업보험, 사고 보험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고용주 역시 일정한 비중의 고용주세를 통하여 분담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하였으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연락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간의료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물리치료, 예방의학분야, 치과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미\$3,500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급여수준

산업 전체적으로 시간당 임금률은 11.97 유로 정도이고 산업별로는 섬유산업 10.23 유로, 운송업체 10.97 유로, 금속산업 및 건축업 11.76유로, 전기업 11.89유로로서 낮은 편이나 펄프제지 15.65유로, 전기 설비업 14.27유로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기타 금속, 에너지, 화학 분야는 평균 정도 수준이다.

직종/직위 별 평균 임금 (2006년 기준)

(단위 : Euro)

| 직종/직위 | 월임금 | 연간임금 |
|------------------------------|-------|--------|
| Sales Manager | 5,070 | 79,853 |
| Sales Representatives | 2,776 | 43,722 |
| Export Sales Representatives | 3,758 | 59,189 |
| PR Management | 4,673 | 73,600 |
| Office Management | 2,303 | 36,272 |
| Accountant | 2,792 | 34,997 |
| Secretary/Personal Assistant | 2,222 | 43,974 |
| Department Secretary | 5,408 | 85,176 |
| R&D Management | 4,207 | 66,260 |
| Production Manager | 2,664 | 41,958 |

자료원: INVEST IN FINLAND BUREAU 의 2006년도 브로슈어

주1: 수치는 세제 전 임금임 (세제는 이전 항목 '조세제도' 참조)

주2: 연간임금은 월임금 X 1.25(휴가비) X 12.5(각종사회보장제)로 환산

주3: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고용 계약됨

주4: 동 자료는 2006년의 평균 급여임.(2008년 2월 현재 입수가 가능한 최신 자료임)

바. 초과근무 수당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하나,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불시에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종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의 연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현지영업 및 현지 투자 시에는 이를 잘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일즈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해당업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해고절차, 조건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 고용주 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2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법정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 최고 24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 노조결성 조건

핀란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노조가 5개가 있으며, 직종에 따라 전국노조에 가입하거나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은 노조에 회비를 납부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노조아래에는 단위별 직종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단위노조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노조파업과 같은 사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하위의 직장별 개별 노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체행동은 단위별 직종 노조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노조활동 보장

핀란드의 노조 역사는 19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전통으로 노조활동은 100%가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도 활발하고 단위직종 파업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차. 임금 이외의 비용

임금 이외에 비용은 소위 고용주세(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등이며, 보너스 및 휴가비용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연말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위로비조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Stock Option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미국과 같이 완전한 Stock option은 금지되어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 노동조합 실태

노동조합의 활동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별로 또는 개인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연맹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은 실정이다.

현 정부는 '96년 4월 실업수당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및 파업위협으로 인해 철회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노동조합 영향력은 매우 강한 실정이나, 정부 및 사측에 반대만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근래 들어 핀란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조금씩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타. 기타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핀란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장의 범위는 교육,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매우 폭이 넓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데, 9년제 기본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교재 및 식사 등의 비용이 전면 국고보조로 충당되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교육 과정은 2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3년제 고등학교는 학문적 일반교육 과정이 채택되며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편 직업교육은 25개의 기본과정이 있으며 이수기간도 1-4년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으며 대학생수는 총 8 만 명 정도이며, 등록금은 없고 학생들에게는 집세, 생활비 등이 지급되고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는 각 지역마다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가 있으나 간단한 진단만 하며, 입원은 종합병원 및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의료시스템은 KELA라고 불리고 있는데, 종합 및 사설 병원 이용 시 이용료를 먼저 선납하고 현장에 비치된 KELA 서류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면 구좌로 입금된다.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급여 신고액 기준이며, 2006년도의 경우 종업원 연금은 22.9522%(이중 4.88%는 종업원 부담), 실업보험은 1.33%(이중 0.58%는 종업원 부담), 사고보험은 0.1222% (100% 고용주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약 60%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은퇴 이후의 연금은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퇴 전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 혜택을 철회함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연락 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30~50 유로 정도 이나, 물리치료, 예방 의학, 치과, 임신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핀란드의 주요 세금을 보면 일단 법인세가 26%이고 부가가치세가 9-22%, 그리고 개인 소득세가 19 - 50% 정도인데 세금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 종 류 | 세 율 | 비 고 |
|-----|-------|---|
| 법인세 | 26%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 포함(중전 29% 에서 인하) |
| 부가세 | 9-22% | EU 가입에 앞서 '94.6.1일 부로 중전에 시행하던 매출세(TURNOVER TAX)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음. 대부분의 업종은 중전 매출세율인 22%를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22%의 적용을 받으나, 식료품의 경우 17%, 필름, 의약품, 스포츠용품, 책 등은 12%, 대중교통, 숙박, TV, 문화 및 레저행사는 6%, 의료, 교육, 보험, 신문, 간행물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분야의 부가가치세 인하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감가상각률 및 고용주세

상기의 기본 세율 이외에 감가상각률은 기계 및 고정자산의 경우 연간 최대 30%까지, 건물의 경우 4-7%, 기타 유동자산의 경우 100%를 인정해 주고 있다. 고용주세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동하고 있으나, 연금보험의 경우 고용주부담이 종업원 총소득의 20%내외, 실업 보험의 경우 1% 내외, 그리고 사고보험료가 0.4% 내외 등이다.

감가상각 인정률

| 자산의 종류 | 연간 최대인정률 |
|----------------|----------|
| 기계, 고정자산 | 30% |
| 최대 3년 수명의 유동자산 | 100% |
| 건물 | |
| 점포, 창고, 공장 등 | 7% |
| 주거용, 사무실용 건물 | 4% |
| 가벼운 목조건물 | 20% |
| 가건물 | 20% |

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6등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소득신고를 하나 그 해에 적거나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이 외에 지방자치세 (우리나라의 주민세)가 총소득의 약 20% 그 외 연금 등을 합치면 개인 소득자는 약 40~5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1) 주민세

각 지자체별로 세율은 다르며 헬싱키의 경우 소득의 17.5% (2006년 기준)

2) 기타

핀란드의 경우 연금, 실업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19% 정도이며, 각 피고용인은 약 4.7%(해마다 조금씩 변경)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들의 사고에 대비한 사고보험료는 총소득의 1% 내외로서 고용주 부담이다.

이처럼 핀란드의 경우 세율이 높은 반면 일반 봉급생활자의 급여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어 있다.

(관련기관 웹사이트: <http://www.vero.fi>)

라. 외국기업 적용 세금 제도

법인세: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임. 해외지사의 경우 어디까지가 핀란드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외 지사의 활동이 연속적이라고 간주된다면 (1년 이상 지속) 무매출 무이익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핀란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운영비 (임금포함) + 4~6% 이익률
(Operating costs (Including salaries) + 4~6% profit margin)

부가가치세: 핀란드 법에 따르면 부가세 적용대상 사업관련 회사만이 구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식회사만이 환급 가능

개인소득세: 만약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반년 이상 일한다면 그들의 급여도 핀란드 소득세 과세 대상임. 핀란드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다름. 외국인 전문가 (Foreign experts) 의 경우에는 2~3년간 균일세의 혜택이 주어짐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과실송금

핀란드에서는 외국 회사가 과실송금을 하는 경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 회사가 납세의 의무를 (핀란드, 혹은 본국에서) 완료했다면 이익금 송금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다.

1) 유로중앙은행 총괄

핀란드는 Eurosystem 의 일원으로서 1999년 출범한 Euro 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현재 모든 외환관리는 ECB (European Central Bank in Frankfurt; 유로 중앙은행)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외환노출 및 위험을 ECB 에서 총괄 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하고 있다.

2) 외환송금 및 매입 자유

외환관리는 핀란드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 은행에 위임하며 중앙 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 가능하고, 국제외환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관련 웹사이트 ; www.bof.fi (핀란드 중앙은행)

3) 신용장보다 T/T 보편적

대금 결제는 유럽과의 거래 시 Open credit 을 이용하나 아시아와 거래 시에는 아직까지 신용자 거래가 많은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소액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L/C 개설 비용이 매우 높고,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T/T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력적인 CAD 조건(주문시 50% 대금지급, 선적서류 접수 시 50% 지급) 등을 요청하는 업체도 많다. 일람불 신용장 및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한부 신용장의 최대 허용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사용은 6개월 이내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핀란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 (팩토링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대금 등을 할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어떤 개인간의 거래도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나. 현지 자금 조달 방법

외국 회사가 핀란드에서 법인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핀란드 회사와의 똑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핀란드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핀란드의 전체 인구는 5백만 정도 밖에 안되지만 남한의 3배나 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유통산업 발달이 여의치 않은 여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미미했으나, EU 가입 이후 외국계 유통체인이 점차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독일계의 할인매장 체인인 Lidl이 진출하여 핀란드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에 비해 주변 노르딕 국가보다 비교적 소비재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핀란드 자체 못지 않게 인근 발트 3국 및 러시아 남서부 지방과의 교역량이 많아 이들 제3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품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 소비재 및 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마케팅 활동 여하에 따라 시장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98년 여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이들 국가로의 중개무역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최근 인구 8백만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인구 750만의 러시아 쉐페테르부르크 지역과의 교역이 부활되기 시작하면서 인근국에 대한 재수출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이들 인근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석유류, 플라스틱, 문구류 등 대부분의 소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철강, 화학, 제지 및 펄프, 조선 및 기자재, 그리고 산업용 전자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핀란드 도소매 시장의 70% 이상이 3개 대형 업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 도매, 소매를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이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도 많음에 따라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시장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수입업체의 첫 주문량은 극히 작은 실정으로 한국업체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후 주문이 반복적이면서 계속하여 일어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놓치지 않아야 할 시장이다.

소비자 구매력을 보면 최근 핀란드 경제노동연구소(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인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EU 평균수준이나, 구매력은 높은 물가와 조세부담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어 간신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 고임금자와 저학력 저임금자의 임금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질에 가장 관심이 높다.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쉽게 브랜드는 바꾸지는 않는다. 구매를 결정하는 브랜드는 중요 요소이지만 물품의 원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외양이나 치장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국민성 때문에 소위 '명품' 패션 브랜드나 외모를 가꾸는데 필요한 기타 제품들의 시장이 협소한 편이다. 핀란드 여성 1인 당 의복/액세서리 지출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반해 핀란드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는 비교적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지출하는 편이다. 이들은 차가 비쌀수록 그만큼 안전도와 연비 경제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영상과 음향이 뛰어난 TV 수상기나 스테레오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많다.

핀란드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이 100 유로 이상 되는 고가 제품은 관련 신문지면이나 잡지 등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어떤 특정 제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고의 제품으로 판정이 난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의 구매심을 자극하는 또 한 경우는 "best buy" 표시가 붙어있는 상품이다. 이 표는 가격대비 질이 훌륭한 제품에 붙여준다.

다. 한국상품 인지도

과거 일본제품이 핀란드에서 일류제품으로 인정 받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핀란드에서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의 전자제품 관계자들은 이미 삼성 TV 수상기가 소니 TV 수상기에 하나도 뒤질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 대 초 한국 제품을 접했었던 소비자 중에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의 품질 향상과 삼성 및 LG 핸드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전반적인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유통채널

핀란드의 유통산업은 4개 주요 유통그룹(K, S, Elanto & Tradeka, Stockmann & Wihuri 그룹)이 전체 소비시장의 80%를 장악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통그룹은 전 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운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KESKO 그룹의 경우에는 일부 소비재 제품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등 매우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동 그룹은 식품 및 농산물, 건축자재부와 비식품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국에 3,3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주요 유통그룹으로서 SOK, Tradeka 그룹 등이 있다.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 기획 조사란의 '대형 유통그룹 현황' 참조 요망)

그러나 가구, 전자제품 등은 품목별로 전문점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소량주문의 직접수입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유통망을 거칠 필요가 없다. 특히 산업재의 경우 별도의 수입상 및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4대 유통그룹 이외에 백화점업계에서는 Stockmann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철강, 제지, 금속, 산림, 기계, 화학산업 등이 발달한 반면, 일반 소비재 제품의 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상들의 경우 창고를 가지고 stock 제품을 판매하는 곳과 소규모 수입상, 에이전트 등이 있으며, 일부 기술제품을 제외하고는 상호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지만, 경쟁업체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 받거나 의사교환을 하기도 한다.

수입상-도매업체-소매업체(또는 제조업체)-소비자 순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도매 및 소매업체가 직접 수입을 겸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량 다품종 오더로 인해 원거리인 우리나라업체에서 이를 소화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마. 유망상품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핀란드에서 확고한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로는 현대, 기아, GM 대우, 전자제품으로는 삼성과 LG가 소비자들에게 믿음만한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한국의 기존 대형브랜드들이 취급하지 않는 관련제품(예를 들어 GPS 네비게이터 등)을 핀란드에 수출할 경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바. 2007년도 핀란드 히트 상품

- 디지털 녹화 셋톱 박스 (Digital set-top box with hard disk)
 - 핀란드에서는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에 들어섬. TV 시청을 위해서는 디지털 셋톱박스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TV 를 구입해야만 함
 - 최근 녹화, 저장 기능까지 갖춘 최신형 디지털 셋톱박스 출현으로 관심 더욱 높아짐
- 하이브리드 디지털 TV (Hybrid Digital TV)
 - 하이브리드 디지털 TV 는 위성, 케이블, 지상안테나 등 3개 방식에 의한 TV 수신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음
- 스마트폰 (Smart Phone)
 - 2006년 초 이래 핀란드 정부가 3G 모바일셋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급 핸드셋 보급이 크게 늘어남.
- 소형 레저용 보트 (Small Leisure boat)
 - 핀란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구기후 온난화로 인한 하절기 보트 시즌 연장 등으로 핀란드인의 보트 구매 증가
- SUV (Sports Utility Vehicles)
 - 고소득 층을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음
- 공정거래 와인 (Fair Trade Wine)
 - 최근 추세로 공정거래(Fair Trade)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공정거래에서는 구매 가격 역시 공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추가적인 수익부분은 주주나 투자자에 돌아가지 않고 근로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이용됨

2. 물가정보

| □ 도시: 헬싱키(핀란드) | | | - 환율 : US\$1 = € 0.69 (07년 12월 현재) | | |
|----------------|---------------------------------------|----------|------------------------------------|-------------------------------|-----------|
| 번호 | 항목 | US\$ | 번호 | 항목 | US\$ |
| | 1. 의복 | | | 7. 잡화 | |
| 1.1 | 남성양복(1벌, 순모100%) | 1,173.22 | 7.1 | 구두(1켤레, 소가족) | 181.85 |
| 1.2 | 넥타이(1개, 실크100%) | 115.56 | 7.2 | 차약(150g, 1개) | 2.35 |
| 1.3 |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 140.79 | 7.3 | 칫솔(1개) | 4.11 |
| 1.4 |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 23.46 | 7.4 | 면도기(1세트) | 11.26 |
| 1.5 | 코트(1벌, 롱코트, 추동) | 879.92 | 7.5 | 건전지(1세트, 1.5V AA) | 5.87 |
| 1.6 |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 25.81 | 7.6 | 화장지(1통, 300매) | 2.58 |
| 1.7 | 청바지(Levi's) | 211.18 | 7.7 | 비누(1개) | 1.64 |
| | 2. 식료품 | | | 8. 사무용품 | |
| 2.1 | 쇠고기(1KG, 안심) | 12.32 | 8.1 | 복사용지(1권, 250매, A4) | 6.8 |
| 2.2 | 돼지고기(1KG 구이용) | 10.56 | 8.2 | 볼펜(12개) | 11.30 |
| 2.3 | 닭고기(1KG, 생닭) | 4.69 | 8.3 | 연필(12개, HB 사무용품) | 10.91 |
| 2.4 | 쌀(1KG, Short Grain) | 1.88 | 8.4 | 공CD(1통, 12개입, 700MB) | 12.32 |
| 2.5 | 밀가루(1KG) | 2.35 | 8.5 | 휴대폰(범용형) | 138.44 |
| 2.6 | 설탕(1KG, 백설탕) | 1.41 | 8.6 |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 5.87 |
| 2.7 | 계란(10개) | 2.35 | 8.7 | 인터넷가설비(1회최초,1회설치) | 151.35 |
| 2.8 | 감자(1KG, 현지산) | 1.76 | 8.8 |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 21 |
| 2.9 |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 1.17 | | 9. 자동차 | |
| | 3. 한국식품 | | 9.1 | 자동차(2000cc, 기본, A/T) | 30,503.83 |
| 3.1 | 고추장(1Kg) | 없음 | 9.2 | 엔진오일(1L) | 10.56 |
| 3.2 | 된장(1Kg) | 없음 | 9.3 | 휘발유(1L) | 1.76 |
| 3.3 | 라면(1개) | 없음 | 9.4 | 자동차등록비(2,000cc) | 35.2 |
| 3.4 |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 없음 | 9.5 | 자동차보험료(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 2,110.8 |
| 3.5 | 불고기(1인분, 200g) | 없음 | | 10. 대중교통 | |
| 3.6 | 삼겹살(1인분, 200g) | 없음 | 10.1 | 지하철(1구간) | 2.35 |
| 3.7 | 김치찌개(1인분) | 없음 | 10.2 | 시내버스(1구간) | 2.35 |
| | 4. 기호식품 | | 10.3 | 택시(기본요금) | 5.04 |
| 4.1 | 햄버거(1개) | 4.12 | 10.4 | 택시(추가요금/Km) | 1.29 |
| 4.2 | 피자(1판) | 25.69 | | 11. 공공서비스 | |
| 4.3 | 코카콜라(1캔, 250ml) | 1.17 | 11.1 |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 116.15 |
| 4.4 | 맥주(수입산, 1캔, 355ml) | 2.63 | 11.2 |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 14.61 |
| 4.5 | 담배(수입산, 1갑) | 4.69 | 11.3 |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 0.18 |
| 4.6 | 위스키(1병, 750ml) | 41.06 | 11.4 |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 0.94 |
| 4.7 | 커피(1병, 175g) | 7.98 | 11.5 |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 4.15 |
| | 5. 주택(150㎡) | | 11.6 |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 0.76 |
| 5.1 |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 3,285 | 11.7 |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 0.76 |
| 5.2 |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 3,519.67 | 11.8 | 특급우편 (DHL1개, 1Kg이하, 현지-서울) | 21.12 |
| 5.3 |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 150% | 11.9 | 전기요금(1KW/h, 가정용) | 9.14 |
| 5.4 |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 200% | 11.10 | 수도요금(1㎡, 가정용) | 2.35 |
| | 6. 가전제품 | | 11.11 | 가스요금(1㎡, 가정용) | 0.82 |
| 6.1 | TV(29인치, 칼라, 범용) | 821.26 | | | |
| 6.2 | VTR(6헤드, 범용) | 175.98 | | | |

| | | | | | |
|-----|-----------------------|----------|--|--|--|
| 6.3 |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 221.74 | | | |
| 6.4 | 전자레인지 | 105.47 | | | |
| 6.5 | 냉장고(500L급, 가정용) | 1,278.81 | | | |
| 6.6 | 에어컨(400W급, 가정용) | 없음 | | | |

| □ 도시: 헬싱키(핀란드) | | | - 환율 : US\$1 = ₩ 0.69 (07년12월 현재) | | |
|----------------|-----------------------------------|-----------|-----------------------------------|---------------------------|-----------|
| 번호 | 항목 | US\$ | 번호 | 항목 | US\$ |
| | 12. 교육 | | | 18. 노동여건 | |
| 12.1 | 외국인학교(주재국내외국인학교 수) | 8개교 | 18.1 |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 - |
| 12.2 |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 3,519.67 | 18.2 |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 |
| 12.3 | 외국인학교(기부금) | 1,407.87 | 18.3 |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 22% |
| 12.4 |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 13,304.36 | 18.4 | 법정휴가일수(연간) | 24~30일 |
| 12.5 |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 14,769.72 | 18.5 | 출산휴가일수(연간) | 105일 |
| 12.6 |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 15,931.21 | 18.6 | 연간국경일 | 13일 |
| | 13. 레저·오락 | | 18.7 | 토요 휴무(실시여부) | 실시 |
| 13.1 |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 58.66 | 18.8 |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 14일 |
| 13.2 | 골프장회원권(18홀, 매매가능, 중신양도가능) | 17,598.36 | 18.9 | 주당 법정근무시간 | 40시간 |
| 13.3 | 골프공(1타) | 28.16 | | 19. 사업여건 | |
| 13.4 |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 727.4 | 19.1 | 법정최저자금 | 11,732.24 |
| 13.5 |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 32.85 | 19.2 |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2,500 |
| 13.6 |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 11.73 | 19.3 |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29% |
| | 14. 의료·약품 | | 19.4 | 외국인업체세제혜택(개인소득세) | 35% |
| 14.1 |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 5,279.51 | 19.5 |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 약5% |
| 14.2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82.13 | | | |
| 14.3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 | | | |
| 14.4 | 치과(스켈링, 1회) | 70.39 | | | |
| 14.5 |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 9.22 | | | |
| | 15. 신문·방송·잡지 | | | | |
| 15.1 |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 31.68 | | | |
| 15.2 | 한국신문(1개월) | - | | | |
| 15.3 |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 29.33 | | | |
| 15.4 |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 5.87 | | | |
| | 16. 호텔 | | | | |
| 16.1 |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 445.83 | | | |
| 16.2 |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 410.63 | | | |
| 16.3 |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 269.84 | | | |
| 16.4 |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 234.64 | | | |
| 16.5 |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 25.81 | | | |
| 16.6 |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 17.6 | | | |
| | 17. 임금 | | | | |
| 17.1 |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 2,463.77 | | | |
| 17.2 |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 1,525.19 | | | |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으로도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ompass(www.kompassonline.fi) 는 온라인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블루 북(www.bluebook.fi/cms/en/main.html)도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밖에도 <http://www.finlandexports.com>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쉽게 바이어를 찾을 수 있다.

핀란드 수출업자 카탈로그에서 관련 있는 핀란드 회사 웹사이트를 찾아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핀란드의 대부분의 회사는 웹사이트가 영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핀란드의 여러 기관(Kompass, Bluebook 등)에서 간행하고 있는 각 회사의 구매와 아웃 소싱 담당자 리스트를 참고하면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나.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 KOTRA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조사)

전 세계 76개국 90개 도시에 주재하고 있는 KOTRA 무역관을 통한 현지 바이어 조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ko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시회

여러 국제 전시회를 방문하는 핀란드 바이어들과 만남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제 전시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핀란드 바이어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핀란드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관련된 정보는 Kotra의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나 www.finnexpo.fi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은 자세하게 핀란드 각 지역의 전시회 주최자 리스트이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The Finnish Fair Corporation

P.O. Box 21 (Messuaukio 1)

FIN-00521 Helsinki, Finland

Tel. +358 9 150 91

Fax +358 9 142 358

info@finnexpo.fi

www.finnexpo.fi



Tampere Trade Fairs

P.O. Box 163 (Ilmailunkatu 20)

FIN-33901 Tampere, Finland

Tel. +358 3 2516 111

Fax +358 3 2123 888

info@tampereenmessut.fi

www.tampereenmessut.fi



Lahti Fair Ltd

P.O. Box 106
 FIN-15141 Lahti, Finland
 Tel. +358 3 525 820
 Fax +358 3 525 8225
helpdesk@lahdenmessut.fi
www.lahdenmessut.fi



Jyväskylä Fair Ltd

P.O. Box 127 (Messukatu 10)
 FIN-40101 Jyväskylä, Finland
 Tel. +358 14 334 0000
 Fax +358 14 610 272
info@jklmessut.fi
www.jklmessut.fi



Oy Finn-Nolia Ab

Raastuvankatu 20
 FIN-65100 Vaasa, Finland
 Tel. +358 6 3185 100
 Fax +358 6 3210 151
info@finn-nolia.fi
www.finn-nolia.fi



Riihimäki Fair Ltd

Kauppakuja 5 A
 FIN-11100 Riihimäki, Finland
 Tel. +358 19 716 260
 Fax +358 19 725 523
riihimaki.fair@riihimaenmessut.fi
www.riihimaenmessut.fi



Forma Fair

Mannerheimintie 40 D 82
 FIN-00100 Helsinki, Finland
 Tel. +358 9 454 2520
 Fax +358 9 454 25211
forma@formamessut.fi
www.formamessut.fi



Etelä-Pohjanmaan Messut Oy

Kirkkokatu 23
 FIN-60220 Seinäjoki, Finland
 Tel. +358 6 414 2666
 Fax +358 6 414 7416
epmessut@epmessut.fi
www.epmessut.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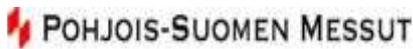
Expomark Oy

Puistokatu 2 A
 FIN-40100 Jyvaskyla, Finland
 Tel. +358 400 457907
 Fax +358 14 339 0350
ari.iuva@expomark.fi
www.expomark.fi



Wanha Satama

PL 121 (Pikku Satamakatu 3-5)
 FIN-00161 HELSINKI, Finland
 Tel. +358 9 1733 41
 Fax + 358 9 1733 4444
info@wanhasatama.com
www.wanhasatama.com



North Finland Fair

P.O. Box 231 (Ojakatu 2)
 FIN-90101 Oulu, Finland
 Tel. +358 8 3116 930
 Fax +358 8 3116 932
info@pohjois-suomenmessut.fi
www.pohjois-suomenmessut.fi



Turku Fair Center Ltd

P.O. Box 57
 (Messukentankatu 9 - 13)
 FIN-20201 Turku, Finland
 Tel. +358 2 337 111
 Fax +358 2 2401 440
info@turunmessukeskus.fi
www.turunmessukeskus.fi

□ 핀란드 업종별 협회 리스트

핀란드 각 협회에 연락, 바이어를 찾아볼 수도 있다.

- Apteekkitavaratukkukauppiat ry
 (Wholesale dealers of chemist's articles)
 Tel. +358 (0)9 431 560
- The Finnish Central Organisation for Motor Trades and Repairs
 (Autoalan keskusliitto)
 Tel. +358 (0)9+358 (0)9 680 3200
- Autonvaraosakauppioiden keskusliitto
 (Car spare part dealers' central association)
 Tel. +358 (0)9 4315 6154
- The Association of Automobile Importers in Finland
 (Autotuoja ry)
 Tel. +358 (0)9+358 (0)9 6803 2010

- Association of Suppliers of Electronic Instruments and Components (ELKOMIT)
(Elektroniikan komponentti- ja mittalaitetoimittajat Elkomit ry)
Tel. +358 (0)9 4315 6115
- Association of Electronics Wholesalers
(Elektroniikan tukkukauppiat ry)
Tel. +358 (0)9 431 560
- Erikoiskaupan liitto ry
(Special product traders' association)
Tel. +358 (0)9 4315 6411
- Forma – Lahjatavara- ja kodinsisustusliikkeiden yhdistys
(Forma – Society of gift article and interior decoration stores)
Tel. +358 (0)9 454 2520
- K-Kauppiaaliitto ry
(K retailers' association)
Tel. +358 (0)10 53 010
- Kello- ja Jalometallitukkukauppiat ry
(Wholesaler of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Tel. +358 (0)9 4315 560
- Organisation of the Booksellers' Association of Finland
(Kirjakauppaliitto ry)
Tel. +358 (0)9 685 9910
- Kodintekniikkaliitto
(Household technology association)
Tel. +358 (0)9 684 4230
- KONPAP ry (Toimisto- ja paperialan tavarantoimittajat)
(Suppliers of office and paper materials)
Tel. +358 (0)9 431 560
- Kukkatukkukauppiat ry
(Wholesale dealers of flowers)
Tel. +358 (0)2 250 7000
- Health Product Wholesal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Luontaistuotealan Tukkukauppioiden Liitto ry)
Tel. +358 (0)9 3487 559

- Pharma Industry Finland
(Laaketeollisuusliitto ry)
Tel. +358 (0)9 584 2400
- Association of Fashion Retailers in Finland
(Muotikaupan Liitto ry)
+358 (0)9 6844 7300
- Pukimo- ja turkisliitto
(Garment and fur association)
Tel. +358 (0)9 4315 6400
- Finnish Food Marketing Association
Paivittaistavarakauppa ry
+358 (0)9 4315 6421
- Finnish Hardware Association
Rasi ry (Rakennus- ja sisustustarvikekauppa)
+358 (0)94315 6480
- Suomen Alkoholijuomakauppayhdistys ry
(Finnish alcoholic beverage traders' society)
Tel. +358 (0)9 431 560
- Suomen Apteekkariliitto
(Finnish pharmacists' association)
Tel. +358 (0)9 22 8711
- Suomen Fotokaupan liitto
(Finnish photography retailers)
Tel. +358 (0)9 7510 2200
- Suomen Huonekalukaupan liitto
(Finnish furniture traders' association)
Tel. +358 (0)9 859 3914
- Suomen Kello- ja Jalometallikauppiat
(Finnish jewellery and precious metal traders)
Tel. +358 (0)9 347 8030
- Finnish Ship Suppliers Association
(Suomen Laivakauppiaitten yhdistys)
Tel. +358 (0)9 4315 6400

- Finnish Toy Association
(Suomen Leluyhdistys)
Tel. +358 (0)9 480 012
- Suomen Luontaistuotekauppiaitten liitto
(Finnish natural product traders' association)
Tel. +358 (0)9 449 216
- Suomen optisen alan tukkukauppiat ry
(Finnish wholesale dealers of optical products)
Tel. +358 (0)9 3480 800
- Suomen Putkikauppiasyhdistys ry
(Finnish pipe traders' society)
Tel. +358 (0)9 3483 400
- Suomen Silmaoptikkojen Liitto
(Association of Opticians in Finland)
Tel. +358 (0)9 4733 5471
- Finnish Electrical Wholesalers' Association
(Suomen Sähkötukkuliikkeiden liitto ry)
Tel. +358 (0)9 696 3700
- Association of Finnish Technical Traders
(Teknisen kaupan liitto ry)
Tel. +358 (0)9 6824 130
- Association of Textile and Footwear Importers and Wholesalers
(Tekstiili- ja jalkinetoimittajat ry)
Tel. +358 (0)9 431 560
- Urheilu- ja vapaa-aikatukkuliikkeet ry
(Wholesale dealers of sports and leisure stores)
Tel. +358 (0)9 431 560
- Vahittaiskaupan yleinen ryhmä
(Retail traders' common group)
Tel. +358 (0)9 4315 6400

(Source: www.kaupankl.fi/jasenet/yhdist.ht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수입 관행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입상보다 에이전트가 더 발달되어 있다. 수입상 및 에이전트들은 상품의 질과 가격이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 샘플로 우선 자신의 고객들과 상의하여 시장성을 좀 더 깊게 평가, 분석한다.

이런 과정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바이어가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바로 주문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1-2개월 후에 시험주문, 그 후 1차, 2차로 주문이 계속되며 물량도 보통 점점 많아진다. 대부분의 상품은 구매시즌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구매시즌을 잘 알아보고 그 시즌 (예를 들어 장난감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시기 적절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핀란드에서는 L/C개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험주문을 할 경우 보통 현금 결재를 선호한다. 후에 반복해서 주문하게 되면 D/A, D/P가 일반적이다. KOTRA의 소개를 받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신용이 높으므로 믿고 거래에 임하여도 된다.

핀란드에서는 수입가격과 최종 소매가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이는 관세 및 세금(부과세 22%)이 높고, 비교적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판매 및 유통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 신용장을 통한 지불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비용절감이 되는 은행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핀란드 회사의 신용상태가 궁금할 경우 그 회사에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요청하면 된다. 핀란드 회사가 물품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기간은 보통 14 - 30일 사이이다.

나. 출장 지양기간

핀란드의 경우 공휴일을 전후로 1-2일, 6월말부터 8월말 사이 여름 휴가기간, 그리고 보통 2월말의 '스키 할러데이'라고 불리는 겨울 휴가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상점들도 문을 닫아 출장 시 상담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시즌(6월 셋째 주),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북유럽의 여름 휴가철은 여타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름휴가는 보통 4-6주 장기간이며, 이런 휴가철에는 이메일 및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바이어와의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핀란드는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비즈니스로 업체 방문이나 상담약속을 할 경우, 늦어도 3주 전에는 연락을 취해서 미리 약속을 잡도록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다. 상담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나쁜 첫인상을 줄 수 있다. 만약 15분 이상 늦게 된다면 꼭 전화로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상담을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은 다 시간표 상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이 길어져서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사우나를 제안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자리에서 사업 얘기가 오가지만 핀란드에서 사우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 최고의 손님 접대는 사우나이다. 사우나 안에서 핀란드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유머스러우며 인간적이다. 사우나도 같이 하고 후에 음주와 간단한 음식을 나누다 보면 일상 생활뿐 아니라 좀 더 깊은 사업상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어떤 계약이든지 한 번 체결이 되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진다. 서류를 통해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자주 요구하게 될 경우, 핀란드 회사로부터 신용을 잃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모든 사항과 조건을 점검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

2) 식사

핀란드 업체에서는 외부 손님이 자사를 방문할 때 커피와 차와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인들이 커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특별하다. 그들은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사람들이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접대를 고맙게 받아 들여야 한다.

3) 인사

상거래를 위해 만날 경우 핀란드인들은 결코 자신을 ○○○박사, ○○○석사니 하는 학위로 소개하지 않지만 명함에는 이름 다음에 자신의 학위를 기재해 넣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 겸손함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학위에 있어서(특히 박사인 경우)만은 예외이다. 사람들은 본인의 학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위 사람들도 본인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MR 나 Sir 보다는 Doctor로 호칭하는 것이 더 좋다.

업무차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경우 존칭 대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핀란드 회사의 분위기이다. 역으로 우리도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좀 더 친근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악수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악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한 손으로 힘있고 짧게 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등 다른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대화

핀란드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직선적이며 조용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킨다. 그들은

자연히 상대방에게도 그들과 같은 매너를 갖추기를 바란다. 핀란드에서는 특히 말 한마디가 갖는 의미가 크다. “Yes”는 반드시 Yes이고 “No”는 100% No다. 상대방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삼 확인하거나, 또 ‘No’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끈덕지게 줄라 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또 언제나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중간에서 절대로 끊지 않아야 한다.

손짓이나 몸 동작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담은 되도록 차분하면서도 자신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 핀란드측 상공인들은 전문분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대화 주제는 가급적 업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사표현은 간단하고 또 분명하게 한다. 표현이 명확할수록 협상에 더 유리하다.

핀란드 기업들은 여간해서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으며, 아주 긴급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급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가 그에 맞춰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핀란드 기업에도 위계적인 질서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회사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다. 직원들은 경영진을 보통 이름으로 호칭하며 경영진은 실무자의 제안과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린다.

5) 선물

핀란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값비싼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선전용 경품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싸지 않은 민속 소품의 경우 기념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는 한국의 전통 주류 또는 와인 선물이 좋으며 꽃다발도 좋다. 다만 장례식에 주로 쓰이는 흰색과 노란색 꽃, 그리고 화분에 담긴 꽃은 피한다.

라. 문화적 금기사항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655년, 러시아로부터 108년간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야 독립한 국가로 민족성이 강한 나라이다. 자칫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소국이라고 핀란드를 알보거나,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발언(예를 들어, 핀란드어가 러시아어랑 비슷하게 들린다 등)을 하게 상대방을 거슬리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핀란드에서는 특히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핀란드 주요 속담

- 새 날에는 새 길이 있다.
-A new day shows a new way
- 사람이 땅을 기억할 때는 땅도 사람을 기억한다.
-When a man remembers the land, the land remembers him.
-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태양과 별은 있다.
-Even a poor man owns the sun and the stars.

- 빈 헛간에는 지붕이 필요 없다.
-An empty barn needs no roof.
- 마누라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땅과 같다.
-A man without a wife is like a field without fence.
- 富有는 감출 수 있어도 가난은 감출 수 없다.
-You can disguise wealth but you can't hide poverty.
- 물어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He who asks won't lose his way.
- 먹으면 잔병이 없다.
-Eat, and small ills disappear.
- 돈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해준다.
-Money talks all the way to heaven's door.
- 기술은 가지고 다니기에 무겁지 않다.
-Skill is not a heavy load to carry.
-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말은 타라고 있는 것이다.
-Money's for buying and a horse is for riding.
- 언덕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주지 언덕 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마라.
-Help the man climbing the hill, not the one standing below it.
- 도시는 너의 지갑이 비어 있는데도 너의 돈을 빼앗아간다.
-A town takes your money though your pockets be empty.
-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해야 한다.
-Work earns a living but trade makes you rich.

바. 기타 재미있는 핀란드 사회 엿보기

2004년 2월 10일 영국 BBC 는 핀란드의 한 백만장자가 과속하다 경찰에 적발돼 21만 5,960달러 (약 2억 1,00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헬싱키 경찰은 가족 소유의 소시지 그룹 상속자인 주시 살로노야(27)가 지난 2002년 약 1천 30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는 세무당국의 자료를 보고 이 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핀란드에서는 이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 형법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감옥형과 누진적 벌금형, 정액 벌금형, 경고형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누진적 벌금형은 음주와 과속운전 등 행정범칙금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이다.

핀란드에선 과속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경찰이 휴대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운전자의 납세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득에 기반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인내심 필요

핀란드 인들과의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핀란드 인들은 처음 상담에서 물건을 즉시 주문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물건을 보고 또 보고, 샘플을 주문한 후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이나 소량의 주문을 넣기 시작한다.

소량에서 시작한 주문량으로 시작되어 점차 주문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에 적은 주문량과 까다로운 요구에 우리가 먼저 지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들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대량의 주문을 따낼 가망성이 많다.

핀란드 사람들은 한 번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도 한 번 맺은 관계는 쉽게 끊지 않는데 이런 이들의 습성은 비즈니스 관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 많은 증빙 자료 요청

핀란드 사람들은 입 소문을 잘 믿지 않고 공신력 기관에서 검증된 자료만을 신뢰하는 편이다. 건강식품이나 건강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입 소문을 믿고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확한 검증과 임상 데이터를 제시를 요구하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 북부유럽 다른 시장 경유도 한 방법

핀란드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스웨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스웨덴에서 잘 팔렸다면 일단은 큰 저항 없이 물건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제품도 핀란드에 먼저 진출하는 게 어려울 경우는 이웃나라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먼저 경유하여 핀란드에 진출하게 되면 시장 초기 진출 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

라. 소량 다품종 주문에 유연한 대처 필요

핀란드는 내수시장이 작고 물류 유통비용은 높은 편이어서 소량 다품종 주문 생산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량 다품종 주문의 경우 전체 주문량은 크지 않지만 가격조건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1

H 사는 2005년 6월 1일 우리 무역관 지사화 업체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으나 처음 1년 동안 수출 성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출성약까지는 없더라도 어떤 가능성은 감지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H 사의 상황은 앞뒤가 껍 막힌 듯 답답했다. 계약을 맺은 핀란드 에이전트가 생각만큼 활발하게 활동해 주지 않았고 또 처음 Agreement 를 맺을 때는 좋은 프로젝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많았던 핀란드 관련 당국으로부터도 매번 ‘기다리라’는 얘기가 들려 올 뿐이었다.

우리 무역관에서는 내심 H 사가 이런 상황에서 지사화 재계약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CRM에 올라와 있는 H사 사장님의 재계약 신청문서를 보고 직원들은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우리 무역관의 활동에 대해서 크게 채근하시거나 불평하시지 않고 한 번 더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H 사의 코트라 지사화 사업 History 를 조회하며 사장님의 이런 느긋함은 사실 사장님의 코트라 지사화 사업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려 38회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제 2년 차로 접어든 H 사의 시장 진출 전략은 바꿀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H 사측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주기로 했다. ‘호랑이를 찾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H 사측에 신상품이란 먹이를 찾아 에이전트들이 몰려드는 관련 산업 전시회에 참석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H 사에서는 우리의 제안을 아무런 이견없이 받아들여 2007년 4월과 5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했다. ‘Estbuild 2007’ 이라는 에스토니아 건설 전시회에서 H사는 많은 바이어와 에이전트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국영방송국에서는 H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저녁 뉴스 시간에 전격적으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어떻게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런 먼 나라 에스토니아의 전시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인터뷰에 응했던 H 사 이사님의 첫마디는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였다. 그 이사님의 ‘꿈’은 이제 ‘현실’로 바짝 다가섰다.

발트 3국, 그 중에서도 에스토니아는 현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빠른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건설 붐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방음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어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마침 H 사의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에스토니아 현실에 딱 들어 맞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전시회 후 한달 만에 핀란드 Turku 에서 열린 Infratech 2007 도 역시 큰 성과를 거두며 끝을 맺었다.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에스토니아에서 만났던 핀란드 한 건설 에이전트 회사가 에이전트 계약을 맺기도 전에 자비를 내어가며 적극적으로 전시회 운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였다.

물론 그들은 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H 사를 위해서 뾰는 것이다. 현재 이들 외에 몇몇 건설자재 에이전트가 핀란드와 발트 3국의 독점 판매권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 H 사는 어느새 선택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핀란드 건설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내에 핀란드 방음판 시장의 30% 이상은 환경 제품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희망찬 날을 준비하며 앞으로 우리 무역관과 핀란드 에이전트 그리고 H 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뾰는 것이다.

나. 성공사례 2

지난 2006년 5월 1일 무역관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헬싱키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한 S사의 경우 무역관 관할국인 에스토니아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2005년 5만불) 인근국 핀란드와는 거래가 전혀 없었음 6월 5일 동 사 사장과 영업담당 이사는 무역관 무역관 주선으로 핀란드 바이어와 상담하였으며 8월말 첫 번째 오더로는 적지 않은 82,100 유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는 2배 이상의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사가 지사화사업에 가입한 직후 무역관은 제품 매뉴얼의 현지어 번역 및 포장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S사의 유럽출장 계획을 파악하고 출장 루트에 헬싱키도 포함시켜 바이어와 상담을 주선하였고 또한 헬싱키 무역관 현지직원이 5월말 서울 본사에서 열린 지사화 사업 워크샵 참석차 방한 기간 중 S사를 방문하여 회사와 제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며 공장을 견학함으로써 현지에서의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와 자세를 점검했다.

동 사가 헬싱키 방문 시 에스토니아 소재 바이어도 헬싱키를 방문해서 무역관과 함께 면담도 가졌고 향후 발트 지역과 핀란드지역 사업 확대를 논의했는데, 동 사 사장은 “무역관의 공격적인 접근으로 가입하기는 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고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고 상담 후 무역관 직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소감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주) S사는 헬싱키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한지 3개월 만에 이미 현지출장, 지사화 직원의 국내 본사 및 공장 방문, 성약 등 모든 성공요소를 고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성공사례 3

핀란드는 인구 50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바이어들의 양말 주문량은 매우 소량(모델당 500-2000족)으로서 기존의 우리나라 양말 수출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인 1개 컨테이너(4-5천 족)를 채우지 못해 양말 수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 무역업체인 S사에는 현재 핀란드에 매년 양말을 100만불 상당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소량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주한 때문이다. 동사는 1997년 무역관을 방문하여 양말 수입상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관의 소개로 5-6개사와 상담한 끝에 1개 바이어로부터 남성용 양말에 대한 500족의 소량주문을 받고 받아들일 것인지만 설였으나, 무역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단 소량주문에 응했다.

핀란드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제품의 질이 매우 좋으며, 가격도 매우 경쟁적임에 따라 모델을 차츰 늘리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여성용 양말 등 10여가지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

많은 한국업체들이 핀란드를 시장이 작아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진출시도를 기피하고 있는데 반해 동사에서는 매년 1-2차례씩 핀란드를 방문하여 바이어와 상담함은 물론이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먼저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동사의 바이어는 핀란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로서 담당자가 2-3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음에도 동사에서는 후속 담당자가 계속해서 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담당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은 물론 후속 인사에게도 팩스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핀란드 방문일정을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바이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방문 시에는 주요 백화점 및 양말 판매점 등을 돌아보고 시장상황 및 디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바이어와의 상담 시 핀란드의 유행과 향후 마케팅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상담을 함으로써 바이어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요청대로 무역관에서도 동사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를 한국의 다른 업체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업체가 수입상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동사를 제외한 바이어들을 조사하여 좁은 물론 1년에 한 두 번씩 바이어를 초청하여 측면 지원함으로써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어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

라. 성공사례 4

핀란드는 겨울이 6개월 이상이나 되며, 핀란드 북부지방은 4-5월까지도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겨울상품 판매장소로는 매우 적합한 시장이다.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으로서 점차 고급 스포츠시장도 발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노우 모빌이다. 겨울철에 핀란드 북부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노우 모빌을 한 번씩 타기를 원함에 따라 지금은 겨울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스노우모빌을 즐기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은 스노우 모빌 신발 이다.

지난 10년간 신발산업은 사양산업이라 하여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모두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입선을 옮겼지만 스노우모빌 같은 특수신발은 소매가격이 \$200-400으로 매우 비싸 주로 이태리에서 수입되고 있었는데, 1997년 한국의 한 무역업체에서는 한국산 스노우모빌을 핀란드 시장에 판매코자 무역관을 방문하였다.

무역관에서는 당시 핀란드 최대 신발수입상을 비롯하여 잠정 바이어 5개사를 추천. 상담하였는데, 그 중 A사와 연간 20만 불의 독점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핀란드의 A사는 스노우 모빌을 직접 수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스노우모빌 관련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으며, 가격이 경쟁적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취급하고자 한국의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일부 몰드비용을 지불하면서 연간 20만 불의 스노우모빌 신발수입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스노우모빌의 경우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핀란드 업체는 북구전체에 독점권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의 J사에서는 일단 핀란드와 스웨덴만 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처음 독점계약 이후 핀란드의 날씨가 좋지 않아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된 금액만큼 수입이 되지 않자 핀란드 바이어는 15만 불로 하향 조정하여 다음해에 물량을 공급받았으며, 1998년도 겨울은 기록적인 추위로 스노우모빌 신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할 지경이었다. 1999년도 양사는 신제품 및 보다 고급제품을 개발함은 물론 Moon boots 등으로까지 제품을 확대하여 연간 50만불 정도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핀란드 시장이 작고 독점 계약 시 약속한 수입금액이 있지만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를 신뢰할 수 있다면 바이어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함은 물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상기의 핀란드업체에서는 현재 스노우모빌 분야에서는 북구 최대의 기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바이어를 측면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향상 및 신규 디자인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마. 성공사례 5

해외 무역관의 업무 중에서 가장 탈도 많고 보람도 많이 느끼는 업무가 바로 지사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일 것이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드는 순간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 “먼저 다가서라.”

“기다리면 어떤 것도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추운 날씨 덕에 사람들간의 온정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핀란드에서는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최근 핀란드 내 한국 자동차의 수요는 급신장하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100%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입 증가세는 2005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Ceed 모델이 각종 유럽 자동차 전문 잡지에 의해 올해 차로 선정되는 등 한국 자동차의 우수성이 널리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무역관 역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핀란드 수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무역관 자체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산업 조사 시 향후 조사 대행 의뢰 및 지사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국내 무역관을 통해 유망 자동차 부품 수출 업체와 접촉을 하였고 당시 북유럽 시장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업체 대표님의 적극적인 태도는 곧바로 해외 세일즈 출장으로 이어졌다.

이미 사전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끝난 시점이라 업체 대표님의 출장 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5개 이상의 핀란드 업체와의 성공적인 상담을 주선할 수가 있었다. 핀란드 업체의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더불어 성공적인 핀란드 시장 진출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싱키 무역관에서는 P사에 지사화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핀란드 방문 시 핀란드 바이어 측에서 받은 호의와 핀란드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업체 대표님의 기대감으로 인해 P사의 지사화 사업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 앞으로의 과제

올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 핀란드 수출은 전년대비 50%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 수준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무역의 감소로 인한 대 핀란드 수출 통계의 현실화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핀란드 시장 진출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 핀란드 수출이 호조를 띠기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P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란드 바이어의 경우 낮은 가격과 더불어 품질까지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등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바이어이다. 그러므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대 핀란드 수출 시 상당한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대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후발 업체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용이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P사에서 핀란드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사화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등 기존 지사화 사업 진행 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최근 P사는 핀란드 바이어 측에서 의뢰한 제품 조건과의 일치를 위한 조사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조사과정이 끝난 이후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서 곧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P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전 시장 조사 - 해외 세일즈 출장 - 지사화 사업 신청으로 이어지는 코트라의 연속 서비스 시스템이 향후 다른 해외 무역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성공적인 지사화 사업 모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바. 실패사례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H사의 경우 1990년도에 핀란드시장에 진출, 1994년 철수한 이래 유럽에서 유일하게 핀란드에만 자동차 수출이 한 동안 중단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실패요인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핀란드는 냉전체제 하에서 대소련 교역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나, 1989년 러시아 개방으로 1991년부터 우리나라의 IMF와 거의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이후 3-4년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동차 판매증가율이 매우 낮았고, 이때 동사가 진출했다. 하지만 H사의 철수 이후 핀란드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자동차 판매가 매년 6-8%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상반기에는 13%나 증가하는 등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H사 진출실패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적정 에이전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경우 소규모 시장이다 높은 세금 등으로 지사설립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부분 지사를 설립하기 보다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핀란드 자체가 과히 에이전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이전트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H사에서 선정한 에이전트의 경우 자동차는 국가 이미지가 마케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핑계로 핀란드시장 자체보다는 러시아 등지로의 우회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판매활동을 함에 따라 결국 핀란드 시장진출에 실패하였다.

마지막 실패요인으로는 H사의 과감한 투자미흡으로서 핀란드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98%로서 유럽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높음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은 매우 비싸며 자동차를 개인의 인격과 동일시할 정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신경을 씀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 시 가격보다는 향후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의 제반 여건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감한 홍보 및 A/S지원이 필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홍보용 부대행사 및 광고, 그리고 A/S지원 등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H사는 2002년 핀란드 시장에 현지 딜러를 통해 재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핀란드는 다른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임차아파트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외국인의 경우 아파트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특히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외교우선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비중에 비하여 외국 외교관의 수가 많은 편으로 이들이 좋은 주택을 대부분 고가에 임대하고 있어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경우 가격 수준에 맞는 아파트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편이다.

도심에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며 시설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나, 최근 경기 호전 및 주거용 아파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차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체증이 많지 않기에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지역에 따라서 임차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헬싱키 시내라 하더라도 공기는 좋은 편이며,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환경은 매우 깨끗하다.

무엇보다도 집을 먼저 구해야 전화 신청 및 은행구좌 개설 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2,000 유로 정도의 임차료면 헬싱키 주변의 쾌적한 곳을 임대할 수 있는데, 이곳 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지를 물색하면 1개월 분의 임차료를 소개료로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의 도면 및 약도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핀란드 현지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구할 경우 차고지 증명과 같은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차장을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므로 매일 아침 차의 눈을 치우지 않으려면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아파트 및 집 구입을 결정하면, 주택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여 수리 등을 사전에 요청 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님을 미리 소유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통상 2개월 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실제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맡고 있으며, 계약만료 시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나. 행정절차

1) 외국인등록

집을 구하고 나면 핀란드 시청 등록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여타 유럽 과 달리 외국인 체류증이 별도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가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 확인서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 받으며 각종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 헬싱키 시내 외국인등록사무소 주소: Albertinkatu 25, Fin-00181 Helsinki, 전화 09-695-441

2) 현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경우 6개월간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증인 2명의 서명을 받고,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대사관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아 경찰청을 찾아가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과 교환하여 핀란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경우 사진 2매와 인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1인당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약 3주 후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Customer Service Center in Helsinki Police jurisdiction District, Punanotkonkatu 2, 00130 Helsinki, 전화: +358-9-189 3125)

다. 은행구좌 개설

공공요금 납부 등 대부분의 경우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서를 받은 후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구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구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은행직원을 이용한 계좌이체 및 지불행위는 매번 80 센트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은행의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12 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장은 별도로 없고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 (bank statement) 가 송부된다.

라. 전화 설치 신청

가까운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금이 있으며 전화개통 후 첫번째 전화요금 청구서(Invoice)에 함께 부과되어 청구된다. 전화 해지도 전화로 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현재 TelisaSonera와 Elisa 등 몇 개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옵션이 있으나 신청 후 즉시 개통되고 전화를 사는 곳에서 모든 절차를 알아준다. 외국인의 경우 때로는 보증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장 및 임금 등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면 면제도 가능하다. (전화 신청소: Helsingin Puhelin Oyj, P.O.Box

148, Fin-00131, Helsinki, 전화: 09-6061). 만약 단기간 핀란드를 방문하는 경우라면 prepaid GSM sim card를 구입,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 비품 구입

핀란드의 경우 가구가 갖추어진 아파트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무용품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부터 kioski 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구입하면 되고, 사무실 가구의 경우 ASKO, ISKU, IKEA 등지에서 1년에 2-3번씩 정기세일을 할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에서도 1년에 2-3번씩은 세일하고 있는데, 특히 봄 세일이 가장 큰 세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고장이 나면 A/S가 된다 해도 직접 가져가야 하고 A/S기간이 끝난 경우 수리비가 보통 150유로 이상일 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2-3 개월 소요되므로 되도록 고장이 없는 튼튼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바. 자동차 구입

핀란드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98%로 유럽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세금이 높아 자동차 가격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클릭(click) 정도의 구입가격이 약 18,000유로 인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연리가 12% 정도 되므로 보유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 전자 제품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은 230볼트로 우리나라의 220 볼트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주파수의 경우 여타 유럽과 같이 50 헤르츠로서 우리나라의 60 헤르츠용으로 제조한 모터가 큰 세탁기 등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파방식이 PAL/SECOM으로 우리나라의 NTSC와 다르기 때문에 텔레비전, 비디오 등은 신규로 구입해야 한다. 기타 주방기기, 라디오 등의 경우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 한국식품

한국식품점이 없어 한국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배추와 무우 등 야채는 구할 수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안 슈퍼마켓에서 가끔씩 한국 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고춧가루 등 기본 양념과 식품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자녀 학교 보내기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입학 시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공인한 서류 외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반 학기 또는 1년 정도 upgrade 또는 downgrade 될 수 있다. 외국인 자녀가 취학하는 경우 크게 핀란드 현지학교, 국제학교 (미국계), 영국인학교 (영국 계), 프랑스인 학교 등이 선택이 가능하다.

핀란드학교는 수업료가 무료이고, 영국인학교는 학비가 저렴하나 정원이 항상 다 차 있으므로 취학 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제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1인당 연간 15,000 유로 정도, 과외활동 등 부대비용은 제외)

학년별 1개의 특수반을 설치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핀란드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급식이 무료 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비를 내야 하며 학비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실업 보험 수당을 받는 경우나 부모가 학생신분이어서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학비가 면제된다.

| 학교명 | 위치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 International School of Helsinki (ISH) | Selkamerenkatu 11,00180, Helsinki | +358-9-686-6160, +358-9-685-6699(F) | www.ish.edu.hel.fi |
| English School | Mantytie1400270 Helsinki | +358-9-477-1123, +358-9-477-1980(F) | |
| French-Finnish School of Helsinki | Raumantie400350 Helsinki | +358-9-561-551, +358-9-5415-5207(F) | |

주: 기타 German, Russia, Jewish School이 있음.

국제학교의 경우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12학년을 4학 기로 나누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지리, 컴퓨터 등의 교과목을 9시부터 3시30분까지 100% 영어로 수업하며, 점심은 쿠폰을 이용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담과목에 따른 선생이 정해져 있으며, 한 반에 10-2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식 교육 및 자율학습 위주로 학습한다. 입학 시 간단한 인터뷰 및 서류심사를 통해 학년 등을 배정하고 있다. 학년시작은 매년 8월 학년말은 매년 6월이다.

차. 생필품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의 구입은 용이하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평일의 경우 할인매장 등 식품점은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6시, 일요일엔 크리스마스 이전의 세일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폐점한다.

카. 병원 및 약국

핀란드는 GNP의 약 20%를 사회복지비용에 투입하는 등 복지주의 채택국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는 최소 4명의 의사가 있는 "HEALTH CENTER"가 있어 주민의 건강상담 및 1차 진료를 실시하며, 병원입원도 "HEALTH CENTER"의 진료 후에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치아질환의 경우 많은 서비스가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완전한 의료복지로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 소득액의 80%가 입원기간 중 의료보험 급여로 주어지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정된 기본 금액이 주어진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제하지 않으며, 간단한 상비약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인데 헬싱키 시내에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어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취업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세를 내면 핀란드인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공관 등의 경우 사설병원과 사설보험을 이용해야 하며, 20분간 의사와의 상담은 50-80유로 정도이다.

타. 레저 여건

핀란드인들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테니스, 골프, 축구, 스키, 낚시, 아이스하키 등이며 골프 인구는 북구국가 중 가장 많은 약 5만 명에 달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보트 등의 수상스포츠, 필드하키 그리고 골프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크로스 컨트리 및 알파인 스키, 아이스하키, 스케이팅 이외에도 실내체육관에서 수영, 테니스, 탁구, 배구, 하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실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조깅이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와 자동차경주인데 이는 동 분야에서 핀란드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골프는 현지에서도 다소 비싼 운동으로 여기고 있으나 최근 골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편(그린피 45~80유로)이다. 모든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권리 (Playing right) 를 구입할 경우 별도의 그린피 없이 횡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이용권의 가격은 다양하나 대개 700-1,800 유로 정도이며 연간 7개월에 달하는 겨울 동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 핀란드 북부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약 3개월여 지속 되기 때문에 “90 hole competition under the mid night sun” 이란 대회가 열리기도 함

각종 음악회나 미술전시회 등이 곳곳이 열리고 있어 취미 분야에 따라 관람할 수 있는 폭이 넓으나, 입장료는 비싼 편이다(보통 30~50유로)

파. 치안

치안은 매우 좋은 편으로 정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되고, 최근 실업률 증가,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소말리아 난민 등이 유입되어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핀란드는 북위 60-7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이 6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고 봄과 가을이 짧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섭씨 5.3도에 불과하나, 발트해와 Gulf Stream (걸프 만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타 지역보다는 6도 정도 높은 편이다.

강우량은 주로 겨울철의 폭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5-10 mm씩 조금씩 내리다가 그치나, 7월말-8월초에는 20-30mm 정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5.6도이나 한겨울에는 -30도 이하, 한여름에는 섭씨 30도 이상까지 오르기도 하며, 북쪽지방에는 여름에 70일 동안 밤이 없으며 겨울에는 약 6 개월 동안 일조시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명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헬싱키를 비롯한 남쪽지방의 경우에도 겨울에는 11시에 해가 뜨고 3시에 지며, 여름에는 밤 11시까지 밝으며, 이후 약간 어두워졌다가 새벽 3시 정도에는 다시 밝아진다.

1) 주요 도시 월별 평균 기온

헬싱키(Helsinki)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 | -3 | -5 | 0 | 6 | 10 | 16 | 19 | 15 | 12 | 7 | 1 | -2 |
|  평균 최고 기온 | -1 | -2 | 1 | 9 | 13 | 18 | 23 | 18 | 15 | 9 | 2 | -1 |
|  평균 최저 기온 | -5 | -7 | -4 | 2 | 6 | 11 | 16 | 10 | 6 | 4 | -2 | -6 |
|  평균 강우일 | 6 | 4 | 3 | 5 | 3 | 5 | 4 | 6 | 3 | 8 | 6 | 5 |
|  평균 강설일 | 8 | 8 | 6 | 1 | 0 | 0 | 0 | 0 | 0 | 0 | 5 | 6 |

투르쿠(TURKU)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 | -3 | -6 | -1 | 4 | 8 | 14 | 17 | 16 | 10 | 6 | 0 | -2 |
|  평균 최고 기온 | 0 | -1 | 1 | 8 | 14 | 19 | 22 | 21 | 15 | 9 | 3 | 0 |
|  평균 최저 기온 | -6 | -9 | -5 | 0 | 3 | 9 | 12 | 10 | 6 | 3 | -2 | -5 |
|  평균 강우일 | 6 | 5 | 6 | 8 | 8 | 8 | 7 | 8 | 7 | 12 | 9 | 5 |
|  평균 강설일 | 14 | 11 | 10 | 3 | 0 | 0 | 0 | 0 | 0 | 1 | 8 | 9 |

오울루(Oulu)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 | -7 | -9 | -4 | 1 | 6 | 14 | 16 | 14 | 9 | 4 | -2 | -7 |
|  평균 최고 기온 | -4 | -6 | 0 | 5 | 10 | 18 | 20 | 18 | 13 | 6 | 0 | -3 |
|  평균 최저 기온 | -11 | -14 | -9 | -3 | 1 | 9 | 12 | 9 | 5 | 1 | -5 | -10 |
|  평균 강우일 | 3 | 2 | 2 | 7 | 8 | 9 | 8 | 7 | 6 | 10 | 7 | 3 |
|  평균 강설일 | 13 | 10 | 9 | 4 | 1 | 0 | 0 | 0 | 0 | 2 | 11 | 9 |

로바니에미(Rovaniemi)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 | -10 | -11 | -6 | 0 | 4 | 12 | 15 | 12 | 7 | 1 | -5 | -9 |
|  평균 최고 기온 | -6 | -8 | -2 | 3 | 9 | 17 | 19 | 16 | 11 | 3 | -2 | -6 |
|  평균 최저 기온 | -13 | -14 | -9 | -4 | 0 | 8 | 11 | 8 | 4 | -1 | -7 | -12 |
|  평균 강우일 | 3 | 1 | 2 | 6 | 9 | 10 | 10 | 9 | 9 | 12 | 5 | 2 |
|  평균 강설일 | 14 | 13 | 12 | 8 | 5 | 0 | 0 | 0 | 0 | 5 | 14 | 11 |

2) 출장 시 추천복장

겨울에는 반드시 방한장비(내의, 신발, 장갑, 모자, 코트 등) 및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준비하여야 하며, 봄과 가을에도 긴 소매옷과 잠바는 필수적이다. 여름에도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는데 헬싱키의 경우 여름철 낮 기온이 23도 이상인 경우에도 그늘에 있거나 바람이 불면 한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동계에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으며, 하계 섬머타임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다. 섬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통화할 경우 여름철에는 오후 3시에, 겨울철에는 오후 4시에 전화를 걸어야 핀란드 기업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9시에 해당되어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을 여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핀란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인근 국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타 유럽국보다 1시간 빠르며, 영국보다는 2시간 빠르다. 핀란드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 같은 시간대에 속한다.

2)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은 8:00-16:00, 또는 9-17:00시까지이나 직장에 따라 8:30-16:30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9:00-17:00 까지며, 대민업무 부서의 경우 주어진 시간(오전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만 해당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부에도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점은 08:00에 문을 열고 19:00-20:00시에 문을 닫는다. 식료품 가게는 동절기의 경우 8:00-20:00, 하절기의 경우 21:00까지 영업을 하며, 토요일은 18:00까지만 문을 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모두가 쉰다.

최근 여름철의 경우 관광객 및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일요일에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역 주변 및 일부 상점들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백화점의 개점시간은 일반적으로 10:00-20:00이다. 여름 특수 및 겨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는 일요일에 문을 여는 상점도 적지 않다.

우체국은 아침 09:00부터 17:00까지 영업을 하며, 시외에 있는 대형쇼핑몰은 일요일에도 가끔 영업을 하나, 전문점들은 보통 토요일 14:00까지만 영업한다.

관공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차제로 근무하며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 출근 및 조기퇴근, 지연 출근 및 지연 퇴근이 인정되며, 최근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자유시간 근무제가 확산 되는 추세에 있다.

- 관공서 : 09:00-16:00(여름 : 4월 1일-9월 30일), 09:00-16:15(겨울 : 10월 1일-3월 31일)
- 은행 : 09:15-16:15
- 우체국 : 09:00-17:00

다. 주요 단위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 단위

거리, 면적, 부피 등 모두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mm, cm, m, km, s/m, m³). 무게는 그램법을 사용하고 있다(mg, g, kg, ton). EU 가입 이후, 옷, 구두 등의 경우 유럽 규격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옷의 경우 미국 규격과 영국 규격이 같이 표시되기도 한다.

| | | | | |
|----|-----------------|-----------------|----------------|-----------------|
| 길이 | mm | cm | m | km |
| 부피 | - | cm ³ | m ³ | - |
| 넓이 | mm ² | cm ² | m ² | km ² |
| 무게 | mg | g | kg | ton |

기계류 및 전기.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 각종 안전규격은 EU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독일의 규격(DIN)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의류치수 비교

핀란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복치수에 대한 주요국가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여성기성복 상의 (가슴둘레 기준)

| | | | | | | | |
|-----|----|----|----|----|----|----|----|
| 핀란드 | 36 | 38 | 40 | 42 | 44 | 46 | 48 |
| 영국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 미국 | 8 | 10 | 12 | 14 | 16 | 18 | 20 |
| 한국 | 80 | 85 | 90 | 95 | | | |

남자구두

| | | | | | | | |
|-----|-----|-----|-----|-----|-----|-----|------|
| 핀란드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영국 | 5.5 | 6.5 | 7 | 8 | 8.5 | 9.5 | 10.5 |
| 미국 | 6 | 7 | 7.5 | 8.5 | 9 | 10 | 11 |
| 한국 | 245 | 250 | 255 | 265 | 270 | 275 | |

남자기성복

| | | | | | | | |
|-----|------|----|------|----|------|----|------|
| 핀란드 | 36 | 38 | 40 | 42 | 44 | 46 | 48 |
| 영국 | 35 | 36 | 37 | 38 | 39 | 40 | 42 |
| 미국 | 35 | 36 | 37 | 38 | 39 | 40 | 42 |
| 한국 | 28.5 | 30 | 31.5 | 33 | 34.5 | 36 | 37.5 |

남자 와이셔츠

| | | | | | | | |
|-----|----|------|----|------|----|------|----|
| 핀란드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미국 | 14 | 14.5 | 15 | 15.5 | 16 | 16.5 | 17 |
| 한국 | 14 | 14.5 | 15 | 15.5 | 16 | 16.5 | 17 |

라. 출입국/비자

1) 개요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에는 1974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여권 소지자의 경우 90일 이하의 관광, 단기상용 및 단기종합 목적으로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 고용 등 장기체류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단 무 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장기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접국가의 핀란드 대사관이나 한국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14일까지는 핀란드에서 가능하나 14일 이상일 경우 별도의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비자만기 4주(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핀란드의 경우 최근 아시아국가, 난민 및 일반 외국인들에게 체류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어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며, 단일민족의 영향으로 외국인체류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성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일단 핀란드로 입국, 핀란드에 체류하면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한국의 핀란드 대사관에서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 시 3개월 이상을 체류하고도 비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핀란드의 경우 EU의 관련법규를 규정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EU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체류기간 중 비EU 국으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그 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정확하게 90일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을 EU지역에서 머문 여행객들의 경우 핀란드 입국 시 주의가 요망된다.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비행기 또는 배에서 내려 우선 짐을 찾고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원과 간단한 인터뷰로 절차는 모두 끝나지만 입국 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 세관검사대를 거친다. 때때로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3) 신고사항

- 면세수량 이상의 물품반입
- 수입제한 품목의 반입
- 판매목적 또는 기타 비즈니스용 물품 반입시는 적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 세관 검사원의 검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녹색 화살표시 방향으로 이동하여 신고, 검사 절차 없이 입국
- 핀란드 세관은 여행자들이 핀란드 출입국시에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줄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동 신고 의무는 현금 소지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U 집행위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여행자수표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포함하며 유로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도 해당됨)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 이 제도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5개국의 경우에만 고액 현금 소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지난 6월 15일부터 전 EU 회원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세관 영문 홈페이지(www.tulli.f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양식은 공항, 터미널 및 국경 초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세무 및 세관부(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customs_controls/cash_controls/declaration_form_en.pdf)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4) 1인 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

□ EU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2리터) 및 추가적으로 2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 향수: 50g 이하 향수 또는 0.25l이하 오드투알렛
- 175유로 이하의 상품

□ EU 역내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3리터) 및 추가적으로 5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64리터

- 담배: 일반담배 300개피 또는 시가75개피 또는 400g이하 담배제품
- 기타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면세
- 상기 면세물품은 여행객이 직접 반입시 인정되며, 별도 화물로 송부 시, 서류 등을 통해 핀란드 세관에 면세해당 물품임을 직접 확인시켜야 면세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핀란드 관세청 참조바람 (<http://www.tulli.fi>)

5) 공항 ↔ 시내 교통 편

Helsinki-Vantaa 국제 공항에서 헬싱키 시내까지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 버스
 - 시내버스 615번(40분 소요)
 - 핀에어 리무진버스(35분 소요)
- 택시
 - 일반 택시(30 - 40 유로)
 - Airport 택시(20 - 30 유로)
 - 공항에 상설 부스가 설치 되어 있음

마. 환전

1) 통화 단위 및 종류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 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화에는 1, 5, 10, 20, 50 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다.

2) 환전 요령 및 장소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 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으며, 적용환율은 각각 다르다. 헬싱키에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스웨덴 환전체인인 FOREX(Foreign Exchange Center, www.forex.fi)로서 영수증이 있으면 한번 환전한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환전수수료를 면제하고 교환해주고 있는데, 헬싱키 중앙역 등 시내 몇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텔의 적용환율이 가장 비싸므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미리 환전하거나 핀란드은행 및 상기 FOREX 등에서 환전할 것이 권고된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를 비롯하여 햄버거 등 대부분의 상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므로 현금을 많이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신용카드사용

핀란드에서는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50유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항공편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에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일본 동경 및 여타 유럽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2008년 6월 직항 개설 예정)

- 서울-일본 동경-헬싱키(Finair 동경 직항)
- 서울-모스크바-헬싱키(KAL-FINAIR, AEROFLOAT)
- 서울-(암스테르담, 추리히,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헬싱키(KML, KAL-FINAIR 및 Lufthansa)

2) 저렴한 항공편 예약 방법

한국에서 핀란드로 오는 경우 대형 여행사를 통할 경우 단체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요금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다. 항공사를 통해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러시아 항공 AEROFLOAT 항공이 가장 저렴한 편인데 모스크바에서 헬싱키 연결편이 좋지 않아서 1 박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핀란드 내의 국내 항공편의 경우, 기존의 Finair보다 싼 항공편인 Blue1 (www.blue1.com)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3)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헬싱키 공항은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차편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헬싱키 시내에 들어올 경우 약 30-40 유로 정도이다. 여러 사람이 합승하는 공항택시(yellow cab)의 경우는 보다 저렴하며, 공항 출구에서 안내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되는 공항전용 버스와 일반버수도 있으며, 요금은 공항전용 버스의 경우 5.2유로, 버스의 경우 3.6유로이다.

4) 우편 (국내, 국제, 특사)

□ 국내/국제 편지

핀란드의 우체국(현지어로 Posti)에서 우편물을 송부하면 된다. 핀란드 국내 편지나 국내/국제 엽서는 65센트짜리 우표를 붙여서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도 된다.

국내/국제 편지와 엽서 요금

| 무게 (g) | 핀란드 내 | 유럽 내 | 유럽 외 |
|--------|-------|-------|-------|
| 20 | 0,70 | 0,70 | 0,70 |
| 50 | 0,70 | 0,95 | 1,20 |
| 100 | 0,95 | 1,30 | 2,90 |
| 250 | 1,40 | 2,20 | 4,60 |
| 500 | 2,60 | 3,60 | 7,60 |
| 1000 | 3,90 | 6,50 | 13,60 |
| 2000 | 6,50 | 11,70 | 24,50 |
| 엽서 | 0,70 | 0,70 | 0,70 |

□ 국내/국제 소포

무게와 지역 운송 방법에 따라서 요금이 나뉘는데 자세한 요금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국내 소포의 경우
 - <http://www.posti.fi/english/tariffsandrates/domesticparcels/>
- 국제 소포의 경우
 - <http://www.posti.fi/english/tariffsandrates/parcelsabroad/>

□ EMS

- 우체국의 EMS 우편이나 특사운송회사의 우편을 이용하면 빠르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 다음은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EMS 우편 요금표이다.

| Kg | 가격(단위:유로) |
|--------|-----------|
| 500g까지 | 39.00 |
| 0.5 | 40.00 |
| 1 | 43.30 |
| 1.5 | 45.10 |
| 2 | 46.90 |
| 2.5 | 48.60 |
| 1 | 43.30 |
| 2 | 46.90 |
| 3 | 50.30 |
| 4 | 53.80 |
| 5 | 57.40 |
| 10 | 67.90 |
| 15 | 85.40 |
| 20 | 103.00 |
| 25 | 120.50 |
| 30 | 138.10 |

□ 국제택배

- FEDEX나 DHL 등 다국적 기업의 국제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음.
 - DHL 연락처: +358 (0) 30 45 345
 - FEDEX 연락처: +358 (0) 800 900 92

5) 국내, 국제전화 거는 방법

□ 국내통신

인구의 약 99%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 또는 역 근처, 호텔 등지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중전화를 찾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식 전화기 보다는 카드식 전화기가 일반적이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도 일부 설치되어 있다. 휴대폰 이용료는 분당 30센트 정도이지만 실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이용 요금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르다.

유선 전화의 시내전화 요금은 평균 분당 15센트 이하이며, 국제전화 요금은 지역 및 서비스 회사에 따라 다르다.

- (시내전화요금): 통화료에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부과
 - 통화료: 통화당 기본료 12.61센트 + 분당 1.01센트 추가
 - 로컬네트워크: 통화당 기본료 7.57 센트 + 분당 0.61센트 추가
- (시외전화요금):
 - 월~금요일(8~17시): 분당 7.40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 월~금요일(17~20시) 및 주말(8~20): 분당 4.04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 매일(20~8시): 3.70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 국제통신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통화를 원할 경우 국제전화 이용번호(990), 한국 국가번호(82), 지역 번호 (서울의 경우 "2") 다음에 수신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551-4108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990-82-2-551-4108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통화는 비교적 쉬운 편으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연결이 용이하고 국제전화 이용번호는 990 외에도 999, 994 등이 있으나 별차이가 없다.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하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로 9977, 99500, 99588 등이 있는데, 가장 이용료가 저렴한 번호는 99588이지만, 일반전화기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하므로 관광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KT를 비롯해 LG데이콤이 핀란드 전화국과 계약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COLLECT 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핀란드 방문객들은 핀란드 전화국 이용 요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통화할 수 있다.

KT 콜렉트콜 이용방법 08 00 11 08 20 + 한국 내 전화번호, LG데이콤 이용 시, 0800-110828을 누른 후 한국 내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공중전화에서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인 50센트를 투입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를 끝나치면 50센트는 반환된다.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를 돌린 후 핀란드 국가번호 (358)와 지역번호(헬싱키의 경우 "9"),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일부 대기업 등은 별도의 지역번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번호가 4자리에서 8자리 또는 9자리까지 다양하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 인터넷 사용 환경

ADSL은 2001년 11월부터 상용화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불안정한 접속상태로 인하여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불편적이었으나 2003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거형태 및 전송속도에 따라 ADSL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도구 중 하나인 케이블 모뎀은 이용이 편리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케이블 모뎀을 이용할 경우 가입비 34유로와 월 이용료 49유로를 지불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유로대의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되고 있다. 헬싱키 시내의 특정지역에서는 무료로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는 지역도 있다.

□ 시내 교통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있으나, 비싼 편이다. 한국처럼 티켓을 따로 파는 부스나 창구가 없으므로 자동 판매기나 운전기사에게 직접 구매 하여야 한다. 단, Metro는 티켓을 사전에 구입해야 한다. 헬싱키의 경우 대중교통은, 버스, 전차(Tram), 전철(Metro)이 있으며, 승차권 구입시 동일 티켓으로 다른 교통 수단을 유효한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Single Ticket에는 유효구간과 시간이 표기 되어 있으므로 목적지 도착시까지 잘 보관 하여야 하며, 검수원의 요구시 제시 하여야 한다. 헬싱키 시내 1시간 이용 Ticket은, 자동 판매기 구입시, 2 유로, 운전기사(버스나 트램)에게 구입시 2.2 유로 이다.

헬싱키 시내와 인근 위성도시 (Espoo, Vantaa)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3.6유로로, 헬싱키를 포함 한 모든 시내 버스와 전차, 전철을 1시간 20분 내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 이용시는 운전사에게 Ticket의 최초 승차시간이 찍힌 승차권을 보여주고 승차하면 된다.

헬싱키, 에스뵤, 반따등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 가능하다. 수도권 교통수송위원회인YTV(www.ytv.fi)는 모든 대중교통편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한다. 출발지와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의 출발시간 도착시간 및 시간대별 정보와 지도상의 위치도 함께 알려준다.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시간표, 지도상의 운행경로, 정류장 위치 등도 확인 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www.ytv.fi 참조)

무임승차자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자 벌금은 80유로이며, 가족승차권, 1일권 (6유로), 3일권(12유로), 5일권(18유로) 등 다양한 요금종류가 있으며 매번 표를 구입할 때보다 할인혜택이 있다. (www.ytv.fi 참조)

헬싱키 카드 사용시 버스, 전철, 전차요금과 박물관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이어서 관광객 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이 헬싱키카드는 호텔이나 R-KIOSK, 기타 관광센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권, 2일권, 3일권 등이 있다.

□ 택 시

택시는 택시정류장에 정차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화(0100 0700)로 요청하기만 하면 5분 이내에 기다리는 장소에 도착한다.

택시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요금은 대개 4.55유로(오후 8시 이후 6.2유로)이다. 인원 수 및 이동거리, 시간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3~4배 정도 비싸다.

탑승인원이 1~2인일 경우 Km당 1.02유로, 3~4인일 경우 1.22유로, 5~6인 일 경우 1.33 유로, 6인 초과시에는 1.43유로를 부과하는 등 탑승시간과 인원 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다소 복잡하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Yellow Line과 Vantaa Taxi 두 곳에서 합승 공항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중심지까지 요금은 1인당 20~30 유로 정도로 일반택시보다 약간 저렴하다.

□ 국내 교통의 가격

핀란드의 주요 도시와 헬싱키간 항공편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시외버스와 철도노선도 인구나 면적에 비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철도 및 버스는 예약 없이도 당일 표 구입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철도편은 중앙역, 시외 버스는 중앙역 근처 버스터미널 (지명: KAMPPI) 안내소에 문의가 가능하다.

핀란드의 교통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항공 요금의 경우, 시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헬싱키에서 오울루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위에 위치)까지 왕복요금이 500유로 이상 되기도 한다.

국내 항공 요금은 보통 200 -600 유로 정도 이고, 기차 요금은 항공 요금의 60 % 정도이다. 버스의 경우는 가장 저렴해서 기차 요금의 60 % 정도이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항공
 - www.finnair.com
 - www.blue1.com
- 시외버스
 - <http://www.expressbus.com/>
 - <http://www.matkahuolto.fi/english/>
- 기차 (러시아의 상페테스부르크 까지 연결됨)
 - <http://www.vr.fi/heo/eng/index.html>
- 배 (→ 스웨덴의 스톡홀름, 에스토니아 탈린)
 - <http://www.silja.com/fi/>
 - <http://www.vikingline.fi/index.asp?lang=en>
 - <http://www.tallink.fi/>

□ 국제공항

국제공항으로는 헬싱키 외곽의 반타(Vantaa)에 있는 헬싱키-반타 공항이 있으며, 그밖에 주요 도시인 투르크, 탐페레, 울루, 로바니에미, 쿠오피오 등에도 국내공항이 있다. 이들 공항에서는 인접한 국가로 가는 국제선이 있기도 하다.

핀란드 항공사로서는 국영기업인 FINNAIR가 있으며, 이 항공사는 구주의 주요 도시와 미주 및 일본 등을 연결하고 있다.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선도 운행 회수나 지역 측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유럽의 주요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이며, 두 나라간 가장 빠른 항공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경유하는 것이며, 대기나 통관 등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나 저렴한 요금으로는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러시아 항공(AEROFLOT)을 들 수 있겠다.

반타 공항에서 헬싱키 도심까지의 거리는 약 20KM로 택시, 공항버스(FINNAIR BUS), 공항 택시(YELLOW TAXI라 부름, 일종의 합승택시라고 할 수 있음)로 약 30분정도 소요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의 요금은 택시가 30~40유로, 공항택시 20~30유로, 공항 버스 5.2유로이다.

서울에서 바로 오는 승객의 비행기는 대부분 밤늦게 도착하므로 YELLOW TAXI나 FINNAIR BUS를 이용하는 것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다.

FINNAIR BUS의 운행시간은 첫 버스가 오전 5:45에 운행되며 그 다음 버스는 6:20분부터 매시간 정각과 20, 40분에 각각 출발하며 밤에는 12:40, 01:10에 마지막 버스가 출발한다.

그 외 일반시내 버스인 615번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운행 간격은 시간대별로 다르나 평균 2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자세한 운행시간은 www.ytv.f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내 중심지인 헬싱키 역과 공항 사이를 운행하며 소요시간 약 40분, 요금은 3.60유로 이다.

□ 국제항구

Helsinki, Hanko, Hamina, Kemi, Kotka, Oulu, Turku, Vassa 등의 국제항구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역항구로는 Helsinki 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나머지는 스웨덴 및 러시아 중심의 교역항구들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핀란드 전국에는 약300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으며, 요금은 지역과 등급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평일(일요일 밤-목요일 오전)의 요금은 일반적으로 주말 (금요일 밤-일요일 오전) 요금보다 10-30% 비싸다.

성수기에는 호텔 예약이 매우 어려우며, 호텔에 따라 7월에는 하계 특별요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핀란드의 안정적인 물가와는 달리 호텔가격은 매년 5%이상 인상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핀란드의 호텔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Hotel Booking Center: www.helsinkiexpert.fi

하기 호텔 요금은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헬싱키 근처의 주요 호텔들은 다음과 같다.

헬싱키 시내의 주요 숙박 시설

| 호텔명 | 등급 | 가격(유로) | 주소 | 전화번호 |
|------------------------|-------|--------------|-----------------------------------|-----------------|
| Hotel Kamp | 최고급호텔 | S.285/D.285 | Pohoisiesplanadi 29 Helsinki | +358-9-576111 |
| Scandic Grand Marina | 고급 호텔 | S.138/D.173 | Katajanokanlaituri7,Helsinki | +358-9-16661 |
| Radisson SAS Hepeira | 고급 호텔 | S.175/D.175 | Mannerheimintie 50,Helsinki | +358-9-43101 |
| Ramada President | 고급 호텔 | S.122/D.155 | Etelainen Rautatiekatu 4 Helsinki | +358-9-6911 |
| Sokos Hotel Helsinki | 고급 호텔 | S.140/D.164 | Kluuvikatu 8 Helsinki | +358-9-131401 |
| Palace Hotel | 고급 호텔 | S.180/D.180 | Etelaranta 10 Helsinki | +358-9-134561 |
| Hilton | 고급 호텔 | S.145/D.180 | Mannerheimintie46-48, Helsinki | +358-9-40551 |
| Hotelli Finn | 중급 호텔 | S.55/4인실 115 | Kalevankatu 3 B, Helsinki | +358-9-684-4360 |
| Hotel Helka | 중급 호텔 | 100 | Pohjoinen Rautatiekatu 23 | +358-9-441-087 |
| Cumulus Kaisa | 중급 호텔 | 더블룸 83 | Kaisaniemenkatu 7, Helsinki | - |
| AccomeTöölö Apartments | 중급 호텔 | 77~184 | Museokatu 18, Helsinki | +358-9-2511-050 |
| Hostel Suomenlinna | 호스텔 | 20~ | Suomenlinna C 9, Helsinki | +358-9-684-7471 |
| SummerHostel Academica | 호스텔 | 18~ | Hietaniemenkatu14, Helsinki | +358-9-5499-00 |
| Stadion Hostel | 호스텔 | 16~ | Pohjoinen Stadiontie 3 B | +357-9-477-8480 |

주: 투숙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음

□ 헬싱키 반타 공항 근처의 호텔

- Bonus Inn
 - 주소(전화번호): Elannontie 9 (+358-9-825-511)
- Cumulus Airport
 - 주소(전화번호): Robert Huberintie 4, Vantaa (+358-9-4157-7100)
- Good Morning Hotel
 - 주소(전화번호): Pilotti Veromaentie 1 (+358-9-329-4800)
- Holiday Inn Garden Court
 - 주소(전화번호): Ralssitie 2, Vantaa (+358-9-870-900) (Helsinki Airport)
- Ramada Hotel Airport
 - 주소(전화번호): Robert Huberintie 6, Vantaa(+358-9-4157-5100)
- Scandic Hotel Gateway
 - 주소(전화번호): Helsinki-Vantaa Airport, Int'l Terminal(+358-9-818-3600)
- Sokos Hotel Vantaa
 - 주소(전화번호): Hertaksentie 2, Tikkurila(+358-9-857-851)

□ 전원형 교외 호텔

1-2일간 머무를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에 호텔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핀란드에서 적어도 3-4일 이상 머무르면서 핀란드 자연을 즐기려면 헬싱키 교외에 있는 아래와 같은 2개 호텔을 추천할 만하다.

○ SERENA KORPILAMPI

- 헬싱키 중심지에서 Pori 방향으로 약 30KM 떨어진 언덕 위 숲 속에 위치.
- 호숫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으며, 도보거리에 SERENA 유흥지가 있음. 여름에는 야외 풀장,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DOWN HILL스키 및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음.
- 나무를 직접 태워서 즐길 수 있는 핀란드 전통 스모크 사우나도 있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 (5인 기준 약 150유로, 2시간 독채 사용 기준)
- 호텔요금: 싱글 83유로, 더블 110유로
- 연락처
- 주소: Lahnus 02970 ESPOO, FINLAND
- 전화: 358 9 6138 411
- 팩스: 358 9 6138 4200

○ KRAPIHOVI

- 헬싱키 중심지에서 Tuusula 방향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
- 인근에 18홀의 골프장이 있으며, 전통 스모크 사우나가 호숫가에 있음.
- 5인 기준 약 150~200 유로, 2시간 독채 사용 기준
- 호텔 부페 식당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격은 약20유로 정도
- 호텔 객실 수는 총 40개 정도에 불과함
- 호텔요금: 싱글 90유로, 더블 100유로 정도
- 연락처
- 주소: RANTATIE 04310 TUUSULA, FINLAND
- 전화: 358 9 251 501 (팩스는 전화번호와 동일)

2) 식당

헬싱키에는 물론 많은 현지 식당이 있고 2005년에 문을 연 한국식당(Korea House 주소: Mariankatu 19, 전화: 09 1357158)도 한 곳 있다.

이 밖에도 일식 및 중식당도 많이 있다.

| 구분 | 식당명 | 가격(1개 요리) | 주소 | 전화번호 |
|------|----------------|-----------|---------------------|-----------|
| 핀란드식 | Lappi | 20유로 이상 | Annankatu 22 | 648-550 |
| | Havis Amanda | 10~20 유로 | Pohjoisesplanadi 17 | 6869-5560 |
| | Kellarikrouvi | 10~20 유로 | Makasiininkatu 6 | 686-0730 |
| | Savotta | 20~50 유로 | Aleksanterinkatu 22 | 7425-5588 |
| | Suomi on plate | 20~50 유로 | Lonnotinkatu 13 | 605-470 |
| | Saaga | 20~50 유로 | Bluevardi 34 | 7425-5544 |
| | Nokka | 30~80 유로 | Kanavaranta 7 | 687-7830 |
| 일식 | Kabuki | 10~30 유로 | Lapinlahdenkatu 12 | 694-9446 |
| | Koto | 10~30 유로 | Kalevankatu 21 | 646-080 |
| | Norisushi Bar | 10~20 유로 | Wanha Kauppahalli | 260-0027 |

| | | | | |
|------|-------------------|-----------|---------------------------------|-----------|
| | Raku-ya | 20유로 | Etelaranta 14 | 675-449 |
| | Zen Sushi | 10~30 유로 | Kamp Galleria Shopping Centre 内 | 671-367 |
| | Yume | 30~100 유로 | Kamp Hotel 内 | 5840-9356 |
| | Ichban Sushi | 10~30 유로 | Mikonkayu 8 | 672-345 |
| 중식 | China | 10~20 유로 | Annankatu 25 | 640-258 |
| | Hong Kong | 10~20 유로 | Salilinkatu 3 | 2417-883 |
| | Good World | 10~20 유로 | Etelaseplanadi 4 | 630-539 |
| | Peiking | 10~20 유로 | Aleksis Kiventie 16 | 762-633 |
| | Empire Plaza | 10~50 유로 | Kamppi Shopping Mall | 3280-328 |
| | Singapore | 10~30 유로 | Lapinlahdenkatu 29 | 6942-763 |
| | Banana Leaf | 10~30 유로 | Fredrinkatu 49 | 738-739 |
| 스페인식 | Parrilla Espanola | 15~25 유로 | Eerikinkatu 4 | 603-305 |
| 태국식 | Kok Thai | 15~25 유로 | Runeberginkatu 56 | 454-8093 |
| 이태리식 | Carelia | 15~25 유로 | Mannerheimintie 56 | 2709-0976 |
| | Taormina | 15~25 유로 | Bulevardi 7 | 656-722 |
| 멕시코식 | Cantina West | 10~20 유로 | Kasarmikatu 23 | 622-0900 |
| | Santa Fe | 10~20 유로 | Aleksanterinkatu 15 | 4242-6010 |
| 러시아식 | Alexander Nevski | 20유로 이상 | Pohjoisesplanadi 17 | 6869-560 |

아. 관공서관행

1) 민원처리

핀란드의 관공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인상과 함께 시간이 걸린다. 담당 공무원들이 능동적이지 못한 인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정확하며 두 번 걸음을 하지 않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한다.

대부분의 관공서 및 접수창구의 경우 영어가 가능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면 필요한 서류와 소요 시일을 알려준다. 다만 체류 연장 신청의 경우 최근 외국인들이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으나, 급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허가 및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되어서는 경찰청 (www.polis.fi) 을 찾아가야 하며, 고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민국(www.uvi.fi)과 노동부 (www.mol.fi)를 접촉해야 한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일반 민원부서의 경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준비서류 등을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원부서 아닌 일반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공휴일은 모두 종교 공휴일이며, 가지지는 않지만 종교 공휴일 외에 정부에서도 사실상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날은 노동절(5월 1일), 하지 이브(매년 달라짐),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 등 3일이다.

2007년도 공휴일 일정표

| 일자 | 공휴일명 |
|------------------|---------------------------------------|
| 1.1 (월) | 신정(Newyear's Day) |
| 1.6 (토) | 주현절(Ephiphany) |
| 4.6 (금) | 성금요일 (Good Friday) |
| 4.9 (월) | 부활절 (Easter) |
| 5.1 (화) | 노동절(Vappu, May day) |
| 5.17 (목) | 예수 승천일(Ascension day) |
| 6.22 (금)~ 24 (일) | 하지제(Mid summer Eve & Day) |
| 11.3 (토) | 만성절(All Saints Day) |
| 12.6 (목) | 독립기념일 |
| 12.24(월)~26 (수) | 성탄절(Christmas Eve & Day & Boxing Day) |

1) 주요 축제일

- 우정의 날: 2월 14일
- 부활절: 4월 두 번째 금요일 ~ 월요일
- 노동절: 5월 1일
- 어머니 날: 5월 두 번째 일요일
- 하지: 6월 네 번째 금요일 ~ 일요일
- 아버지 날: 11월 두 번째 일요일
- 독립기념일: 12월 6일
- 크리스마스: 12월 24 ~ 26일

2) 출장 지양기간

핀란드의 경우 상기 공휴일을 전후로 1-2일, 6월말부터 8월말 사이 선택하는 여름 휴가, 그리고 남은 여름휴가로 보통 2월말에 쓰는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상점들도 문을 닫아 출장 시 상담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시즌(6월 셋째 주),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북유럽의 여름 휴가철은 6월 하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여타 유럽국가보다 여름 휴가철이 1개월 정도 빨리 시작되고 그만큼 빨리 끝난다. 또한 여타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름휴가는 보통 4-6주 장기간이며, 이런 휴가철에서는 이 메일 및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바이어와의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의복 준비

겨울철에 핀란드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방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의 및 오버코트는 물론이고,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화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름철에도 2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늘에서는 서늘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벼운 긴 팔 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기 규격

230 volt 50 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헤르츠가 차이가 나서 일부 모터제품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3) 치 안

헬싱키 시내를 비롯한 핀란드 전역의 치안은 좋은 수준이며,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일부 청소년 및 현지인과 충돌을 일으키는 난민(소말리아, 코소보 등)들도 있다. 이들의 범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4) 위험 지역

어두워진 이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불량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중앙역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다.

5) 택 시

택시는 주요 호텔 및 택시 전용 정류소 등에 대기하고 있거나 때로는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01000700)로 부르면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방문지를 떠나기 전에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6) 응 급

의사, 앰블런스 호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된다. 약국은 중앙역과 Stockmann 백화점 사이 24시간 영업하는 약국(Yliopiston Apteeki)이 있으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간단한 상비약만을 판매하고 있다. (전화 096802 702)

7) 팁 관행

핀란드에서는 식당, 호텔 등 서비스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짐을 운반해주는 포터의 경우는 팁을 주는 것이 상례), 특별히 호의적이고 친절할 경우 조그마한 정성의 표시로 팁을 주면 사양하지 않고 받는다.

8) 식 수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가게에서 생수를 판매하기는 하나 종류도 제한되어 있고 굳이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다.

9) 이발소

핀란드의 이발료는 남자의 경우 보통 2~30 유로로 비싼 편이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시내 중심가의 이발소/미용실의 경우 예약없이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음), 월~ 금요일까지는 9~5시까지, 토요일은 상점마다 영업시간이 다르나 보통 오후 1~2시까지 영업한다.

10) 구두닦이

핀란드에서는 구두닦이를 길거리나 사무실 근처에서 거의 볼 수 없으며, 일반인들은 집에서 구두를 닦는다. 고급 호텔 혹은 공공장소에 구두 먼지떨이/닦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 역에서는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11) 물 가

핀란드의 물가는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맥도널드 햄버거 빅맥 가격(세트 메뉴 아닌 햄버거 가격만)이 4유로 정도이며, 보통 점심 식사는 약 7~10 유로 정도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는 EU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12) 호텔 이용시

주방시설이 없는 호텔을 이용할 경우 객실 내에서 절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단체 호텔 투숙시 객실 내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호텔측 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한국인 사절”이라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13) 문화적 금기 사항

- 시끄러운 소음을 싫어하는 핀란드 사람들은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소리가 크게 나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하는 것, 공공 장소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 등을 무척 꺼린다.
-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이다. 약속 시간에 5분 이상 늦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핀란드다. 약속을 정할 때는 늦어도 3 주 전에는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상점에서 점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린다.
-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과 비슷해서 경양/경손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의 재산이나 학력 등을 과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편이다.
- ‘핀란드 어가 러시아 어와 비슷하게 들린다’ 혹은 ‘핀란드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 처럼 생겼다’ 등, 핀란드와 러시아를 관련 짓는 말들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14) 유용한 현지어 표현

- KIITOS (끼-또스, THANK YOU)
- EI MITAN (에이 미딤, YOU'RE WELCOME)
- PAIVAA (빠이바, 하루 중에 인사말로 두루 씬)

- TERVE (테르베, HI 또는 HELLO)
- MITA KUULUU ? (미따 쿠울루-, HOW ARE YOU?)
- IHAN HYVA, ENTA SINA ? (이한 휴바, 엔따 씨나?, FINE, AND YOU?)
- HUOMENTA (후오멘따, GOOD MORNING)
- HYVAA ILTA (휴바 일따, GOOD EVENING)
- HYVAA YOTA (휴바 위오타, GOOD NIGHT)
- ANTEEKSI (안텍시, I'M SORRY, EXCUSE ME)
- OLE HYVAA (올레 휴바, 상황에 따라 You're WELCOME 또는 HERE YOU ARE)
- HEI (헤이, HELLO), HEI HEI (헤이 헤이, GOOD-BYE)
- HYVAA UUTTA VUOTTA (휴바 우-따 부오타, HAPPY NEW YEAR)
- HYVAA JOULUA (휴바 요올루아, MERRY CHRISTMAS)
- NAKEMIN (나께민, SEE YOU LATER)
- PALJONKO? (팔리안꼬? How much?) 가격을 물어볼 때
- 숫자
 - YKSI(육시, ONE), KAKSI(각씨, TWO)
 - KOLME(콜메, THREE), NELJA(넬리아, FOUR)
 - VIISI(비이시, FIVE), KUUSI(꾸우시, SIX)
 - SEITSEMAN(세이쯔만, SEVEN), KAHDEKSAN(카흐렉산, EIGHT)
 - YHDEKSAN(유으렉산, NINE), KYMMENEN (균메넨, TEN)

카. 유용한 연락처

1) KOTRA 헬싱키무역관

- 주 소: Kauppiaankatu 3 B 11, 00160 Helsinki
- 전 화: +358-9-682 94 90
- 팩 스: +358-9-682 94 910
- 이메일: kotrahel@kolumbus.fi, Helsinki@kotra.or.kr

2)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 주 소: Fabianinkatu 8 A, 00130 Helsinki
- 전 화: +358-9-251-5000
- 팩 스: +358-9-251-50055
- 비상전화: +358-40-903-1012
- 이메일: korembfi@mofat.go.kr

3) 긴급 전화번호

- 안내전화(118)
- 우체국(1955117, FAX 송신도 가능)
- 경찰(10022)
- 의사, 앰블런스, 화재(112)
- 분실물 보관소(189 3180)
- 약국(6802 700): 24시간영업, 스톡홀름 백화점 근처
- 대부분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음

4) 항공사

- FINNAIR (09 81881)
- JAL (09 7001 7400)
- MALEV (09 600 322)
- LUFTHANSA (09 694 9900)
- AUSTRIAN AIR (09 171 311)
- SAS (09 177 443)
- AIR FRANCE (09 625 862)
- BRITISH AIR (09 650 677)
- KLM (09 8701 747)
- SWISS AIR (09 175 300)
- ALITALIA (09 680 1168)

타. 관광명소

1) 관광명소

핀란드는 655년간 스웨덴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108년 동안 러시아의 자치공국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관광지는 별로 없으며, 헬싱키의 경우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길을 끌 만한 큰 관광지는 없다. 헬싱키를 방문하여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여름철 기준 1시간 40분이면 쾌속선으로 갈 수 있는 에스토니아의 탈린 관광을 추천할 만하다.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에스토니아 자료 참조 요망)

- 관광 버스: Olympia Terminal (Silja Line 터미널) 등에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버스 시내 관광이 가능함.

| 출발시간 | 기간 | 출발지 | 관광안내 |
|-------|-------|---|----------------------------|
| 10:00 | 연중/매일 | Olympia Terminal | 영, 스웨덴, 독일, 러시아어 등으로 안내 |
| 10:45 | 연중/매일 | Katajanokka Terminal (Viking Terminal) | |
| 11:00 | 연중/매일 | Esplanade Park (Fabianinkatu)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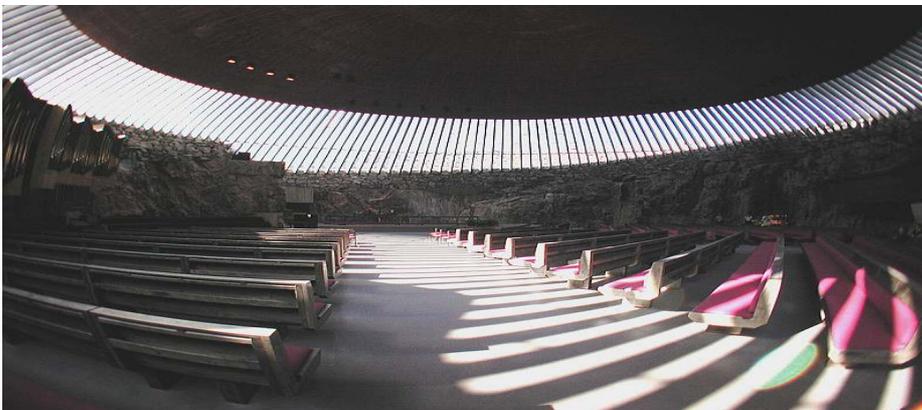
2) 헬싱키 근교 주요 관광지

- 헬싱키 대성당 (현지어: Tuomio Kirkko, 영어: The Cathedral)



- 헬싱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며, 핀란드의 국교인 루터 교의 총본산
- 1830년에 착공, 1852년에 완공되었으며, 예전에는 성니콜라스(St. Nicholas) 교회 또는 단순히 '큰 교회' 라고 불렸음
- 독일인 카를 루빙 엥겔(Carl Ludvig Engel)이 설계한 신고전주의 왕궁 스타일의 이 건축물은 밝은 녹색 돔과 흰색의 주랑이 청명한 하늘을 배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이 중앙 돔은 네 측면 어디에서도 보이며, 지붕 위에는 아연으로 만들어진 동상군(群)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예수와 12제자의 동상이 올려져 있음
- 오늘날 핀란드 인구의 85%인 4백 40만 명이 루터 교회의 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이곳에서는 각종 국가적인 종교행사가 거행되며 전시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등 대학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 원로원 광장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은 헬싱키 시민들의 휴식처로 날씨가 좋은 여름에는 이 계단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 대성당 앞에는 약 40만 개의 화강암이 깔려있는 원로원 광장이 있으며, 중앙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입상이 있다.

□ 암석교회 (현지어: Temppeliaukio Kirkko, 영어: The Rock Church)



- 형제 건축가 Timo/Tuomo Suomalainen 이 함께 1969에 지었음. 단단하고 거대한 화강암 바위 속에 다이내마이트를 장치하며 폭발시킨 후 만들어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교회. 무너진 돌을 사용하여 벽을 쌓고 지붕은 구리선과 유리로 만듦
- 두 형제 건축가인 Timo/Tuomo Suomalainen 이 함께 1969에 지었음. 단단하고 거대한 화강암 바위 속에 다이내마이트를 장치하며 폭발시킨 후 만들어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교회. 무너진 돌을 사용하여 벽을 쌓고 지붕은 구리선과 유리로 만듦
- 천연의 음향효과가 뛰어나서 콘서트 장소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암석교회는 헬싱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이며, 일요일 오후 2시 영어예배가 진행되고 있음

□ 마켓광장 (현지어 Kauppatori 영어 : Market Square)



- 평일에는 07:00~14:00 까지, 토요일은 12:00 까지 개장. 헬싱키 대성전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걸어가면 헬싱키의 명물로 자리잡은 활기찬 마켓광장에 도착한다.
- 광장 앞은 항구여서 배에 감자나 생선을 싣아놓고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많은 관광객들도 마켓 광장 앞 항구에서 출발
- 핀란드에서는 대체적으로 바가지도 없고 또 값을 깎는 관습도 없다

□ 수오멘리나 해상 요새(현지어: Suomenlinna)



- 1748 년 스웨덴 점령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건축된 해상 요새
- 1808 년 러시아-스웨덴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해상 요새인 Suomenlinna 점령에 성공하여 스웨덴군은 러시아군에 요새를 양도하였음
- Marketplace 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면 15 분정도 소요되며, 여름철 헬싱키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 핀란드아홀 (현지어 : Finlandia Talo 영어 Finlandia Hall)



- 1971 년 핀란드의 대표적 건축가 Alvar Alto 가 설계한 컨벤션 홀로 각종 콘서트,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며, 헬싱키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 멀리서 바라보는 전체적 건물 모습은 그랜드피아노를 닮았다고도 함

□ 시벨리우스 공원 (현지어: Sibeliuksen Puisto 영어 : Sibelius Park)



- 핀란드 내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핀란드의 세계적인 음악가인 시벨리우스를 추도하며 만들어진 공원으로 이 공원에는 유명한 시벨리우스 기념물이 있음
- 24 톤의 강철을 사용해 만들어진 시벨리우스 기념비(작가: 에일라 힐투넨)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음
- 파이프 오르간, 오로라 혹은 뾰족한 침엽수림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상을 모델로 만든 것인지 작가가 밝히지 않았다고 함. 기념물 바로 옆에는 시벨리우스 대형 두상 부조가 있음

□ 3인의 건축가의 집 (현지어: Hvittrask)



- 1903 년 핀란드의 3 인의 건축가가 본인들의 거주용으로 지은 건축물로 핀란드 민족주의 건축양식 Jugend 스타일이 잘 남아있는 건물
- Saarinen, Gesellius, Lindgren 3 인의 건축가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헬싱키에서 30km 떨어진 지역에 건축사무소 겸 전원주택을 설립
- Saarinen 의 처가 Gesellius 의 처가되고 Gesellius 의 여동생이 Saarinen 의 처가 되는 일화가 이 건물을 설명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양념처럼 등장하며 호숫가에 위치한 부속건물 사우나 역시 헬싱키 근교의 명소 중 하나이다. '하얀호수'라고 명명된 이 호수는 핀란드 전역에서 두 번째로 깨끗한 호수임

3) 주요 쇼핑 센터

헬싱키 시내 중심가에 Stockmann이라는 백화점에서 웬만한 물건은 구입할 수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Aleksanterinkatu 및 Esplanadi거리에 고급 쇼핑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음

기타 헬싱키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는 다양한 대형 쇼핑몰과 전문상가들(가구, 의류, 공구 등)이 있다. 핀란드 고유의 유명 브랜드로는 Marimekko(의류제품), Iittala(유리제품), Hackman(주방용품), Fiskars(톱, 도끼 등 공구류) 등이 있음

4) 특산품

핀란드의 특산품으로는 나무를 소재로 한 각종 목제품(그릇, 컵, 수저 등)과 핀란드의 전통적인 디자인 의류(주로 겨울제품), 주방용 및 레저용 칼, 기타 손목 털 제품 및 모피 등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Stockmann 백화점에도 특산품 코너가 있으며,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도 있다. 시장광장(Market Square)에는 여름철의 경우 매일 특산품 시장이 열리며, 겨울철에는 주말 오전에만 시장이 열림

헬싱키 시내의 호텔이나 역, 선착장 등에서 'Helsinki This Week'라는 안내책자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데, 동 책자를 보면 헬싱키 시내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인터넷 사이트 http://www.helsinkiexpert.fi/helsinki-this-week_eng/ 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음.